



정책자료 2025-02

#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곽윤경  
신영규·김예슬



BIG  
DAT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연구책임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신영규 김예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책자료 2025-02

###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문자 포럼

발 행 일 2025년 12월

발 행 인 신 영 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주)정인애드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https://doi.org/10.23060/kihasa.f.2025.02>

## 발|간|사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 일선 종사자 및 현장 전문가로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사회보장 제도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운영되어왔다. 올해로 17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특히 제10기 (2025~2026)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은 총 4차례 진행되었다. 제1차 포럼에서는 ‘주거취약계층 및 노숙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지원 제도 안내와 연계 과정의 실태, 그리고 노숙인 지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며 지역사회 통합적 주거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차 포럼에서는 ‘외국인과 공공부조’와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한 현장의 이슈들을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 조항에 따라 결혼 이주 여성이나 난민 등에 대한 급여 신청, 심사, 지급 실무 과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급여지원 현황과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빈곤 외국인이 공공부조 급여를 신청하거나 사각지대에서 빨굴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3차 포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5주년을 맞아 제도를 재평가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원칙 및 선정 기준, 생계급여제도, 그리고 의료, 주거, 교육 및 장제·해산 급여의 적절성을 점검 하였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관리 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제4차 포럼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극복과 자동지급’을 다루었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극복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및 정비,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복잡한 복지급여체계의 간소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신청주의 극복이 가져올 파급력을 고려하여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예견되는 문제점을 균형 있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보강·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사업은 꽈윤경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고 김예슬 전문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특별히 제1차 모니터링 포럼은 신영규 부연구위원이 담당하였다. 또한, 각 포럼의 주제 발제는 각각 우리 원의 임덕영 연구위원, 김기태 연구위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전문성을 더해주었다. 올해도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서면으로 개진해 주시고, 열띤 논의를 함께해 주신 제10기 포럼 전문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아울러 사업의 운영 방향 및 포럼 주제 등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원내 실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참여자들의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영석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	1
제1절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의 필요성 .....	3
제2절 주요 사업내용과 현장모니터링 운영방법 .....	4
제2장 주거취약계층 및 노숙인 지원 .....	7
제1절 모니터링 개요 .....	9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19
제3장 외국인과 공공부조 .....	157
제1절 모니터링 개요 .....	159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168
제4장 기초생활보장제도 25주년 관련 평가 .....	223
제1절 모니터링 개요 .....	225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230
제5장 복지급여 신청주의 혹은 자동지급에 대한 논의 .....	335
제1절 모니터링 개요 .....	337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340
참고문헌 .....	383

## 표 목차

---

〈표 2-1〉 주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개요 .....	10
〈표 2-2〉 자치단체 주거복지 관련 전담조직 구축 현황 .....	13
〈표 2-3〉 전국 주거복지센터 설치 현황(2022.9.30.기준) .....	14
〈표 2-4〉 노숙인 등 복지사업 개요 .....	16
〈표 3-1〉 주요 체류자격별 체류 기간 및 체류 인구 .....	161
〈표 4-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	225
〈표 4-2〉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226
〈표 4-3〉 2025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226
〈표 4-4〉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237

#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별 전달체계 .....	12
[그림 2-2] 서비스 운영 절차 .....	15
[그림 2-3] 비주택 거주자 주거사항 지원사업 절차 .....	16
[그림 3-1] 이주배경인구(2022~2042년) 추이 .....	160
[그림 3-2] 유럽연합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 수급권 부여 조건 .....	165
[그림 3-3] 이주민 유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권리 보장에 대한 동의 정도 .....	166
[그림 4-1] 연도별 수급자 현황 .....	228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1장

## 서론

제1절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의 필요성

제2절 주요 사업내용과 현장모니터링 운영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의 필요성

- 정책 설계와 현장 집행의 정합성 제고 및 환류 체계 강화
  -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의 정책 설계와 일선 현장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축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8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주요 복지정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2025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대응과 신규 복지 의제 발굴
  - 최근 인구·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의적절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
  - 이에 2025년 포럼에서는 주거 취약계층 및 노숙인 문제(제1차)와 외국인 대상 공공부조 적용 논의(제2차) 등 다변화된 복지 욕구와 신규 취약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함.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5주년 성과 평가(제3차)와 최근 쟁점이 되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및 자동지급 논쟁(제4차)을 다룸

#### 4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  
의제를 발굴함.

- 현장 중심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본 포럼은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현장 실무자, 학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견고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보장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둠.
  - 모니터링 포럼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生生한 문제의식과 개선안은  
원내 연구진 및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등), 지자체와 공유하여 실질  
적인 정책 연구의 근거 자료이자 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 제2절 주요 사업내용과 현장모니터링 운영방법

- 제10기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전문위원 위촉 및 구성
  - (위촉 개요) 2025년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하여, 현장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총 29명의 제10기 사회  
보장 현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을 위촉함.
  - (위원 구성) 기존위원과 신규 위원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정책  
제언의 연속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함.
    - 기존위원: 그간 사회보장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 수립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  
으로 기여함.
    - 신규위원: 2025년 제10기에 새로이 합류하여, 변화하는 사회

복지 현장의 상황과 최신 이슈를 새로운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달함.

□ 지역별·분야별 다양성 확보

- (지역 분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 구역상 시·군·구는 물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포괄하여 지역별 복지 격차와 특성을 고루 반영함.
- (전문 분야)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아동,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 전 영역에 걸친 전문가를 위촉하여 분야별 심도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

□ 2025년 사회보장 모니터링 포럼 운영 및 활동 내용

- 연 4회의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 포럼을 개최하여 시기별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함.
- 또한, 정기 포럼 외에도 본 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현장 데이터와 자문을 수시로 제공하여 연구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함.

□ 2025년 사회보장 현장 및 실무자 대상 모니터링 포럼은 총 4회에 걸쳐 수행됨.

○ 제1차 모니터링 포럼

- 주제: 주거취약계층 및 노숙인 지원
- 일시/장소: 2025년 4월 23일(수) 14:00 ~ 16: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층 세종실

## 6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 제2차 모니터링 포럼

- 주제: 외국인과 공공부조
- 일시/장소: 2025년 6월 11일(수) 13:30~15:50  
세종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 ○ 제3차 모니터링 포럼

- 주제: 기초생활보장제도 25주년 관련 평가
- 일시/장소: 2025년 9월 23일(화) 10:30~12:30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 ○ 제4차 모니터링 포럼

- 주제: 복지급여 신청주의 혹은 자동지급에 대한 논의
- 일시/장소: 2025년 11월 12일(수) 13:30~15:30  
공유와공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장

### 주거취약계층 및 노숙인 지원

제1절 모니터링 개요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제 2 장 주거취약계층 및 노숙인 지원

### 제1절 모니터링 개요

####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현황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의 주거 문제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취약성과 지원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기존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외에도 최근에는 반지하 등 다양한 비적정 주거 형태가 새롭게 발굴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택 이 외의 거처’ 중 취약거처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기타)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0년 281천명(97천가구)→2015년 767천명(359천가구)→2020년 839천명(490천가구)으로 증가 추세임(진미윤 외, 2023, p. 16<sup>1)</sup>).
  - 이길재 외(2022, p. 60<sup>2)</sup>)의 연구에 따르면 주거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 가구는 약 43만 5,551가구로 추정되고 있음.

1) 진미윤, 정기성, 김경미. (2023). 2022년도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2) 이길재, 김지혜, 윤성진, 박미선, 우지윤, 임지현. (2022).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10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최근에는 단순한 주거제공을 넘어 입주자의 특성에 맞춘 주거 유지 지원서비스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 단순한 물리적 주거 제공을 넘어, 고령자·정신장애인·아동 등 입주자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주거유지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는 지속 가능한 주거 생활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대표적인 주거지원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여전히 복잡하고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은 총 8가지 유형<sup>3)</sup>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입주자격, 신청 방법, 관할 기관 등이 상이하여 이용자에게는 접근성 저해 요소로, 공공기관 간에는 협업과 연계 필요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표 2-1>은 주요 공공임대주택 5가지 유형의 개요임.

<표 2-1> 주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개요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입주 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50㎡ 미만), 100% 이하 (50㎡ 이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 등 유형별로 기준 상이,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층 - 청년, 신혼부부 - 고령자 등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층 - 청년, 신혼부부 - 고령자 등

3) 공공임대주택은 이 외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이 있음. 또한 이 유형들을 통합하기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기존 유형의 재고가 있으므로 8가지 유형이 운영되고 있음.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임대기간	50년	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 계층에 따라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및 청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10년</li> <li>-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 계층에 따라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등 : 6년</li> <li>- 그 외 : 20년</li> </ul> </li> </ul>	20년
공급 규모	전용면적 4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 계층에 따라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등: 30㎡ 이하</li> <li>- 신혼부부 : 60㎡이하 등</li> </ul> </li> </ul>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함 (전용면적 85㎡이하)
임대 조건	시세의 30% 수준	시세의 60~80% 수준	시세의 60~80% 수준	시세의 40~50%	전세금의 일부를 LH (또는 지방공사)가 지불, 입주자는 일정 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불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제1차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발표자료.

- 신청부터 입주까지 주거유형별로 다양한 기관들이 관계하고 있어, 이용자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제도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공급자 측면에서 다양한 기관 간 연계가 필요한 상황임.
  - 영구임대·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 입주자 모집공고는 LH 및 지방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입주신청 및 대상자 심의는 자체(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에서 담당함. 이후 선정 통보 및 계약 체결 등은 다시 LH 및 지방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구조임.
  - 국민임대·행복주택 : 모든 신청 및 입주절차를 LH 및 지방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전담하고 있음.

## 1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그림 2-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별 전달체계



출처: 최은희, 이슬해, 오두선. (2020). 지역 대응 분권·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p. 31.

- 최근에는 공공기관(공사)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별 주거복지지사 내 ‘マイホームセンター’를 통해 주거복지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지원119센터를 통해 비주택 거주자 발굴 및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주거복지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 하여, 주거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표 2-2〉 자치단체 주거복지 관련 전담조직 구축 현황

지역	주요 주거복지 업무 수행 부서	해당 지자체	지역	주요 주거복지 업무 수행 부서	해당 지자체
서울	주거 복지 팀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관악, 서초, 용산	경기	주거 복지팀	수원, 안산, 광주, 부천, 시흥, 고양, 김포, 양주, 의정부, 포천, 성남/파주(주거지원)
부산	주거 복지계	사하	강원	주거복지	춘천, 원주, 강릉, 홍천, 양구
대구	주거 복지팀	중구, 서구, 달서, 달성군 (주거의료복지팀)	충북	주거복지	제천, 청주
인천	주거 복지팀	미추홀, 남동구, 서구	충남	주거복지	서산
광주	주거 복지팀	서구, 남구, 북구, 광산	전북	주거복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장수, 고창
대전	자활 주거팀	중구, 동구 (생계주거팀)	경북	주거복지	포항
경남	주거 복지	창원	제주	주거 복지팀	제주, 서귀포

출처: 최은희, 이슬해, 오두선. (2020). 지역 대응 분권·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pp. 61-63 중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 부서 중 직접적으로 '주거복지'가 포함된 부서를 요약 정리함.

- 이와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주거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14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표 2-3〉 전국 주거복지센터 설치 현황(2022.9.30.기준)

지역	개소	지역단위	운영주체	지역	개소	지역단위	운영주체
서울	26	광역: 1 (중앙센터) 기초 : 25 (자치구별)	지방공사: 26(SH공사) (주거안심종합 센터)	경기	23	광역 : 1 기초 : 4 (시흥, 수원, 부천, 고양)	지방공사 : 2(경기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민간법인·단체: 1 (시흥시) 시 직영: 1 (고양시) 시 설립 재단 : 1 (수원시)
부산	2	권역별: 2 (동부 /서부)	지방공사: 2 (부산도시 공사)	충북	1	기초: 1(청주)	민간법인·단체: 1
대구	3	기초 : 3 (서구, 중구, 달서구)	민간법인· 단체: 3	충남	1	기초: 1(천안)	민간법인·단체: 1
인천	2	광역: 1, 기초: 1	지방공사 : 1 (인천도시 공사) 민간법인· 단체: 1	전북	1	기초: 1(전주)	민간법인·단체: 1
광주	1	광역: 1	지방공사: 1 (광주도시 공사)	제주	2	기초: 2 (서귀포, 제주)	지방공사: 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합계					44	광역: 4, 권역: 2. 기초: 38	지방공사: 18 민간법인·단체: 25 시 직영: 1

출처: 김강산. (2022).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 NARS 입법정책 제112호, p.18.

주 : 위 출처에서 경기도는 2025년 3월 현재 광역 1개소, 기초 22개소(고양,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성, 안양, 양주, 여주, 용인,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넘어서 돌봄-건강-의료 등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가 강조되면서, 주거에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지원 모델이 확대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2019~2022년),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2021~2022년)에 이어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023~2025년) 등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들로, 이 모델에서 ‘주거지원’은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림 2-2] 서비스 운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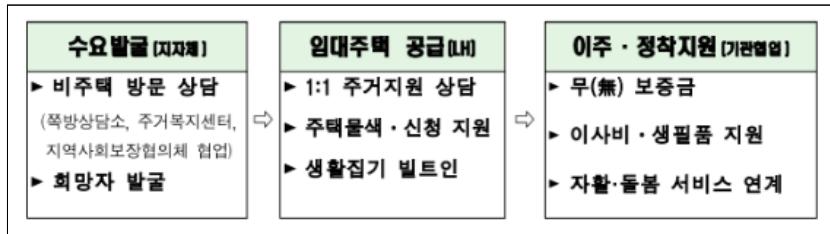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n.d.). 의료-요양-돌봄 연계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d04300m01.do>

-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발굴하여, 이사비, 보증금, 생활집기, 그리고 필요한 경우 돌봄 및 복지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함. 이 사업은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실질적 지원을 제공함.

## 16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그림 2-3] 비주택 거주자 주거사항 지원사업 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2020. 1. 29). 쪽방 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공공임대 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가장 열악한 주거계층인 ‘노숙인’은 독립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2022년 복지사업의 완전 지방 이양 이후,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표 2-4〉 노숙인 등 복지사업 개요

역할	주체	세부 내용
정책 총괄	보건복지부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성과 평가, 제도 관리 등
사업 집행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서비스 계획 수립, 위탁, 지도 감독 등
	민간 수행기관	직접 서비스 제공
	(거리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잠자리), 종합지원센터 (거리상담·사정)	일시잠자리, 거리상담, 응급 보호 등
서비스 제공	(시설노숙인) 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 시설	건강 및 자립도 : 자활 > 재활 > 요양 복지서비스, 지역정착 지원, 주거지원(임시주거지원 포함) 등
	(쪽방주민) 쪽방상담소	쪽방주민 대상 상담, 물품 등 지원
	(기타) 급식소, 무료진료소	관련 서비스 제공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제1차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발표자료.

## 2. 문제의식

- 종합하면, 주거에 대한 욕구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새로운 유형의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복지·의료·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 와의 연계,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 해지고 있음.
- 이를 위해 지자체에는 복잡한 주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이 가능한 포괄적 대응 능력, 그리고 다양한 주체가 협업할 수 있는 유연한 전달체계가 요구됨.
- 2025년도 제1차 모니터링 포럼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적 대응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현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함.

## 3. 모니터링 내용

-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제1차 포럼
  - 모니터링 주제
    - 주거취약계층 및 노숙인 지원
- 모니터링 전문위원 질문 내용
  - 질문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한 의견 및 경험
    - 주거 관련 상담 및 지원 요청의 주요 접수 경로와 의뢰 대상 계층 현황

## 18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지자체 내 주거복지 전담 부서 설치 및 담당 인력 배치 현황
- 주거지원 절차 및 LH·지방공사·주거복지센터·지역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

### ○ 질문 2)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지원 제도 안내 및 연계 과정

- 제도 안내 및 연계 과정에서 실무자가 겪는 주요 애로사항
- 주거취약계층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추가 지원 사항(인력, 교육, 제도 개선, 자원 확충, 부처·기관 간 협업 등)

### ○ 질문 3) 노숙인 지원에 대한 의견 및 경험

- 현장에서의 노숙인 지원 경험
- 노숙인 주거 지원 시 활용하는 제도 및 연계기관 등 구체적 지원 내용
- 노숙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 및 지원책

### ○ 질문 4) 지역사회 통합적 주거 지원을 위한 제언

- 대상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귀 기관/군청/시청/구청에서 시행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후지원 방안
- 주거취약계층 또는 노숙인을 위한 주거 지원을 추진할 때, 주변 주민들의 반응이나 민원이 있었던 경험과 해결방안

##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1.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거 관련 상담이나 지원 요청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주민 계층으로부터 접수되고 있습니까? 또한 귀하가 속한 기관/군청/ 시청/구청이 직접 발굴하거나 발견한 사례가 있다면, 그 주요 경로나 인상 깊었던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 □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주거관련 상담이나 지원 요청의 경로
  - 주거복지상담소 진행을 통한 발굴
    - 재개발지역 내 주거복지상담이 필요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진행
    - 주거복지상담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소 진행
  - 지역밀착형복지관사업 민관 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통한 발굴
    - 월1회씩 정기적인 민관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이용자 연계
    -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주거취약계층 지원 연계
- 주요 주거취약계층
  - 저소득층 : 수입이 적어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여 안정적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계층
  - 독거어르신 :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

## 20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장애인 : 장애로 인해 거주환경에 제약이 있거나 이동에 제한이 있는 세대

### ○ 직접 발굴한 사례

- 재개발지역 내 거주하여 주거지의 취약성이 심각한 이용자를 지역사회 내 직능단체 위원을 통해 발굴한 사례가 있었음. 재개발지역으로 주거지 이전이 필요하나, 주거지 이전까지 취약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세대를 발견 하였음.

### □ 전라남도 영암군

#### ○ 주거 관련 상담 경로는 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상담 또는 사례관리 대상자 상담 시 접수됨(주 상담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임)

#### ○ 대상자 주거급여 안내, LH 연락처 안내함.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 주거사다리사업 지원대상 선정자 전세임대 주택 계약 거부사례

- 사례 1) 80대 여성 노인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중개사와 함께 주택을 보고 마음에 들어 집소유자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계약의사를 밝히자, 집 소유주가 임차 희망자가 고령이어 주택계약을 거부함. 통화 내용을 들은 주거사다리 지원 대상자가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수회 반복하며 자기는 아직 건강해서 1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집주인에게 잘 말해달라고 하였으나 결국 집소유주가 계약을 거부함.

- 사례 2) 주거사다리 지원 선정자가 주택물색을 위한 방문 전 부동산을 통해 LH전세임대로 계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주택을 확인 한 후 계약하고자 하였으나 집 소유주가 임대료 및 공과금 체납 등을 우려하여 자기부담금 50만 원이 아닌 500~650만 원 정도를 요구함. 50만 원 자기부담금으로 계약 가능한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집 소유주가 500만 원 이상 자기 부담금(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과 계약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함.
- 사례 3) 주거사다리 지원 선정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지적장애인으로 20대 초반부터 독립적으로 생활해 왔음. 주거복지코디네이터와 함께 주택물색을 위해 부동산에 방문하니 집소유주가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주는 거부한다고 이야기 함.

□ 충청북도 청주시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로 본인이 직접 상담하러 오십니다. 주로 소득이 없으시거나 불규칙적인 소득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고, 월세를 부담하기 어렵거나, 임대인이 집을 나가달라는 요구에 의해 주거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오십니다.
- 통장님의 요청으로 지붕이 무너져가는 할머님이 살던 집에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님은 제3자의 임대인에게 무료임차로 살고 계셨고, 집은 단열도 되지 않았고, 보일러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있었고, 집의 형태라기보다는 판자촌의 느낌으로 계속 덧대어 집의 형태를 가꾼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대상

## 2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자에게 다른 주거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을 안내하였지만 대상자는 살아온 동네가 이곳이고, 앞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도 이곳이라며 결국 그곳에서 살고 계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 고령 인구가 주를 이루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대상자가 주거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주요 사유로는 고령으로 인한 거동 불편,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대중교통 인프라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함. 따라서 현장 중심,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주된 발굴이 이뤄짐.
  - 발굴 경로
    - 직접 신청 : 중장년층의 경우 기관에 내방하거나 유선으로 서비스를 신청함.
    - 자체 발굴 : 사례관리 욕구 사정 시 주거 문제가 함께 발굴됨.
    -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 제보 : 적십자, 부녀회, 마을 이장 등 가까운 이웃을 통해 주된 발굴이 이루어지며, 지역 내에서도 발굴부터 지원까지 주민 참여형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노인돌봄생활지원사,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제보 :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노인을 위한 방문형 서비스 과정에서 생활 지원사 및 노노케어 참여자를 통해 제보가 이루어짐.
    - 타기관 의뢰 :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상담센터,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타기관을

통해 주거 서비스 의뢰가 이루어짐.

- 통합사례회의 연계 : 사례공유를 통해 발굴 및 지원 연계가 이루어짐.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발굴
    - 군 사례관리 및 희망복지팀, 읍·면별 맞춤형 복지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참여자가 지역주민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발굴 주체는 지역주민이라고 볼 수 있음.

#### □ 경상남도 의령군

##### ○ 주거취약계층 상담 · 지원요청 경로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복지 중 주거급여 신청 경로
  - 기초수급자 복지급여 신청시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신청시 일괄 신청하는 경우 주거급여도 신청하게 되어 자가 소유는 긴급보수, 대보수, 종보수, 편의도모보수 지원, 전월세 임차비 지원, 월세지원
  - 사례) 미혼모 한부모가정 매입임대 입주- 의령군 00면 작은 학교 살리기운동 일환
- 희망복지지원단(팀) 복지사각지대 발굴 비정형거주자(비닐 하우스, 움막, 다리밑, 가건물, 농막, 조립식 주택, 묘소 인근 움막 등 주민신고 동향으로 발견 신청 경로
- 고향에 혼자 전입한 경우로 00 마을에 친인척 몇분이 살고 있었고 00경로당 회장이 8촌, 식수와 화장실 등 이용제공, 10개월 정도 이용

## 24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주거문제(부모가 거주했던 고향집 허물어져 생활하기에는 거주 기능상실)
- 의료문제(전립선암 투병 중, 전아 복수)
- 가족문제(아내와 부채, 성격문제로 이혼, 자녀와 단절 가족 관계 상태)
- 정서적 문제(신경질을 많이 부려 이웃주민들과도 갈등관계, 지인 전무)
- 방문 시마다 양곡, 라면, 식수 등 생필품 위주의 물건 제공, 목적없이 안부정도, 안전확인만 함. 1개월후 기본적인 친밀감 형성후 1차적으로 주거문제 개입. 기초수급자로 생계·의료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신청 판정 대기기간에 노인일시보호 시설(1개월 거주 가능) 또는 병원입원 권유
- 병원 입원 후 3개월 정도 지내다 암전이로 사망(입원시기에 주거문제 사례회의 진행)
  - 노숙인 입소시설에 입소의뢰, 일시적인 비정형거주자 귀향 여비, 지자체에서 계약된 여관 등 숙박후 귀향조치하는 경우 대다수임.
  - 야간에 00군 당직실에 찾아와 귀향여비를 원하거나 숙박을 원하는 경우 수시로 발생(귀향여비 연 40건, 일시숙박 18건, 일시보호 1-2건)

### □ 증평삼보사회복지관

#### ○ 사례 1) 대상자 어린이재단 의뢰를 통해 지원

- 김○○ 사례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상황으로, A에서 거주

하던 중 남편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 후 B로 이주하였습니다. 당시 경제적 여력이 없어 1층 반지하 수준의 원룸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해당 주거지는 현관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고, 원룸 출입문이 외부에서 훤히 보이며, 창문에 안전장치가 없어 외부 침입의 위험이 큰 곳이었습니다. 더불어 곰팡이 등 위생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아 함께 거주 중인 5세 자녀는 폐렴 등 질병으로 인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상 우려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을 양육 중인 한부모 가정으로서 주거 이전이 절실했지만, 3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이사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복지관에서 어린이재단에 연계하여 부족한 200만원의 주거 이전비를 지원받은 뒤 안전한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 비용조차 감당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기에 복지관에서는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이사비용도 일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님은 기초 생활수급자로 전환되어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를 한시적으로 지원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는 조건부 수급자로 자립을 도모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한부모 가정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지역 내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발굴 및 기관 간 연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 사례 2) 복지관 기준 대상자 지원

- 복지관을 통해 주거 문제로 연계된 사례 중 하나로, 고령의 기초 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컨테이너 주택에서의 오랜 거주 끝에 강제 철거를 겪으며 주거 불안을 경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8년생) 어르신은 복지관 서비스 대상자로, 20년 이상 컨테이너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중,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강제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어르신은 나이와 건강상 이유로 아파트보다 단독 주택 거주를 선호하였고, 이에 따라 마을 이장님과 면사무소 담당자, 복지관이 협력하여 새로운 주거지를 함께 찾아 나섰습니다. 2023년 5월경 임대주택 신청 기간에 맞춰 입주신청을 진행했으나, 어르신은 “아파트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입주를 원치 않으셨고, 마을 내 주택을 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알고 있던 조카(누나의 딸)가 300만 원을 대신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은 어르신 명의로 입금되어야 했으나, 향후 상속 문제를 고려한 조카 측에서는 어르신의 친자식이 상속 포기를 해야만 보증금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두 자녀 중 한 명의 딸은 이미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겠다 하였고 다른 딸 한 명만 상속 포기를 하여 부분적인 동의로 보증금 입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주거지를 구하기 전 임시로 ○○아파트(1996년 7월 말 사업주체 00건설의 부도로 인해 전체 공정률의 85~90%만 완료된 채 완공되지 못하고, 방치된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해당 아파트는 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아 장기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다른 주거지를 급히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살고 계신 동네에 주택입주를 희망하여 거주지를 찾았으나 동네에서 고물을 모아놓고 치우지 않은 민원 문제가 있어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입주 거부를

당하는 상황도 반복되었습니다. 주거지를 찾던 중 주공1단지 아파트에 입주 조건이 되어 어르신 조카가 보증금 3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이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입원을 앞두고 다시 퇴거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으며, 상속 포기를 해주기로 한 자녀가 말을 바꿔 조카와의 보증금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고령자의 주거 문제에 있어 가족관계, 상속,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얹혀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조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 □ 세종시 보람동

#####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 상지절단 중증장애, 당뇨, 치매가 있는 노인이 화장실이 외부에 있고 겨울엔 샤워를 할 수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 본인 주거지를 떠날 수 없다고 하여, 동네 목욕탕에서 씻겨 드리고 전기장판 지급 등 1차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한 분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안심 하우스”로 명칭, 화재 등 긴급하게 주거할 곳이 필요한 경우 기본 2개월, 최대 4개월까지 임시거주할 수 있게 마련(민관 협력 특화사업)
- 위의 어르신을 모셨으나, 심해진 치매증상으로 외부에서 돌아 다니시다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져,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로 입소

□ 서울시 성동구

○ 주거 상담 및 지원 창구의 다변화

- 129보건복지콜센터 등의 비대면 상담
- SH 주거안심종합복지센터(이하 주거상담소)
  - 서울시 다산콜센터 또는 주거상담소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대상자들의 서비스 안내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주거복지 서비스 신청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함.
- 동 주민센터, 구청 내방 대면 상담: 가장 다빈도 상담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니터링 또는 본인의 직접적인 복지 욕구를 통하여 주거복지서비스 안내 및 신청 진행

○ 사례 1)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 일반저소득 가구/ 1인 여성가구(40대)
- 성동소나무센터(구청&경찰) 112신고를 통해 발굴
  - 사실혼 남성으로부터 폭력과 은행출금, 대출, 카드사용 1억 원의 부채 발생
  - 자살시도 등 불안감 호소(경찰 경호 및 경찰비용지원으로 사설 업체 경호), 일시쉼터 분리, LH전세임대 주거지 이전, 파산/면책, 내일배움카드로 전산회계 수강
  - 분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빠른 시일 내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함.

○ 사례 2) 노숙인의 경우

- 일반저소득 가구/ 1인 남성가구(60대)
- 가택압류로 파출소에서 구청 당직실로 보호조치 요청

- 다시서기센터 입소 이후 자진퇴소/112 실종신고/ 경기도 OO구에서 발견
-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퇴거된 주민으로 수급자선정, 돌봄, 건강검진, 고시원 거주 후 LH전세임대 계약체결, 정착지원금 신청
- 구청/ 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와 상담 후 체납임대료 해소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후 퇴거가 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SH, LH에서 강제퇴거하고 다시 고시원, 반지하에서 전세 임대 입주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 사례 3) 노숙인의 경우

- 주민의 신고(통장/이웃)
  -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꾸준히 신고되어 임대주택 입주 설득 진행 중이나 완강히 거부하며 노숙 지속
- 비동거 가족의 요청
  - 당사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왕래가 있는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전화하여 주거 지원 요청
  - 현장 확인하여 주거 지원 안내하고 주거 안정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정신병을 진단받은 당사자는 지원을 거부하고 있음.
  - 비동거 가족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여 함께 설득 중 이지만 해결이 요원함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기초주거급여 상담 시 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대한 안내와 임대주택 선정을 위한 청약저축 가입 등 절수

### 30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학보에 대한 상담 병행 시 대상자들의 복지 만족도가 높음.

#### □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 접수경로 : 담당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이웃
- 접수대상 : 수급, 차상위 / 1인가구(노인, 중장년), 한부모가정
- 대상자의 주거형태 : (반)지하, 고시원, 원룸
- 사례 1) : 고시원 거주자의 거주비 유지 어려움 호소
  - 최근 고시원의 환경개선으로 이용료가 월 45만원 이상인 곳이 늘면서 주거급여로 감당하기에는 부담된다는 호소가 있었음.
- 사례 2) : 고시원 장기 거주자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신청
  - 고시원 거주자의 경우 백만원 이상의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쉽지 않아 고시원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주택으로 이전이 어려워짐. 이에 주거취약계층 사업에 대해 알게 되어 이용자에게 안내한 후 동주민센터 주무관과 논의 후 함께 신청하게 되었음.

#### □ 의창노인종합복지관

- 긴급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가장 빠른 경로임)
    - 지원대상: 독거노인 등 위기 상황으로 주거를 상실한 경우
    - 지원내용: 임시 거처 제공(쉼터, 임시시설), 보증금 또는 월세 지원(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창원시청 복지정책과

- 필요서류: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여부, 소득·재산 확인

### ○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 시영임대주택 신청
- 지원대상: 무주택 저소득층, 독거노인, 주거취약계층(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우선)
- 지원내용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시영임대주택
보증금 없음, 월임대료납부, 장기거주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장기거주	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창원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임대주택,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 신청방법: LH 정약센터 또는 창원시청 주거복지과에 방문하여 상담 및 대행 요청

### ○ 민간 후원시설 또는 단기 쉼터 연계

- 지역 내 독거노인 쉼터 또는 노숙인 보호시설 입소 가능성
- 연계기관: 창원시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창원시립복지원, 민들레 쉼터, 지역 복지관 사례관리팀 등
- 상담경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종합사회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에 문의

### ○ 사례관리 통한 주거지원 연계

- 창원시 지역 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사례 관리를 통해 연계

### 3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연계기관: 창원시 5개 지역구 중심

의창구	성산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창원종합 사회복지관 의창노인종 합복지관	성산노인종 합복지관	내서종합사회 복지관 마산회원노인 종합복지관	마산종합사회복지관 금강노인종합복지관 마산합포노인종합복 지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진해노인종합복지관 진해서부노인종합복 지관

- 지원대상: 각 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복지관별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신청내용: 복지부, LH, 민간자원(의료, 돌봄, 주거 등) 대상자별 필요 지원 내용

####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 지원대상: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분
- 일정한 주거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자, 일시적인 숙박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임시주거 제공, 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사비 지원, 자활·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창원시청 사회복지과

#### ○ 노숙인 발굴 및 보호활동

- 동절기 집중 순찰: 창원시는 겨울철 한파 대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터미널, 역, 공원 등 노숙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주·야간으로 순찰
- 노숙인 조기 발견, 상담 및 지원활동

- 응급구호물품 제공: 시설입소 거부 노숙인에게 장갑, 모자, 양말, 핫팩 등 응급 구호물품 지급
- 진해구 환절기 거리노숙인 보호 활동 : 2025년 4월 공원 및 공중화장실 등 노숙인 발생 가능성 큰 장소 직접방문, 상담, 지원 활동
- 마산합포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마산어시장 일원에서 캠페인 진행

#### ○ 창원시 주거취약계층 조기발굴 지원 사업

-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지역주민 참여유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
- 독거노인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 활동: 우리동네 희망에너지 슈퍼맨
-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 신고 및 상담경로 : 창원시 사회복지과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문의

#### □ 경기도 오산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상담시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증정소득 48% 전후 주민 계층
  - 1인가구 소득인정액 (1,148,166원)

##### ○ 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자 상담시

- 월 임대료 및 관리비나 보험료 등 연체 대상자

### 34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기초수급자, 장애인, 공공복지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 중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나 장기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 시 직접 주거 지원(임대주택) 상담 요청 다수
- 고시원 등 운영자(임대인)가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지원 상담 요청을 통한 대상자 신규 발굴로 연결되는 사례 증가
  - 고시원비 또는 일반주택 월세 체납 세입자가 있을 시 고시원 운영자 또는 주택 임대인이 동주민센터에 상담 요청하는 사례 증가 (주거급여 대상 여부 문의)
  - 신규 발굴 후 맞춤형급여 또는 긴급복지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고시원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입주)을 희망하는 세대가 다수임.

#### □ 세종시 부강면

-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지원 요청은 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이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마을 이장과 협의체 위원 같은 지역 인적자원은 해당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고 주민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정보망에 포착되지 않는 주민들을 발굴 하는 데 효과적이다.
- 실제 사례로, 마을 이장을 통해 면사무소로 접수된 한 사례가 있다. 폐지 및 고물 수거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주민이 컨테이너에서 거주 중이라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현장 확인 결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면사무소는 세종시 주거복지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본 사례를 신속히 연계하였다. 이후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사례관리와 공공임대 연계 과정을 거쳐 LH 매입임대주택 입주가 성사되었으며, 해당 주민은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주거지원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주거 상향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 ○ 기관 발견 사례

###### - 다문화 한부모 가정

- 실직과 퇴거 위기가 동시에 닥친 상황에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긴급 사례로 다문화 한부모 여성의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한국 국적이 없어 미성년인 아동의 이름으로 주거지를 구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주거복지전문인력지원센터(LH)와 함께 연계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 ○ 행정복지센터 의뢰 사례

###### - 한부모 가정

-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두 딸을 양육하는 한부모 여성 가장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세 주거지로 상향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복지관에 의뢰하였으나 추진 과정 중 여성가장이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동시에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며 기존 주거지에 계속 거주로 결정함.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 주로 동주민센터에서 연계되어 요청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동네 주민들을 통해 의뢰되는 경우도 있음.
  - 주민센터에서 의뢰된 경우 :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일정 소득이 없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는 러시아 여성으로, 부부간 다툼으로 남편이 장기간 가출하였고, 백속에는 8개월 된 아기가 있었음. 주민센터에서 먼저 사례 개입을 하였으나 제도적 한계(즉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하지만, 사례접수 후 지원까지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체납된 모텔비용을 해결하고, 새로운 거처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가 있어 복지관으로 도움을 요청함.
  - 복지관에서 모텔비 및 임시거처 보증금 해결.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출산지원, 가족센터를 통한 부부상담 연계, 자활 센터를 통한 남편 일자리 연계 등 안정적인 주거뿐만 아니라 다문화 부부가 지역에서 심리 정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하여 개입하였음.
- 동네 주민들을 통해 의뢰된 경우 : 지역에서 폐휴지를 줍고 다니는 노인으로, 어느 날 얼굴에 심한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이후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됨. 주민들이 말을 붙여보니, 최근 불량 청소년들에게 갈취를 당하고 있고, 당사자가 움막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듯하여, 주민들이 밀반찬 등을 전해주면서, 안정적 거주마련 및 폭력적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함.
- 이에 복지관에서 지역경찰서 연계, 동주민센터 연계, 사연을 접한

지역주민 중 무료로 거쳐제공, 가재도구, 이불 등 기본적인 가재 도구 마련, 동네친구 만들기 및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맺기 유도를 통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연계함.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높은 월세로 생활비 부족하여 국기초 상담

- 급작스런 가정경제 악화의 경우 생활수준과 맞지 않는 높은 민간월세에 거주
  - 생활비 부족으로 국기초 내방 상담, 생활비 부족의 큰 원인이 높은 월세
  - 추후 수급자가 되면서 매입임대, 영구임대 등으로 전입하는 과정이 일반적
- 전세임대가 돼서 옮기는 경우, 보증금 부족으로 포기하면서 기존에 살던 민간 월세를 유지하는 경우, 생활비에서 월세의 비중이 지속으로 높은 상황임.

○ 미인가 건물 또는 지하실에 살면서 간신히 잠만 잘 수 있는 정도의 주거형태

- 즉시 주거취약계층 의뢰하거나 본인 의사에 따라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연계하여 거주지 이동
  - (예) 폐쇄경로당에 무상임차 중인 노인으로 주거급여가 책정되었으나 급여미지급,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의료도 부적합. 추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 의료가 적합으로 책정되고 거주지도 옮기겠다고 본인이 동의하여 이사하고 주거급여도 수급

- 지하실에 살면서 여름에는 물이 차고 곰팡이가 나서 봄, 가을에만 지내고 있음. 여름, 겨울에는 건물 관리실에서 지낼 수 있는 조건으로 관리일을 하고 있음. 주거취약계층으로 거주지 이전 상담하였으나, 본인 거부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 주거상담 경로: 복지당사자, 지역주민, 구의원 등이 자체 발굴

- 복지당사자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지자체 자체확보 주택 입주, 집수리 문의 등 직접 문의·상담
- 이웃, 통장 등 지역주민이 주거취약계층 발굴 또는 연계 의뢰
- 구의원, 지역유지 등을 통한 발굴 또는 연계 의뢰
- 복지공무원이 상담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자체 발굴
- 지역주민 대상 안내할 수 있는 창구 등을 통해 임대주택 정보 제공(사회보장급여 통지서 발송, 지자체 주거복지 관련 안내 책자 발간 및 제공 등)

##### ○ 발굴사례

- 2019년도에 공덕1구역 재건축 추진 당시 공덕동에 살던 수급자 (한부모가족)가 주거문제(이주문제)로 고민하던 중 마포구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마포하우징 사업을 통해 마포하우징 (매입임대주택: 성산1동 소재)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공덕 1구역 재건축이 완공되면 구역 내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예정에 있음. 행정영역이 개입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해 준 사례임.

□ 갈매사회복지관

○ 기초생활수급권 등 취약계층 주민

-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관리비 미납, 연체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
- 복지관 사례관리 참여자로 연결
  - 해당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납부 및 퇴거기한 연장 조정

○ 관리사무소

- 관리비, 임대료 등 미납이나 연체된 주민들을 복지관에 의뢰 하도록 협의
  - 이 외에도 집청소, 방역 등 필요한 세대를 복지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지원

□ 전라북도 군산시

○ 요청 경로

-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자생단체 회원
  - 행정복지센터와 접근성이 좋은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자생 단체회원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요청이 접수되고 있음.
- 방문형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 장애인 등 방문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의사표현이 서투른 주거취약계층을 대신하여 적합한 주거서비스 문의 및 요청이 접수됨.

○ 발굴사례

- 컨테이너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발굴
  - 이장을 통해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의뢰
  - 기초주거급여 책정 후 자산조사 결과, 상속받은 오래된 주택의 소유가 확인됨.
  - 의사소통이 가능한 친인척(여동생)에게 명의변경 등으로 무주택자를 만들어야 하는 상태임. 컨테이너 건물의 땅마저 매매로 넘어가 현재는 여동생 집에 사용대차 거주 중임.

□ 부평구청 부개1동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

- 가(假)건물에 거주
  - 겨울에 발견된 대상자로 주거방문시, 집안이 너무 추워서 냉장고를 켜지 않아도 음식물들이 얼 정도였음. 발바닥이 너무 시려서 서있기조차 힘들었고 화장실은 공동 재래식이었음. 대상자는 종이박스를 깔고 두터운 옷을 입고 종이박스를 덮고 취침을 했었음.
- 다가구 주택의 반지하
  - 여름철 장마로 인해 방과 거실에 물이 들어왔으며, 벽과 바닥의 상당 부분이 곰팡이로 덮여 있어서 호흡하기조차 어려웠음.
- 오래된 다가구 주택
  - 집안에 곰팡이가 많고, 창문이 없어서 공기정화에 어려움 있었고, 공동화장실 사용

## □ 광주광역시 서구

### ○ 상담과 지원요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수

- 당사자 가족이나 보호자가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 접수과정에 눈에 띠는 것은 연령의 차이. 청년이나 한부모 등 중장년세대는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LH/지방공사의 알림을 수신하는 등 정보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지만 고령자는 그렇지 않음. 평생 열악한 수준의 주거여건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연령이 높아지면서 관절등의 불편이 있지만 오래 거주하던 주택에 생활하는 것을 당연시함.
- 2019년부터 시행된 동의 의무방문에서 주거취약자를 발굴하고 연계
  - 구에서 명단을 작성해서 통보해주면 동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7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65세 이하 장애인, 수급자 세대주에 대하여 의무방문 상담 시행
  - 이때, 수급자 또는 장애인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분들의 입주가 연계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입주 자격을 갖추기 위한 지원이 제공. 정보나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선제적 조치임.

### ○ 2020년부터 LH/지방공사와 협업으로 케어안심주택을 운영

- 구청 주거복지팀에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한 후 접수리를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100세대를 케어안심주택으로 운영
  - 이때,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세대를 구청과 동에서 방문한 후 이들의 허락을 받아 싱크대교체, 문턱제거, 화장실 수리, 안전바 설치를 복지부통합돌봄사업 예산으로 시행

## 4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이후 구청에서 입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케어안심주택을 관리. 거주어르신이 이사나 사망하는 경우 원상복귀가 어려우니 노인주택으로 이용할 대상을 추천하는 방식
- 이 과정에는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 집수리를 한 가정에 대하여 복지관의 전담사례관리가 제공. 사례관리사는 구청과 주1회 회의를 통해 통합돌봄서비스 연계제공하고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집단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
- 케어안심주택은 후술되는 중간의집 나은하우스와 연계되어 병원 또는 시설퇴원후 적응기간을 거쳐서 최종 정착하는 장소로 운영.

### □ 경상남도 산청군

#### ○ 주거관련 상담 지원요청 경로

- 본인 혹은 마을이장, 이웃주민의 요청에 의거 신청하고 있으며,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시 일괄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음.

#### ○ 주요사례(복지사각지대 발굴 통보대상자로 발굴된 사례: ooo, 30대.미혼)

- ooo 생활실태(23년 8월 기준) : 30대 미혼으로 간 질환이 심하여 병원 방문결과, 간 이식 외에는 치료방법이 없고 약물치료는 현상유지만 할 뿐이라고 하여 약물치료도 하지 않고 있었음. 정신과 진료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 피부에 멍이 자주 들고 몸이 가렵다고 함. 코로나19 이후

실직으로 카드값 5백만원, 대출금 1천만원의 부채가 있음.

- 2022년 3차(2022년 5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보대상자로 건보료 11개월 76천원, 통신비 등 체납이 있었으며, 이후 우리군으로 전입하였음. 2023년 2차 복지사각지대발굴(2023년 4월) 통보대상자로 통보되었으며, 건보료 21개월 367천원 체납, 전기료체납, 통신비 등이 체납되어 있었음.
- 전입후 아버지와 함께 작은 목조주택(방1,주방1)에서 살았으나 방도 좁고, 아버지와 자주 불화가 있어 따로 살기로 함. 아버지 지인의 밭에 있는 3평가량 컨테이너에서 살게되었고, 마을이장이 어렵게 생활한다고 하여 군청에 얘기하여 사례관리대상자로 접수되었음.
- 2023년 8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긴급생계비 지원,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가능,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연계함. 장애등록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 등을 위해 꾸준히 병원 진료 받을 것을 안내함.
- 2024년 2월 근로능력평가결과 근로능력 없음(2단계)에 해당되어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에 해당됨. 평가질환 B형 간염 관련 간경변증 등(유효기간 2024.2.5.~26.2.4) 주거급여는 해당없음(컨테이너 무료임차).
- 밭에 컨테이너가 있어 퇴비 냄새가 심했으며, 주거상태도 열악하였음.
- 수급자 책정 후 일상돌봄서비스 72시간, 반려로봇 지원, 집 정리정돈사업 투입, 빨래방 이용하여 이불과 옷을 세탁하여

줌. 푸드뱅크 물품 지원 등 진행.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병원 입원하기도 함.

-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4. 5월 LH임대아파트 영구 임대주택 신청을 안내하여 수급자 1순위에 해당되었으나 관리비 등으로 포기함.
- 2025년 4월 현재, 여전히 컨테이너에서 생활 중임. 푸드뱅크의 기부물품이 계속 지원되고 있으며, 일상돌봄지원도 연계되고 있으나 집안 정리정돈이 여전히 잘 되지않음. 약복용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 주거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귀하가 소속한 기관에는 주거 관련 전담 부서나 담당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또한,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주거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주로 연계하는 기관이나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LH, 매입임대주택 지원 등) 특히 LH, 지방공사, 주거복지센터, 지역 주거지원 단체 등과의 연계 여부 및 방식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 □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 주거관련 전담 부서 및 인력 배치

- 기관 내 사례관리팀을 별도로 두어 주거취약계층 세대를 위한 정보 및 자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구청 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주거복지분과가 있어 구 차원에서 연계기관들이 주거관련한 정보를 공유 및 이용자를 위한 자원 연계를 함께 하고 있음.

- 복지기관 내에서는 시정사업의 일환인 희망온돌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지원을 연계 (예:이사비 지원, 월세비 지원 등)
- 공공임대주택 제도 및 주거급여 관련해서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연계 진행
-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주거상담 및 정보 제공, 임대주택 신청 지원, 주거관련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서비스 제공

□ 전라남도 영암군

- 현재 영암군은 주거지원 관련 복지업무 담당자는 도시디자인과 주택조사팀에 배치가 되어 있음.
- 대부분 주거지원 상담 관련 문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상담을 통해서 신청되고, 통합조사팀에 의한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주택부서 배치를 통한 주거복지 업무 수행
  - 고양시는 복지정책과에서 주택과로 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업무를 이관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주택과에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 일선의 동행정복지센터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주거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 고양시는 2014년 맞춤형 급여 개편을 앞두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을 주택과에 배치하여 주거복지사업을 시작하고, 맞춤형 급여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명의 사회복지직을 주택과에 배치하여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1년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임대주택 업무와 긴급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경기도 주거대출관련 사업 등을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이관하고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준비하며 4명의 사회복지직이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024년 부터는 5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근무하며 ▲ 주거복지센터 운영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주거급여 ▲ 집수리사업 ▲경기도 주거관련 대출사업 ▲주거사다리사업 및 긴급주거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1월 현재 고양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에는 행정 6급 팀장 1명, 사회복지직 6급 부팀장 2명, 사회복지직 7급 2명, 사회복지직 8급 1명, 주거복지전문 임기제 공무원 1명, 주거상향 기간제근로자 2명 등 총 9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중 사회복지직 6급부팀장(주거복지센터장)과 7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주거복지전문 임기제공무원 1명, 주거상향기간제 근로자 2명 등 총 5명이 고양시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거복지팀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5명에 불과 하지만 이 인원들을 통해서 3개 구청과 44개 일선 동행정복지센터, 민간 사회복지기관 주거복지 업무 담당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고양시 전체의 주거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 주거복지 사업의 수혜자, 이용자들은 생계, 의료, 교육복지 사업의 대상자들과 분리되지 않고 대부분 중복된다. 그러므로 주거복지 이 외에 생계, 의료, 교육복지 사업 등에 대해 통합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주거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 조직이자 시민과의 점점인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초기상담하여 통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의 통합적인 사회복지업무 수행 경험 이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에서 해당 업무를 총괄하며 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자들과 다양한 복지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행정을 원활 하게 펼칠 수 있다. 복지행정에 익숙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도시 및 주택행정 전반을 다루는 주택정책실 산하의 주택과에 근무하며 사회주택, 공동주택 관리 등 주택행정에 대해 보다 폭 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한 주거지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균형 있는 시야와 역량 을 갖출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지원 절차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와 업무연계 개선 필요 사항
- 주거복지 사업의 영역 중 주택 공급분야는 기초지자체의 역량 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거의 대부분 LH 또는 SH, GH와 같은 지자체지방공사와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 주택의 입주 모집 홍보 및 신청 안내,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소득·재산 적합자 LH 및 GH 통보 등 많은 부분을 지자 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도 혼자 힘으로 입주할 전세임대주택 물색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을 돋는 것도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 저소득가구 임대주택 입주 절차



- 임대주택 정기모집이 외에도 주거사다리사업,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수시 모집 등을 통해 LH와 GH로 소득·재산 적합 대상자 명단을 발송한다. LH와 GH에서는 추천한 대상자들에 대한 최종 확인 조사 후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 충청북도 청주시

- 저희는 주거를 둘마다 한 명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담당 인력이 있습니다. 주로 LH에서 공고가 내려오면 주로 1순위(수급자, 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고 소득 재산을 확인하여 대기자 순번을 정하여 LH에 대기자 명단을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긴급하게 집이 필요하거나 집수리가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 디딤 하우스나 긴급집수리와 같은 사업을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 우리 기관과 군은 주거 지원과 관련한 전담 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복지 관련 팀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보 제공,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우리 군의 9개 읍·면에서는 LH 임대아파트가 드물고, 도시화 된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고령의 대상자가 현재 거주지를 떠나 이주를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 연계 단체 및 방식

-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LH 입주 정보 제공
- 군에서 위기가구 지원사업 또는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 지원 실시
- 군과 종합사회복지관 연계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기획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및 주택신축 매칭그랜트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
- 군 내 자체사업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우리동네 복지 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등을 통해 노후 주택 개선 및 맞춤형 주거 지원
- 각 기관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한 개별 지원
- 사례관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외부사업(한부모가족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장애인 주거지원사업 등)에 신청하여 지원 연계

□ 경상남도 의령군

○ 주거관련 전담부서

- 도시재생과 주거급여담당
  - 매입임대, 공공임대, 주거급여 지원담당 1명 배치
  - 맞춤형복지 주거급여 지급업무가 주된 업무, 고령화 농촌지역  
이라 공공임대 등은 청장년 위주로 입주하고 대다수 주민은  
일반주택 거주
- 외국인 노동자, 귀농귀촌 상담을 통한 주거상담은 농업관련  
부서에서 상담
  - 농촌 체험 한달 살아보기
  - 농업 영농법인 농작물체험 프로그램 등
  -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기존건물(모델) 활용 제공
- 복지부서 주거상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시 주거급여 안내 : 월세 등  
임차비 지원
  - 노숙인 보호시설 및 노인일시보호시설 : 시설입소
  - 65세 이상 질환자 : 재가급여후 노인요양원입소(주소이전)

□ 증평삼보사회복지관

- 주거 관련 전담 부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요청은 사례관리팀을 통해 접수 및 의뢰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자는 대상자의 주거 환경과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에 따라 외부 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주거비, 이사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보증금, 임대료, 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영역으로, 지원단체와 대상자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절한 기관을 탐색하여 연계하고 있으며,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및 복지 지원단체 등 주거 관련 지원이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안전, 건강, 가족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통합적인 사례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원을 연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 □ 세종시 보람동

- 주거관련은 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에서 전담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읍면동 및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연계

#### □ 서울시 성동구

- 주거 상담 운영 현황
  - 성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 구청 기초복지과 자활주거팀 담당자(임대주택, 주택개보수 등)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주거복지 담당) 배치를 통하여 주거 상담이 이루어짐.
    - 주된 서비스로, 취약계층 임대주택(기존, 매입, 영구)·주택

개보수사업·SH 주거상담소의 주거상향지원사업(이사비 및 생필품지원비)·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등의 사회보장급여 사업 등이 있음.

- 취약계층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구청 담당자의 선정 공문을 공사로 발송한 후 SH 주거상담소의 공문을 근거로 분기별 선정 대상자 명단을 공유하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근거) 선정 대상자들이 주거상향지원사업(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SH 주거안심종합센터

-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주거복지 담당팀 및 주거상담소가 있음.
  - 민관협력협의체에 참여: 구청 및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위해 성동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주거분과, 어르신분과 등 다양한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있음
  - 통합사례회의에 참여: 17개 동주민센터 월 1회 통합사례 회의에도 참석하여 대상자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보 및 주거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이동상담소 운영 및 주거 교육 실시 : 지역 내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 곳곳에서 이동상담소를 열고 민관의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주거관련 교육을 하고 있음
  - 구청(자활주거팀, 희망복지팀)·동주민센터·수시로 연락체례 가 마련되어 있어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통합사례관리)
- 사례관리대상자는 거주지 상향의 경우가 많음.

- 신청 및 서류 절차 등의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해 신청 안내 및 선정된 이후 LH, SH 방문 및 부동산 동행 등 서류 준비 계약을 지원함.
- 공공 및 민간에서 발굴, 의뢰되는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주거복지서비스가 욕구(규범, 표현)로 확인되는 당사자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안내 및 신청 지원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 추진

- 대상자: 1인 독거 노인(남, 72세), 기초수급자
- 6년 이상 저장강박 증세로 3톤 이상 폐기물이 방치되어 주민 센터(돌봄sos), 청소과, 주거복지센터 연합으로 주거환경 개선

□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 전담부서 유무 : 없음.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관련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고 있음.

○ 절차 : 담당자가 주거지원 사업 정보 취득하여 안내

- 권역 사무실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개별 문의하여 연계
- 민간 주거지원 자원 조사 및 연계
- 동주민센터에 의뢰하여 공적 자원 연계

□ 의창노인종합복지관

○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위기취약계층 사례관리 지원사업

- 담당인력 : 사례관리팀, 담당 사회복지사 1명

## 54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 지원절차

- 내부사례회의 및 사정 : 대상자의 현재 거주상태, 소득, 건강 상태, 사회적 지원망등 확인 등 사례관리 절차에 따라 진행
- 공적 지원제도 연계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신청을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로 연계

② 주거취약계층 : LH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연계

③ LH 경남지역본부,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협력

- 민간자원 활용
-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민간후원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기업체 등)
- 비영리 쉼터와 협력
- 위기취약계층 집 개보수지원사업 신청 : 독거노인가구 집개 보수 실시
-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용
- 노숙이나 강제 퇴거 등 긴급 상황의 경우 읍면동을 통한 긴급 복지(주거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대리 신청 또는 동행 지원을 제공

### □ 경기도 오산시

○ 도시주택국 주택과 공동주택팀에 주거관련 담당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주거 관련 전담부서는 없음.

- LH, GH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천 및 주거상향지원 LH 연계(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 소년소녀가장)
  -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신청(주민센터) → 입주자 선정통보
  - (시, 군->공사) → 대상자 선정발표(공사) → 입주희망 주택 물색(입주대상자) → 전세계약가능검토(공사) → 전세계약 체결(공사/임대인/입주자)
  - LH 전세임대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심사 필요시) 구청 또는 시청 소득 자산 등의 1~2달 짐사 → LH로 공문 이관 → LH 내부적으로 짐사 2~3주 후 신청자에게 당첨 문자 및 안내문 일반우편으로 발송 → 입주자 전세주택 물색 → 입주자(중개사)에서 LH법무법인으로 계약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주택심사 요청 → LH법무법인 검토 → 입주자(중개사)와 LH법무법인, 임대인 계약가능일에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액(본인부담금) 입주자 준비 → LH법무법인에서 LH로 계약관련 서류 이관 → 계약 후 입주자가 잔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전입신고 완료 후 주민 등록등본을 LH에 제출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성북구의 경우 주거전담팀이 없으며,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에서 1명(담당)이 업무 중
  - (동)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청·접수, 생활실태조사 등
    - 매입임대는 공급물량이 없어 장기대기(1~3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가 많음.

- 전세임대 선정 이후, 고령자 등 주택탐색이 어려워 입주까지 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구) 적격여부 확인 후 각 공사(LH, SH)에 입주대상자 송부
- (공사)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후 최종 입주대상자 확정, 개별 통보
- (주거복지센터) 주거상담, 주거취약계층 신청·접수, 긴급주거비 지원 및 사례관리 등
  - 주택물색 동행 역할, 주거취약계층 발굴 시 직접 신청·접수 받아 구청으로 송부
  - 대상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법적 분쟁의 경우, 응호 역할 등

#### □ 세종시 부강면

- 주거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리 지역에서는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의 주거급여 담당자 및 주민생활지원팀을 중심으로 초기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 불안이나 위기 상황이 포착되면, 이들 인력이 1차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 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담 부서로는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주거 지원이 이루어진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이사비용 지원, 임시거주지 마련,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영구임대 등) 연계 등이 있고 특히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의 경우,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 관리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원 절차는 주민센터를 통한 초기 접수 → 상황 판단 및 주거복지지원센터 연계 → 맞춤형 제도 적용 및 연계 → 주거 안정 확보의 단계로 이뤄지며, 필요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 시청 복지정책과, 복지로, 민간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 주거 관련 전담 부서나 담당 인력 배치 여부

- 본 기관은 영구임대 아파트 내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주거 복지 수혜자가 주로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거 관련 전담 부서 및 담당 인력은 없음.
- 주거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례 접수 시 사례관리사가 직접 개입하여 자원을 탐색하고 연계함.

- 주요 연계기관 및 제도

- 주요 연계기관
  - 행정복지센터 : 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기타 복지 서비스 연계를 담당
  - 주거복지전문인력지원센터 :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통해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영구임대아파트와 매입임대·전세 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

- 주요 제도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제도 :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지원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 복지관에는 주거관련 전담부서라기 보다는 사례담당 부서가 있고, 2명의 전담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례관리의 과정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관의 자원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개입하려고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주거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LH와 지역별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고 있으며, 비공식적 자원으로는 지역주민봉사 단체, 지역종교단체 또는 지역 후원자를 중심으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함.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시-구-동에 주거 관련 부서 또는 주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관이 있음.
  - 주거지원은 주로 수급자가 상담을 오거나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내방하여 상담 및 연계가 이루어짐.
  - LH에서 하는 임대주택 공고 알림 서비스를 안내하고, 위기 가구 또는 건강 및 노령 등의 사유로 스스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따로 관리하여, 공고시 안내

-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주거 수리 및 청소 지원 등의 사업은 대상자가 적합하고, 주거형태가 맞는 경우에는 바로 연계 가능함. 그러나 각 사업마다 거주형태 또는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 사용빈도가 높지는 않음. 주로 동에 와서 거주지 수리 관련한 욕구를 보이는 사람들은 영구임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사업장에서는 영구임대단지는 제외하는 경우가 많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주거전담부서 배치여부: 전담부서 배치되어 있음.
  - 마포구에는 복지정책과에 주거복지팀이 별도로 배치되어 4명의 직원이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전담팀이 외에도 어르신동행과에서 효도숙식경로당 운영, 주택관련부서 등과 업무협업하여 주거복지 지원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신청접수 및 상담 업무가 구분됨.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분야 중 영구임대아파트,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공공주택사업자(LH 및 SH공사)의 주도하에 지자체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입주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재개발임대아파트, 재건축임대아파트,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공공주택사업자(LH 및 SH공사) 측에서 직접 입주자를 모집함.
  - 임대주택 문자알리미서비스를 홍보하여 욕구가 있는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60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마포구 주거상담소'와 연계, 협력하여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마포구에서 주거복지 별도사업으로 마포징검다리주택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 중임.
    - 마포징검다리사업 추진, 다봄하우스 추진, 효도숙식경로당 운영 등 마포구만의 특수사업을 추진 중임.
  - 기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추진 중임.
- 갈매사회복지관
- 주거 관련 전담부서나 인력 전무
  - 관계기관별 소통 및 절차 확인
    - 관리사무소, 행정복지센터, LH에 주거 정보, 신청 방법 등 대면이나 유선 문의
      - 취약계층 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단지 등 주거 연결
      - 주민별 경제 상황에 따른 적합한 주거 연결
    - 낮은 효율성 및 한계
      - 관리사무소: 정보를 알지 못함.
      - LH: 담당이 아니라며 부서 간 연락 떠넘김, 막상 알 수 있는 정보는 한정
      -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에 따라 정보망 상이

□ 전라북도 군산시

- (전북 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팀 구성(인력: 팀장1, 주무관 4/복지2, 시설2)

- 주거지원 절차

- 대상자 발굴
  - 대상자가 주거지원 직접 요청
  - 민간(이통장, 이웃 등)을 통한 간접 요청
- 현장방문 및 대상자 상담
  - 주거지원 내용 확인
  - 적합한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 주거지원 서비스 내용
  - 주거환경개선 : LH 수선유지사업, 그린 리모델링사업 등
  - 주거비 지원 :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지원 등
  - 주거지 이주 : LH 영구, 국민, 매입, 전세임대사업

□ 부평구청 부개1동

- 인천시 부평구청 건축과 주거 안정팀(6명): 팀장 1명, 팀원 5명
- 주거취약계층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의 주거를 조사하여 해당 과에 송부 → 해당 과 취합 및 검토 → LH 결정 → LH가 대상자에게 통보 →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 계약 등 지원
- 전세임대, 매입 임대 등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합하여,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은 이를 취합하여 LH에 통보함으로써 LH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LH가 대상자에게 통보 및 거래 진행

## 6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 광주광역시 서구

- 현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에 주거의료복지팀이 설치되었습니다
  - 2014년 생활보장과 주거복지팀 설치: 주거급여시범사업참여 / 팀장1, 팀원 2
  - 2015년 건축과 공공주택복지팀으로 전환: 건축부서와 결합 / 팀장1, 팀원 4
  - 2020년 통합돌봄국 통합돌봄과에 주거급여팀 설치: 통합돌봄과 결합하고 케어안심주택 운영 / 팀장1, 팀원 2
  - 2023년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주거의료급여팀으로 변경: 아동주거빈곤 조례마련후 최저주거기준 적용 / 팀장1, 팀원 8
  - 2025년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주거의료급여팀으로 변경: 팀장1, 팀원 8
- 주거지원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경우, LH나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모집공고가 있을 시 ① 본인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② 소득재산조사(구청 복지급여과) → ③ 지원대상자 명단 제출(구청 돌봄정책과 → 시청 주택정책과) → ④ 5개구 대상자 취합(시청 주택정책과) → ⑤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예비입주자 순위 선정(LH 및 도시공사) 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LH의 지원을 받아서 중간의집 나은하우스를 운영합니다.
  - 2019년 통합돌봄시범사업을 통하여 LH/지방공사와 협업이 이루어집니다.
    - 약 10여 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매입임대주택형식의 12호의 장소, 설계부터 의견을 제시하여 건립하고 운영권을 위탁받았습니다. 자자체에서 보증금을 부담하고 월세와 관리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중간의 집입니다.

- 2020~2021년 동안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22부터는 빛 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매일 물리 치료사/작업치료사가 상주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여 야간과 주말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AI스피커 등을 설치하여 서구의 고령자스마트케어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경상남도 산청군

##### ○ 주거관련 전담부서 현황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담당 - 주거급여업무 담당자
- 주거급여업무담당자 1명이 주거업무, 보훈업무, 재해구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괄 신청 후 조사전담기관(LH)의 조사 결과에 의거 주거급여대상자로 책정되면 자가소유자는 수선 유지급여(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2.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제도 안내 연계 과정

### ▣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력 미흡

- 정보가 필요한 세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맡은 담당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하나, 주거복지 센터 담당자 외에 타기관 담당자들은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정보력이 미흡함.

#### □ 전라남도 영암군

##### ○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임대주택, LH 지방공사 등 제도안내 등 공문 안내는 해주지만 정작 세부적인 지원절차,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함.

##### ○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임대주택, 공공주택 등 지원이 매우 부족함.

##### ○ 대상자 선별 시 읍·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까지 제도 안내가 쉽지 않아 대상자 선별에도 어려움을 가짐.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 주거취약계층 밀착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인력 강화 필요

- 고양시주거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주거복지행정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시원,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들을 밀착 지원하여 주거 상향 및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서비스 현장의 최일선기관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취약계층 발굴 ▲스스로 부동산을 통해 이사할 집을 찾기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건강약자의 주택 물색 동행 및 이송 지원 ▲주거상향가구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2024년 10월에는 주거상향지원 사업 수행 3차에 접어들어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2~2023년 동안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완료한 가구 중 101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주거사다리사업, ▲긴급주거 지원사업,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사업, ▲집수리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동상담소 및 네트워크 사업, ▲민간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고양시주거복지센터에는 3명의 공무원(민간전문가 임기제공무원 1명 포함)과 2명의 주거상향사업 기간제 근로자로 위와 같은 사업을 모두 추진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 초기 다양한 기관에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민간 주거복지 전문가를 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주거복지 센터가 다양한 성격의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특히 주거취약계층 현장지원을 담당하는 인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는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도 운영인력상 어려움이 많지만, 많은 주거복지센터 특히 직영으로 주거복지 센터 운영을 시작한 곳 중 고양시보다 배치인력이 적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큰 지자체가 많다. 주거복지센터가 주거취약 계층 현장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적극적인 인력배치 노력이 필요

#### ○ “중앙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 각 지자체는 주거기본법 제22조 제1항과 조례에 근거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24년 11월 현재 68개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62개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정부합동 평가에 주거복지센터 설치여부를 반영하는 등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단위의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아직 설치되고 있지 않다.
-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빈곤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8년 설치된 중앙자활센터는 2019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주요사업은 ▲자활지원사업 개발 및 평가 ▲자활정책 연구·지원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자활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자활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자활교육사업 ▲자산형 성지원사업 등이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개발, 자활정책 수립, 자활기업 지원, 자활정보시스템 운영, 자활인력 양성, 자활네트워크 구축, 광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 2015년 주거기본법이 시행되고 약 10년이 지났으나 전국적

으로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62개소에 불과하다(2024년 11월 현재).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주거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이었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전국 지자체 중 60여 곳만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중앙단위의 주거복지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안정적인 거처가 없어 고시원과 쪽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주거취약 계층과 주거복지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사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 인지 보여주는 거울일 것이다. 중앙주거복지센터의 신속한 설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주거복지정책이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충청북도 청주시

- 주거지원 관련하여 대부분 1순위가 아닌 일반인 분들이 상담을 하려 오십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LH에 직접 문의를 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연세가 많으시거나, 직접 문의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동에서 문자서비스나, 전화를 하여 문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상자가 주거 문제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도움 요청이 필요한 사안으로 받아들 이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도 대상자의 반응이 소극적이며,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움.

○ 주요 어려움

- 대상자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장기간 익숙해져 있어 개선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서비스 진행 시 당사자보다 오히려 이웃 주민들이 주거 개선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심리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부담감이 커 불편함을 감수하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 또한, 개선을 계획한 이후에도 잊은 변심이나 요구 사항 변경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일부 대상자는 주거환경 개선보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여, 주거지원 참여를 유보하거나 기피함. 특히,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무상 지원이 아니면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 LH 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대상자들은 우선순위 가점 제도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필수 증빙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일부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자의 경우, 고물을 수집·판매하는 활동을 생계가 아닌 소일거리로 여기며, 위생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주거공간이 쉽게 비위생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청결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 경상남도 의령군

### ○ 주거급여 제도 안내나 상담시 어려운 점

- 신용불량 및 금융관련 파산자가 본인외 타인 명의로 공공임대 주택이나 주거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사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 특히 월세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개인의 욕구에 충족되는 공공주택 등이 없을 경우
- 매입임대주택(빌라형)을 원하나 공공임대(아파트형 복도식) 권유시
- 공공임대, 정부지원 임대주택 등 임대보증금 마련 문제
  - 한부모가족 등 대다수 LH에서 시세보다 저리로 응자하나 신청 등 절차마저도 힘들어 함
- 복지부서 주거상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시 주거급여 안내 : 월세 등 임차비 지원
  - 노숙인 보호시설 및 노인일시보호시설 : 시설입소
- 의령군 주거급여 담당 업무시 안타까운 점
  - 고층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는 어르신들께서는 저층 공공 임대아파트를 원하며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아파트 층수, 공실 등을 연계하기가 어려움.

## □ 증평삼보사회복지관

### ○ 영구임대주택은 지자체에서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

하기 때문에 공실이 있더라도 긴급하게 거주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생계·의료 수급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최소 200만원 이상 필요하며 일반 세대의 경우는 최소 800만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위기 가정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보증성 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이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 사망하거나 퇴거하게 되는 경우, 임대료 연체나 주택 파손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부재하여, 관리사무소와 사례관리 담당자가 행정적·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 체계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임대아파트는 대체로 소형 평수가 많아,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입주가 어렵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족 수에 적합한 중·대형 평수의 주거지를 선택할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아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입주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 규모와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평형대의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 세종시 보람동

-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주거지원 제도 안내서 필요
- 여러 주거지원제도를 복지 업무 담당자도 한눈에 파악이 힘듦.
- 주민의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을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통합 안내서가 있다면 좋을 것 같음.

□ 서울시 성동구

○ 통합 콘트롤타워 부재

○ 공공임대주택 담당 부서 산재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건설·재건축·청년주택·행복주택·국민 임대 등 수십가지의 임대주택을 지칭하여 국토교통부를 주무 부서로 하는 사업임.
- 그러나 각각의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구청에서는 주택정책과·건축과·주거정비과·기초복지과·각 공사 등 여러 부서(기관)에서 나뉘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음.
- 지역 주민들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세부적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 상담 시,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만 상담이 가능하며
- 이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 접근성이 유용한 상담처가 존재하지 않음(서울시 전 자치구에 배치된 SH 주거상담소의 경우 또한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만 상담 가능).
- 지역 주민들이 해당되는 임대주택 상담을 받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공사 상담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임.

○ LH·SH 공사 및 시군구 간 선정 및 계약 체계(주거취약계층 임대 주택 관련)

- 기존·매입·영구 임대주택(취약계층 임대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군구청장 선정 후 관련 공사로 직접
- 공문을 송부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SH공사의 경우, 서울시 산하 공사이므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 LH공사의 경우 업무 개선에 대한 피드백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구조임.
- 이에 따라, 지침 변경·사업 개시 및 종료·모집 종료·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관련 근거를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들은 알 수가 없으며, 오히려 자치구에서 공사로 관련 내용을 알리어 역으로 사업담당기관으로 사업수행기관이 사업 추진을 협조받고 있는 상황임(1년 동안 공사를 통한 공문 10개 이하 접수).
-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경우,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으로 콘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1년 동안 공문 5개 이하 접수).
-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논의 및 질의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 담당자들이 공사 담당자들과 직접적으로 질의 안내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공사들 간에도 관련 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공사 간 같은 사업임에도 안내가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음.

○ 당사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유지 곤란

- 저소득의 취약계층이 다수 차지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느낌.
- 수요 대비 낮은 공급에 따른 주택(전세임대 등)의 실질적 활용 곤란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적절한 매물을 찾지 못한 채로 입주 가능 기한이 경과하거나 입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

- 민간임대와 전세임대 주택 시세 차이 임차인들이 전세임대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시세 차이로 인한 추가 임대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도 부동산업체, 임대인들의 편견으로 계약 등에 어려움 많아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들의 인식변화 필요

○ 기존 거주 지역 전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음

- 고시원 및 노숙 등 계속 거주 희망

○ 임대주택 선정에도 경제적 문제 해결 능력 미약

○ 임대주택 유지의 문제: 재계약 시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의 경우 본인이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 이 경우 노모에게 공공후견인 제도가 승인되었음에도 공공 후견인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내부 지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몸을 제어할 수 없는 어르신이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이에 대한 실질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가용자원을 통한 체납금 해소에 어려움

□ 서울시 광진구 중곡 제1동

○ 주거취약계층은 전세임대주택보다 매입임대주택을 선호하나 매입 임대주택이 현재 생활주거지에서 멀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 하는 사례 발생

○ 공공임대주택 신청시 공사의 공고시마다 동일한 신청 접수과정을 진행하여 대상자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접수담당자의 애로사항이 많음.

## 74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접수는 한번만 진행하고 선정 접수 표상 변동사항에 대하여 임대주택 공고시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함.

### □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의 어려움.
  - 주거지원 사업별 상이한 자격 조건 및 전문적 정보 필요
  - 재산 상황, 청약 등의 당사자 별 경제 정보와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조건, 지원하는 영역 등 필요로 하는 전문적 정보가 많은데, 각 영역별 상이한 부분이 있어 통합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주거지원 제도의 한계(실무자 입장에서)
  - 공공임대아파트
    - 신청은 어렵지 않으나 수량이 많지 않아 텔락 확률이 높고, 대기 기간이 길어져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음.
  - 전세임대주택
    - 자치구에 따라 보증금 격차가 커 전세금 지원 한도액에 맞는 주택을 찾기가 어려움.
    - 선정된 후 계약 가능한 매물을 선호하지 않는 임대인이 많아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빈번함. 전세임대주택 임대를 허가하는 주인, 보증금의 한계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임.
  - 주거취약계층 당사자의 입장
    - 본인이 살던 익숙한 지역을 떠나야 하는 두려움. 노약자일수록

거주지 변동에 대한 거부감이 심함.

□ 의창노인종합복지관

○ 제도 복잡성과 자격요건의 다양성

- 대상자는 본인이 해당 제도에 지원 대상이 되는지 조차 잘 알지 못함
- 신청 절차 또한 복잡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음

○ 모집공고기간 비정기적이거나 짧음

- 모집공고기간이 비정기적이어서 정보접근에 어려움.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실질적 도움 미비

○ 주거지원관련 외부지원 연계시 해당기관의 담당직원 불친절, 대기 시간이 길어 당장 필요한 주거 지원에 연결이 잘 안됨.

□ 경기도 오산시

○ 보통의 경우 1인 독거노인이나 연로한 주민이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 전달 시 이해도가 낮아 연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매입임대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가 많으나, 제공 물량이 거의 없음.

○ (성북구) 매입임대의 경우, 2021년 8월 이후 모집공고 없음.

○ 주거취약계층(고시원, 쪽방 등 3개월 이상 거주자)의 경우

- LH공사 : 매입임대 물량이 없어 신청 제한
- SH공사 : 선정 후, 3년 정도 장기대기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공고의 주 대상이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저소득층 제공이 제한적임.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능 주택물량이 적음.
  - 2023년 : (성북구) 총 437명 신청, 30명(6.8%) 예비입주자 선정
  - 2024년 : (성북구) 총 492명 신청, 2025년 4월 현재 예비입주자 선정 미발표
-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도 거의 없어, 동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에게 수시로 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안내 민원건수가 많음. 아울러, 매년 신청해도 탈락하는 대상자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적 민원 발생
- 한편, 임대주택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중 고령자가 많아 주택 탐색에 어려움이 있어 입주까지 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나, 통합사례관리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상자들의 주택탐색을 동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담당의 딜레마).

#### □ 세종시 부강면

-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지원 제도를 주민에게 안내하거나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업무 관련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신청과 관련한 정보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주택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고.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주거급여 민원담당자가 일일이 임대 공고문을 찾아 안내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구조는 행정 인력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제때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 안내의 어려움

-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지원 제도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주로 취약계층(다문화 가정, 문해 능력 저조자 등)이 대부분으로 제도와 절차를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를 상세히 안내해야 하며 서류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주더라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주거지 명의 문제

- 다문화 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성과 이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구한 주거지 명의 문제로 이혼한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주거지를 새로 구할 수 있어 문제 처리가 까다로움.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관련 문제

- 해당 사업은 선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긴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어려웠으며 공시지가와 전세금액 간의 차이가 있음.
- 전세금액과 공시지가 차액 문제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반복되며,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음.

####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 복지관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제공해주는 금융 및 관련정보를 기반으로 안내 및 상담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 주거지원 제도 안내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연락처 및 담당자를 연계해 드리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음.

####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제도 홍보 시, 대상자, 거주형태,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확한 안내 필요
  - 각기 다른 제공기관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개별 자자체 사업을 전국 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로 인하여, 민원인이 왜 본인은 안되는지 등의 사유로 따질 때가 많음.
  - LH에서 진행하는 임대사업 종류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사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보증금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신청을 하고, 적합 판정 후에 공무원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돈이 없다 등의 말을 하는 경우 난감.
  - LH, 주거복지센터, 관리사무소의 역할이나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민원인이 모든 업무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오인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시 애로사항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시 입주대상자 선정이 공사측이 마련한 가점제로 결정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당사자분들은 입주가능성을 크게 가지고 있어 결과에 대해 실망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입주 인원도 다수가 아닌 소수여서 입주 인원이 현행보다 증가하기를 희망함.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마포구의 경우 입주 커트라인은 높은데 반하여 입주 신청자 수가 많아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함.

○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시 애로사항

- 수요 욕구에 반하여 ‘정기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상대적으로 적음.
- 전세임대주택 지원금 상향 조정 필요
  - 서울시의 경우 1억 3천만원으로 증액을 희망함. 주택 물색에 어려움을 토로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가 축소됨. 예전의 경우처럼 지층, 옥탑, 주거열악가구 등 지원대상의 범위를 까다롭게 하지 않았으면 함.
- 전세임대주택 물색 관련 정보제공 희망
  - 전세임대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전세임대 주택 물색에 대한 정보 및 지원금 부족으로 입주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주거상담소에서 고령자 등 주거취약가구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외 다수의 인원이 주택 물색에 어려움 토로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본인부담보증금 기준 일률적 변경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신청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보증금 기준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변경 희망(항목에 따라 지원 기금의 5% or 50만 원)

○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시 애로사항

- 입주 신청 후 대기기간이 2년 남짓으로 너무 길어 실효성이 의문임.
- 공가 발생 주택에 대한 집수리 등 쾌적한 주거환경으로의 개선 필요
- 매입임대주택 확대 제공 필요

○ 재개발임대아파트,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시 임대조건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텐데, 영구임대아파트 임대 조건의 경우처럼 임대조건이 하향된다면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진입이 조금 수월할 것으로 예상됨.

○ 임대주택 상담 및 신청 창구의 일원화 희망

- 민원인 임대주택 상담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에 대해 포괄적인 상담을 희망하나, 지자체에서 상담 신청이 가능한 영구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등 한정적인 임대주택 정보만 상담 및 신청하고 있어, 그 외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상담 희망 시 LH 및 SH측에 다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창구의 다원화로 어려움이 있음. LH 및 SH측에서 일원화하여 상담 및 신청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 되기를 희망함.

□ 갈매사회복지관

○ 일원화되지 않은 구조에 대한 복잡함.

- 기관별 연락하고 회신받는 과정으로 주민과의 소통 지연
- 기관별 상황에 따라 주거 정보 파악에 대한 한계

○ 개입의 한계

- 관리비, 장기미납 세대 등 복지적 접근의 한계, 연계 후 파악 불가능

□ 전라북도 군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접근성 불리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 활용도가 적은 계층(노인 등)이 알기 어려움.

○ 주거지원 정보 부족

- 자체 주거지원 제도 이외 LH 등 다른 기관의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 어려움.

□ 부평구청 부개1동

○ 대상자와 LH의 주거 계약 진행 등의 어려움.

- 대상자들에게 주거지원제도 홍보 및 접수는 어렵지 않음.
- 선정된 대상자들이 LH와 함께 집을 구하고 계약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대상자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오셔서 계약에 대한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함(그러나 행정복지센터는 LH와의 계약이며 진행이기에 대답이 곤란함).

□ 광주광역시 서구

- 주택수요가 있거나 개선 의지가 있는 많은 분의 접근성을 향상 해야 합니다.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을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구도심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고령자 또는 중장년 1인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 안내 제도가 필요합니다. 명단에 의한 의무 방문, 주택 입주 및 활용에 관한 사례 홍보의 방법으로
  - 건강과 돌봄 수준에 대한 상황을 진단받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고 선정 기준이나 보증금 마련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주거 시설이 필요합니다.
  - 중간의집 나은하우스를 이용하면서 계약기간이 초과해 이사 하는 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들 중 1/2 정도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얻어서 구에서 준비한 케어안심주택으로 연계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시 여관이나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중간의집 입주초기에는 노인돌봄 대상의 입주가 많았지만 이들이 거주를 이전한 후에는 장애인, 정신, 위기가정 등의 임시거주 형태가 더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임시거주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나 취업기술을 획득한 후 다른 대안을 지자체 전담공무원 또는 담당 코디와 준비했던 서구의 경험을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 인구 28만명인 광주 서구의 경험으로 볼 때 약 1만명당 1호

이상의 중간의집이 필요해 보입니다.

□ 경상남도 산청군

-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좁으며, 그에 비해 관리비 및 가스비가 과다 하다고 생각하여 입주를 번복하는 사례 있음.

■ 주거취약계층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추가로 필요 하다고 느끼는 지원(예: 인력, 교육, 제도, 자원, 부처·기관 간 협업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주거에 대한 교육 지원

-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 제공, 예를 들면 주거비 관련, 주택수리, 계약서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경제적 지원

-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대료 지원,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지원, 금융지원

□ 전라남도 영암군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유관기관 간 협업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주기적인 협의시간이 필요함.

-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LH공사 등 다양한 제도 홍보 필요

#### 84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지자체 주거 지원 관련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 공사에서 다양한 홍보물 제작·배포가 필요함.
- 건설 관련 부서에서는 노숙인 지원 확대를 위해 복지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함.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임대주택 신청자 선정 및 계약 체결사항 지자체 공유 필요
-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주거복지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

#### □ 충청북도 청주시

- 교육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에서도 어느 정도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알고 있지만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연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 교육이 우선되고 부처·기관 간의 정기적인 회의, 사례관리 등의 협업을 통해 민관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 우리 군은 대상자의 주요 욕구인 먹고사는 문제, 즉 의식주 문제를 중점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 때문에 주거 역시 중요한 생존 기반으로 간주되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임대주택 접근성 및 지역 분산의 필요성
  - 현재 관내 9개 읍·면 중 LH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남악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인구 감소 및 수요 불확실성의 이유로 공급 확대가 어려운 현실은 있으나, 특정 지역 편중으로 인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분산과 교통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주거지원 전담 인력 배치의 필요성
  - 군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은 주거 신축, 개보수, 환경 개선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처럼 정보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사업 안내부터 이해, 서류 준비,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전담 인력의 직접적인 도움이 절실히. 현재는 이웃, 자원봉사자, 생활지원사 등 지역 주민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으나, 주거복지 전담 인력이 배치 될 경우 대상자에게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거환경 유지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
  -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동의 불편, 필요치 않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성격, 고물을 주워 모으고 위생 관념의 차이로 인해 다시 불결한 상태로 돌아가는 사례 가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모니터링, 청소 및 정리정돈, 생활습관 및 위생개선 교육 등 사후관리 지원이 필요함.

□ 경상남도 의령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추가

- 주민등록말소자, 주소불일치자(주소와 실제 거주 상이자)의 보호를 위해 임시 공공시설 지역별 마련 필요
  - 폐펜션, 모텔, 폐건물 등 활용 주거에 불안정을 안고사는 주거 복지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자유롭게 입실과 퇴실을 할 수 있는 거처 필요
- 자체 희망복지지원단(팀) 복합문제 사례관리 상담시 주거 문제 상담 강화
  - 복합문제 사례관리시 필수적으로 주거문제도 동반
  - 공적부조 지원제도와 다양한 경로 안내 및 정서적 문제, 가족 관계
- 의령군 주거급여 담당 업무 추진시 어려운 점
  - 인력 : 주거급여 출장시 2인 동행 의무화, 비정상거처(여관, 컨테이너 등)의 대부분이 으슥한 곳에 위치하여 출장시 위험 초래에 대한 사전 안전강화 목적
  - 제도 : 비정상거처 주택유형 “사용대차” 항목 확대, 쪽방, 움막, 컨테이너 등은 환경은 열악하나 독립적인 정서적 생활이 가능. 사용대차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심리적 불편함이 따른다. 그러므로 비정상거처 유형에 사용대차 포함 필요
  - 부처 기관 간 협업 : 토지주택공사 개인정보공개 관련
  - 예) 최근 주거상향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00 주공 아파트 예비 입주자 명단을 토지주택공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개인정보 보호로 자료 공개 거부

#### □ 증평삼보사회복지관

- 임대아파트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서를 통해 모집 기간 외에도 예외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면, 긴급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자들은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신청, 긴급주거지원, 주거급여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공되거나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문의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몰라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발견하거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제도는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나 부서 간 조율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지연되거나, 주민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 교육 및 안내자료 제공이 필요하며 문자, 리플렛, 지역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상자에 맞춘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복지관과 같은 지역 기반 기관들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성동구

○ 통합 컨트롤 타워 부서 조직으로 대상자들의 불편 해소

- 공공임대주택 담당부서 조직

- 경기도 등의 타 광역시도의 경우, 주택정책과 또는 건축과에 임대주택팀이 조직되어 산재되어 있는 임대주택 담당부서 담당자를 집중시켜 업무를 진행
- 임대주택 담당 팀을 신설한다면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과 또는 공공주택과에서 발송하는 공공 임대주택 공문의 이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서울시 한정).

- LH·SH 공사 및 시군구 간 선정 및 계약 체계 개선

-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사업 업무 컨트롤 타워를 서울시 주택정책과 등에서 수립하여, 사업 관련 내용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중심 역할을 진행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됨.

○ 주거 관련 인력 부족 및 홍보·교육

- 주거에 대한 지식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
  - 주민, 사회복지기관종사자,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
  - 주거취약으로 임대주택이 선정되더라도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우며 시일이 지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부동산협회와의 협업이 필요함.
  - 주거센터, 민간사회복지사, 공무원이 협업하여 대상자의 주거지를 구하는 적극행정 필요

○ 제도의 개선

- 재계약 관련

- 임대 주택 거주 중 계약자 본인의 장기입원(의식불명) 또는 요양시설 등에 입소했을 경우 동거 가구원의 명의로 재계약 명의 변경이 가능토록 조정
- 가구 특성을 진단하여 당사자가 주거복지에 있어 규정으로 인한 소외 또는 퇴거가 없도록 (재)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의 용이성을 추구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사례관리에 따른 교육과 우수사례의 공유가 필요함.

- 주거복지센터 내 노숙인 및 저장강박의 주거전담팀 설치 필요

□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 정보제공

- 민간기관 실무자를 위한 주거지원제도 안내, 정보공유가 필요함.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교육, 정보제공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음. 구청, 동주민센터 직원도 관련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문의를 해도답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어려움.

○ 전세임대주택 임대인 지원

- 취약계층의 전세임대주택 입주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함.

□ 의창노인종합복지관

-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적용까지 연결되지 않는 “실행의 간극”
  - 현장에서 독거어르신의 상담 또는 사례관리 지원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제도는 있으나 연결까지 잘 실행되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 특히 긴박한 상황(퇴거 위기 등)에 있는 분일수록 제도 접근성은 낮고 절차는 복잡합니다.
  - 한글조차 모르거나,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되거나, 온라인신청이나 복잡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현장 대응인력이 부족해 즉시 개입하거나 동행해줄 사람이 없어 놓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보호자가 없음).
  - 또한 LH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할 경우, 서로 다른 정보를 주거나, 연계되는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아 해당 건이 장기화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LH, 지자체, 민간단체 핫라인 개설 및 공동사례회의 협력 필요
  - 사례 발생시 신속히 해당 지자체와 연락하고 연계할 수 있는 통합창구 절실
  - 신속한 개입 체계와 행정적 유연성 필요 : 주거 위기는 복지 위기임.
  - 사례관리 종사자 대상 주거지원 교육 강화
    - 현장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전세임대, 긴급복지 등 다양한 제도를 현장 실무자가 놓치지 않도록

정책, 제도 변경 시 주기적인 사례중심 교육이 필요함

- 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안내 시스템 구축
  - 주거취약계층 대부분은 한글해독이 어렵거나 디지털에 문외한인 사람이 많음.
  - 대상자에 맞는 그림 중심의 안내자료, 음성자료 활용
  - 지자체 주거지원창구에 신청 안내도우미 배치

#### □ 경기도 오산시

- 주거취약계층만 전담해서 상담하고 지원 체계를 연결할 수 있는 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구청·동의 경우, 임대주택 신청·접수·선정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현재 예비 입주자로 선정 및 대기자가 몇 명인지의 명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행복e음시스템 탑재 필요)
- 주거복지센터에서도 저소득층 대상자가 어떤 임대주택을 신청 했고, 선정되었는지 알지 못해 동주민센터로 확인을 요청하는 문의 전화 많음.
- 공공임대주택의 연간 공급일정표 사전 제공 필요
  - 공사에서 자체 모집하는 임대주택도 있어 민원 안내에 어려움.

#### □ 세종시 부강면

-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 특히 마이홈센터를

통한 주기적인 홍보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제도 인지도가 향상되고,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 ○ 인력 충원의 필요성

- 주거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우리 복지관을 비롯한 일부 복지관의 경우 기본 인력조차 충원되어 있지 않아 주거취약계층을 담당할 별도의 담당을 편성할 여력이 없음.
  - 우리 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 정원이 기존 12명 이상 이어야 하나 현재 7명만 근무하고 있어 기존 업무도 가중되고 있음.

##### ○ 홍보 강화 필요

-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함.
  -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는 사례가 빈번하며 주민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임.

##### ○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 지자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사례관리자가 직접 대상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지자체 담당과의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여 긴급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나 교육은 인터넷 자료 등을 검색하여 도움받고 있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됨. 오히려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등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 적이고 긴급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자원에 대한 공유 및 지원과 관련된 제도, 그리고 기관 간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봄.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지자체 주거상담소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지자체 주거상담소가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대 및 직원 역량강화 등 관심이 필요함.

- 지자체별 임시거소 확대 등 고민 필요

- 갑작스런 주거위기에 대비하여 지자체별 임시거소를 공공주택 사업자(공사)측에서 고민해 주기를 희망함.

- 마포구의 경우 SH공사성산임대아파트에 ‘바로도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임시거소 성격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음. 아울러 마포구 자체적으로 임시거소를 마련하여 운영 중임. 이처럼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임시거소 마련 후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등으로 갈아 탈 수 있도록 개선을 희망함.

- 집수리사업 관련 고민사항

- 한국에너지재단의 집수리, 서울시의 희망의 집수리사업, 장애인

## 94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주거편의지원 집수리사업 등 너무나 다양한 집수리사업들이 각기 다른 색깔로 추진되고 있음. 나름 부처간, 기관간, 부서간 통일되고 정리된 집수리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함.

- 대부분의 집수리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인 LH공사 및 SH공사 소유의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태임. 집수리 항목 중 벽결이형 에어컨, 제습기 등 소모성 제품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기를 희망함.

### □ 갈매사회복지관

- 복지관 등 복지기관에서 질의 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 강화
- 주거복지사 배치 및 협력 구조 체계화
- 정보의 창구 명확화
- 주민 대상 주거 교육 및 상시적 모니터링 필요

### □ 전라북도 군산시

- 주거취약계층 통합지원 업무매뉴얼 필요(지자체-LH-민간기관)
  - 주거지원 정보 및 관계기관이 여러 곳이라 주거지원 욕구에 따라 어떻게 연계하고 지원을 해야하는 구체적인 매뉴얼 필요
- LH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과 협업 필요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옴막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 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통합사례관리 등 협업이 필요함(이사비 지원, 가구 등 사례관리비 지원).

□ 부평구청 부개1동

- 대상자가 노령 혹은 장애인(지적 등)이면 LH에서 오는 우편물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계약, 집 구하기 등의 어려움이 있음. 행정업무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1:1 맞춤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광주광역시 서구

- 주거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 자치단체장이나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고령자 전담주택 추가 및 건립, 기존주택의 고령자주택으로 개조, 아동부터 시작된 최저주거기준 적용과 유도주거기준의 적용 선언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와 인센티브를 강화해주세요.
  - 구청 전담자는 종합적인 주거상담을 할 정보나 시간이 부족 합니다. 2년 미만의 짧은 근무 기간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전문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 동 주민센터는 주거욕구를 발견/연계할 수 있는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 공기관과 지자체로 분리된 주거전담부서의 통합연계방식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의 투자와 서비스를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순환근무제도 하에서는 극복 할 수 없어보입니다. 공공기관 채용후 지자체 근무등의 협업 방안을 제안합니다.
  - 제도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취약한 삶의 질을 개선이라는 목표를 두고 건강, 주거, 돌봄 등에서

주거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요인이라는 점이 강조되면 동시에  
근무하는 복지 또는 간호직렬에서 민감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통합된 업무매뉴얼도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개별사례를 통한  
경험 공유도 필요합니다.

□ 경상남도 산청군

○ 긴급보수의 경우 연초 시작이 늦음. 1월부터 긴급보수 시행 필요

- 지자체와 LH간 계획수립, 계약체결, 보조금신청(e호조) 등으로 3월이 되어야 긴급보수를 진행함. 겨울철 동파, 누수 등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3월경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되어 주거수급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매우 열악함.

○ 긴급보수 개념 외의 사용대차, 자가인 경우 주거 개보수비 예산 책정이 필요함.

- 자가인 경우, 경보수 기간이 되어야 도배, 장판 등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되고 있고, 사용대차의 경우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주거 소유자가 형제자매, 혹은 부모자녀간인 경우이지만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므로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실거주자에 대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거 개보수비 지원이 필요함.

- 즉, 자가인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기간이 되어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되며, 사용대차는 수선유지급여가 없어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수선유지급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주거 수선유지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주거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별 개보수비가 꼭 필요함(그동안 갑작스러운 주거 개보수대상자인 경우 공동

모금회를 활용하여 연계하고 있지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국비 매칭이 있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함.

### 3. 노숙인 지원에 대한 의견 및 경험

■ 귀하가 근무하시는 지역에서 노숙인 또는 사실상 거처 없이 생활하는 주민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몇 분 정도이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연령, 성별, 주로 생활하는 곳) 주변 주민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도와주려는 데 방법을 모름, 공원 이용하기 어렵게 됨 등)

#### □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최근 기관 근처에서 노숙인을 많이 보지는 않았으나, 일전에 노숙인을 마주한 적은 있음. 위생에 있어 불결했으며, 결식의 위험이 있기에 매우 마른 모습을 지니고 있었음. 성별은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연령은 60대였음. 처음 마주했던 곳은 역 근처였음.

#### ○ 노숙인을 만나 주변 주민의 인식

-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했으며, 결식의 위험이 가장 커보여서 식사를 챙겨주는 것에 대한 욕구를 먼저 이야기해 왔음.

#### □ 전라남도 영암군

○ 영암군 노숙인은 주로 터미널부근에 상주하는 경향이 있고 연령은 50대, 성별은 대부분 남성임.

○ 주민들은 도와주려는 태도보다는 군청, 경찰서로 신고하거나 터미

널 직원 호출함.

- 주민들 대부분 노숙인들을 피해 터미널을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노숙인이 거의 없음.

□ 충청북도 청주시

- 노숙인을 마주한 경험은 없지만 다른 주무관님들의 경험을 빌려 말하자면 노숙인분들은 정착하지 않고, 대부분 떠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설에 가거나 주거 지원을 받거나, 기타 다른 도움을 원치 않거나 원한다고 말로는 해도 라포 형성하기가 어렵고, 형성을 한다고 해도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 버리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 무안군은 남악 지역을 제외하면 버스터미널, 기차역, 시내 중심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대도시처럼 거리 노숙인이 눈에 띄지 않음.

- 노숙인 거주 형태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 방문 시 비닐하우스, 폐가, 빈집 등 무허가 거처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확인됨. 이들은 본인이 이를 밝히지 않는 한 원래 거주자인 것처럼 생활하며, 건물 주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더라도 주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쫓아내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함. 또한, 마을 외각에 판잣집을 지어 홀로 자급자족

하는 경우도 있음.

- 일시적으로 노숙인이 마을 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 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만, 해결 방안이 없을 경우 주민들은 마을 회관의 방문을 꺼리고 상황에 익숙해지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읍내 빈집에서 가출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가족 또는 주민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가 발생함.
- 노숙인에 대한 인식
- 노숙인이 특별히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한, 지역주민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문제 삼지 않음.

#### □ 경상남도 의령군

##### ○ 비정상거처 주민을 마주하는 경우 특징(경남 의령군 주거급여담당)

- 연령은 50-60대 성별은 남성 80% 여성 20% 1년에 10명 정도 도움 요청
- 주로 쪽방, 컨테이너에서 생활, 은둔생활, 주민들 관심 밖에 있음, 잘 알지 못하며 몇 년 몇 달이 지난 후에 발견되어 도움 요청

##### ○ 노숙인시설입소 현황

- 의령군 새삶의집(노숙인시설: 90명 정원, 현원 79명, 여유분 11명)
- 관내 기초수급자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는 대부분 입소됨,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자체 입소의뢰시 연간 5명 정도 입소

- 입소자 중 10명 이상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임.
- 생활시설 입소자들은 기초수급자이며 50대 이상, 1인 단독, 주거불안(여관, 반지하, 떠도는 사람 등), 자살시도자, 동절기 한파 위험자, 화재위험, 경증 정신적 문제자 등으로 일반인의 생활상과는 정신적, 행동적으로 차이점을 보임).

○ 귀향여비, 일시 숙박자(비정형거주자)

- 연간 20명 내외가 당직실 노크, 타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와 하룻밤 숙박을 원하는 경우(당직실에 노숙인담당 연락처 및 업무처리 방법 비치)
- 청년, 장애인, 주취자, 배회자, 정신이상자(추정) 등 다양함.
- 차비를 환불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가져가는 사람도 있음.
- 노숙인 시설, 노인 일시보호시설 등으로 안내하나 대다수가 거부함.
- 경찰지구대에서 순찰차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음.

□ 증평삼보사회복지관

- 지역에서도 사실상 거처 없이 생활하시는 주민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사무소를 통해 파악된 한 사례로 50대 남성 한 분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며 생활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의존 문제가 있었고, 근로 능력도 없어 식사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 연계 서비스를 통해 식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지 연계도 함께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시설로 인계된 사례입니다. 다른 사례로는 집을 화재로 잃은 한 어르신이 있었습

니다.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임시로 동네 경로당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복지관에서 지원했습니다. 이후 주거지 연계를 논의하던 중, 자녀가 살고 있는 타 지역으로 함께 가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일시적 혹은 구조적인 주거 불안정 상태에 놓인 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대는 대체로 중장년층 이상이며, 대부분 남성입니다. 주로 여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임시로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인식은 다소 복합적입니다. 대체로 도와주려는 의지는 있으나,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법을 몰라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역 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더 널리 공유되고, 지원체계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 □ 세종시 보람동

○ 세종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노숙인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조치원읍 지역의 기차역 인근에 주로 있음.

- 실제 노숙하는 분은 현재 2명 정도로 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몇 분들과 어울려 인근 공원에서 음주하며 지냄(주로 남성, 50대 이상).
- 과도한 음주 또는 조치원역 직원과의 마찰로 폭행사건 발생, 교정시설 입소한 경우가 있음.

#### □ 서울시 성동구

○ 거리 노숙인 현황 및 특징

- 거점 거리 노숙인(성동구)
  - 성동구의 경우, 거점 거리노숙인(4명) / 거리노숙인(연 10명)

이하)이 발견되고 있음.

- 성별로는 남성(90%)/여성(10%)이며, 주로 생활하는 곳은 다리 밑이나 공원, 상가 등에 있음(거점 거리노숙인).
- 거리노숙인의 경우 남성(100%)이며, 주로 이동을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생활하는 곳이 특정되지 않음.
- 노숙인들은 지원제도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높음.
- 다수 대상자가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하여 주거지원 제도의 이해가 어렵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원들을 적대시 하는 경우가 많음.
- 현 상황 유지에 대한 강한 욕구를 많이 보여서 주거지원에 어려움이 많음.

#### ○ 지역 주민들의 인식 현황

- 지역 주민(제보자 등) 인식

- 대부분(70%) 위생 및 불편함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나머지(30%) 주민들의 경우 노숙인 지원을 요청하는 유형으로 제보되고 있음.
- 불쌍하다, 도와주면 좋겠다, 무섭다, 위험하다, 비위생적이다, 쓰레기가 늘어난다 등의 인식이 있음.

####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던 기초수급자가 강제퇴거 이후 지하철 역사 내에서 노숙 생활함.

- 60대 초반 여자 노숙인으로 낮에는 고속터미널과 백화점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잠을 잡

- 망상증세로 새로운 거주지 지원을 거부하는 상태
- 자녀들과 가족관계 단절상태이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나 대상자의 거부로 수년째 노숙 중
- 주변 주민들은 노숙인의 강제 시설입소를 요청

□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주민이 복지관 로비에 온 적이 있음.

- 당사자로부터 풍기는 체취로 인한 민원이 있었고 본 기관의 휴지 등 비품을 챙겨간다는 제보도 있었음.
- 민원인에게 모든 주민이 이용 가능한 공간임을 안내하며 중재 하였으며 본 기관 내방 중 심박수 상승, 어지럼증 호소하여 이송함.
- 이송 후 따로 만나 면담할 기회는 없었음.

□ 의창노인종합복지관

○ 창원시 노숙인 또는 거처없이 생활하는 주민들이 주로 머무는 곳은 마산역,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지하도, 공원, 무료급식소, 공공 화장실 근처 등이며 보통 2~3명씩 모여 있음.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창원시 노숙인의 특징은 도심형 독거 노숙인으로 50~70대 고령층으로 남성이 많아 보임.
- 건강 및 정신상태
  - 인구통계학적 정신질환(우울, 조현병 등) 알코올, 도박 중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보임.

- 기초의료 미이용, 장기 미치료 상태로 신체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 많음
- 주변 주민 인식은 동정과 거부감이 혼재된 반응, 주변에 있으면 크게 관심을 보이진 않으나 혹시나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게 됨.

□ 경기도 오산시

- 직접적으로 대면한 경우는 없으며, 통합사례관리 담당자나 노숙인 및 행렬자 지원 및 관리 담당자를 통해 내용 접한 경우가 있음.
  - 보통 연령은 50대 후반부터 60대 초중반이 많으며, 남성이 대부분이고, 주로 생활하는 곳은 산속에 임시거처를 지어놓고 생활하거나 역주변에 배회하며 지냄.
  - 노숙인이나 사실상 거처 없이 생활하는 주민에 대한 주민의 의식은 주민 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듯함.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성북구) 노숙인 4명 관리 중(남성3, 여성1)
  - 대부분 대화 거부하며, 노숙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음.
  - 전철역 벤치 주변 등에서 노숙
  -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데다, 외형적으로 건강상태가 병원진료를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일반 주민들이 많이 관심 있게 바라보기는 하지만 선뜻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

□ 세종시 부강면

- 면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특성상 거처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거의 없지만, 컨테이너나 창고지 등 비적정 거처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어 주거 상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민들이 파악될 경우, 마을 이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회 등 관내 단체를 통해 지원 요청이 들어오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 노숙인 또는 사실상 거처 없이 생활하는 주민
  - 순천 지역에는 거리 노숙인보다는 모텔이나 달방 등을 이용하는 사실상 거처 없이 생활하는 주민들이 주로 발견되고 있음.
  - 연령은 주로 중장년층과 고령층이 많고 성별은 남성, 주로 생활하는 곳은 모텔, 달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노숙인을 보는 주변 주민의 인식

- 안타까워하며 도와주고 싶어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경찰을 통해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경우가 많음. 혹시 노숙인이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 불안해 하기도 함.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면, 노숙인 또는 거처가 없이 생활하는 주민들의 경우 저희 지역에서는 70대 이상의 남성분들로, 주로 폐가나 건물의 창고, 다중이용시설의 지하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 간혹 주민등록 등이 말소된 경우도 있었으며, 지적능력이 낮거나 우울 또는 무력감 등의 모습을 보이고, 주변의 지지체계나 이웃관계가 없어보이고 관련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음.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현재 근무지에는 노숙인 없음. 노숙인 발견 시, 구 또는 시에서 쉼터로 인계
  - 노숙인이 많은 행정동의 경우, 거의 중년 남성 노숙인으로, 역 주변에 많고, 빌라 필로티 아래 안보이는 곳에서 노숙하기도 함.
    -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 길바닥에 용변을 보거나 다 마신 술병을 화단에 던지는 등의 사유로 민원이 제기되며, 시청 민원 뿐만 아니라 경찰 신고로도 많이 들어옴.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상당수의 노숙인이 의사소통, 사례개입, 대화하기를 꺼려함.
  - 공원, 화장실 내부, 노점상이 있는 인도 주변, 대형마트 등 배회
    -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어떠한 종류의 지원연계가 어렵고, 지원 된다고 하여도 다시 노숙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 전라북도 군산시

- 노숙인 경험
  - 말투가 어눌한 50대 남성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한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해 행려자 귀향여비를 요청, 상담내역을 확인해

보니 전국을 돌아다니며 행려자 귀향여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분이었음.

- 주소지는 병원이었고 이 지역에 오게 된 이유는 과거에 살았던 곳이라 오게 되었다고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거주지를 정하면 지원 가능한 내용을 안내했지만 거부함.
- 지역 주민들은 처음에는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등 돋고자 하나 시간이 지나고 부정적으로 인식이 바뀜.

#### □ 광주광역시 서구

○ 광주서구는 광주의 중심지로 시외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 노숙인이 발생한다면 타지에서 고속버스를 통해 광주에 방문하는 사례입니다. 발생사례는 연 10여 건으로 행정과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 담당부서에서 정기적인 합동순찰을 시행하고 상담을 제공합니다.

○ 노숙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 노숙인이 있는 경우 기존 거주민들의 피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대부분 타지역에 있는 거주시설 또는 이용시설 수용을 의뢰합니다.
- 이경우 주간 또는 야간시간에 경찰에 의뢰되거나 당사자의 방문으로 발견됩니다. 북구나, 동구의 시설에 의뢰되지만 가끔 씩 귀향여비를 지원하여 타지역으로 이동조치합니다.

□ 경상남도 산청군

- 노숙인은 해당 없으며 귀향여비의 경우 연간 15여 건 됨.
  - 주로 상습적인 경우가 3~4건 있으며 대중교통비용 및 필요에 따라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음.

■ 노숙인 또는 유사한 주민에게 주거지원을 연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활용한 제도나 연계한 기관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노숙인 관련 시설이나 주거지원 기관 등과의 연계 여부 및 방식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서울시에서 노숙인 지원을 담당하는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에 연결하고자 했던 경험이 있음.
  - 브릿지 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곳이나,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곧바로 연결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음.
- 기관 근처의 여관이나 고시원에 긴급지원형태로 주거지를 마련 후 차후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신청함.
- 임대주택에 선정되기 전에는 복지기관에서 경로식당서비스 및 긴급복지지원서비스 지원을 통해 임시거주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 전라남도 영암군

- 주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해보지는 않았지만 군청 숙직 근무시 새벽에 타 지자체에서 온 방랑하는 노숙인을 많이 봄.
- 노숙인 인적조사 파악 후 복지과 예산 중에서 부랑인 숙소비 지원으로 방랑자를 위한 하루 숙박비를 숙직근무자가 결제를 해주고 실비로 지원받는 조례가 있음.
- 노숙인 인적사항 파악 후 시스템에 남겨놓고 방랑자 지자체에 연락을 해놓은 경험이 있음.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 자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이웃의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이에 사례관리를 통해 해당 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LH 임대아파트의 입주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 또한, 입주 후에도 후원물품과 반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화재로 자택이 전소되어 이웃집을 전전하던 대상자에게 주택신축 매칭그랜트지원사업을 통해 새 보금자리를 지원함.

□ 경상남도 의령군

- 주거취약계층 임대보증금 및 이사비 · 생필품 지원
  - LH연계 대상자에게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 비정상거주 중인 대상자 발굴후 LH에 주거상향 신청, 행복

### 아파트 우선 입주 진행

#### - 이사비 생필품 지원

- 대상자(1인)에게 40만원 지원, 이불, 가전제품 구입후 영수증 증빙 제출

#### ○ 대도시에 거주하다가 농어촌지역에 이주하여 주거문제 해결한 경우

#### - 대도시 1인 단독 남성 수급자(63세)가 월세비용이 부담되어 농촌으로 이사

- 2024년 보건복지부 재가의료급여 신규 사업활용, 수급자 장기입원환자의 과다 의료비를 자체, 재정절감과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여 정서적, 사회적 결핍보다는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제도, 00 병원 입원수급자 00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뢰 보증금 백만원에 월세 200천원 연계, 퇴원, 월세 200 천원은 수급자 주거급여비 총당(농어촌 187천원 지원), 요양 보호사 파견 주 3일 가사지원서비스, 재가의료사업비 중고 가전 지원, 부식류 지원

#### □ 증평삼보사회복지관

#### ○ 취약계층 주민에게 주거지원을 연계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읍 사무소 희망복지팀과 연계하여 실제 거주 가능한 주거지를 안내하고 입주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가 열악한 경우에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자원

봉사센터 집수리단을 통해 단열 시공,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단순히 거주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주거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세종시 보람동

##### ○ OO동에서 발견된 노숙인

- 1월 한겨울에 정자에 텐트치고 지내는 노숙인 발견, 노숙인 지원 업무 담당자와 사례관리사 등이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임시거처인 “안심하우스” 입소
- 3개월간 거주하며 수급자 신청, 보장결정 후 주거급여를 지원 받아 월세 거주로 이전

#### □ 서울시 성동구

##### ○ 노숙인 제보 현장 방문 및 지원

- 노숙인 제보를 통하여 현장 방문하고 있으며(90% 이상), 현장 방문하여 노숙인에 대한 복지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주로 노숙인시설 입소(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권유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 입원 또는 동 주민센터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대부분 노숙인(90% 이상) 시설 입소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거부 하며, 지속적인 설득(10%) 또는 응급한 상황(90% 이상, 노숙인 건강상 문제 등)으로 본인의 동의하에 시설 입소하는 경우임.

- 설득이 불가능한 거점 노숙인의 경우, 성동구 자체 노숙인 순찰반(1일 1회 순찰 / 자활근로자 활용)을 통하여 시설 입소 및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음.

○ 노숙인 관련 시설 연계

-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정신건강팀(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연계, 자문
- 비전트레이닝 입소 후 임대주택을 지원한 경우가 있음.
- 구청 지원 임시 숙소에 머문 후 고시원으로 주거지 이전 후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연계

○ 노숙인 주거 지원 사례1: 자산보유자, 정신과적 문제로 실패한 노숙인

- 일반가구/ 2인(본인, 모) 통합사례관리대상자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신고로 주민들이 보호조치 요청
  - 약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였으나 정신과적 문제로 인하여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경매 진행됨.
  - 당사자는 집을 두고도 길거리를 전전하며 무전취식, 절도 등의 문제행동을 일삼음. 오랜기간 공과금 미납으로 주택 내 낭방 공급 중단
  - 보유한 자산으로 인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공/민간 지원을 전무
  - 경매 낙찰 후 퇴거하지 않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낙찰자에게 무상임차금으로 지급하였고 배당금은 반액으로 줄어 들.
  - 당사자는 모녀로 구성되었고 모녀는 정신과적 증상이 동일

하였고 노인학대 등 피해 정황이 확인되어 안전상 주거분리가 시급한 상황

- 임대주택 등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당금에 대한 설명 조차 거부한 모녀는 노숙 중 한 교회에 무단침입하여 112 신고, 대화 불가능으로 조사가 되지 않아 행정입원 조치됨.
- 치료 후 호전을 보인 자녀가 배당금의 상황을 인지하였고 주택을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정신과적 문제를 보유한 당사자가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존재
- 친인척을 설득하여 가족지지체계로서 지원을 요청하여 문제 해결함.

#### ○ 노숙인 주거 지원 사례2: 임대주택을 지원받았으나 하차한 노숙인

- 저소득 1인가구(중장년)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 반지하 임대주택을 지원받았으나 수혜로 인하여 평소 당사자가 갖고 있던 정신과적 문제가 더욱 증폭되었고,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당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내 생활 독려하였으나 끝내 노숙을 택함.
  - 설득을 통해 고시원으로 주거지는 이전, 반지하 주거지의 침수 피해는 개선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재발될 것이라는 확고한 본인의 생각 속에 임대주택의 이전 방법 없이 이중지출을 감내하며 주택을 유지해오다 정신과적 증상의 호전으로 다시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현재는 SH주택공사의 지원주택 입주에 성공함.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공원 노숙인→고시원 입소 및 기초수급자 신청

- 대상자 : 1인 중장년(남), 미혼, 부모사망
  - 지원내용: 고시원 입실료 지원 및 밀반찬 연계
  - 지원결과: 오랜 노숙생활로 고시원의 공동생활 방식에 적응이 어렵고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강한 거부로 다시 노숙인으로 돌아감.

□ 의창노인종합복지관

○ 최근 창원시 마산역 인근 공공화장실 근처에서 생활하던 60대 남성이 지역주민 제보로 발굴되었고, 해당지역 종합복지관 사례 관리팀이 개입하여 연계한 사례

- 연계방식 및 지원내용
  - ❶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긴급복지(주거지원) 제도 안내
  - ❷ 신분증이 없어 임시 확인서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병행
  - ❸ LH 매입임대주택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격조건 확인
  - ❹ 대기기간이 길어 민들레쉼터(마산회원구 석전동)와 임시 연계조치
  - ❺ 창원시 사회복지과와 지속적으로 연락, 정식 입주 준비
  - ❻ 연계복지관의 상담, 건강체크 등 지원
  - 이 과정에서 지역복지기관, 지자체와의 비공식 협업 네트워크가 아주 유용하게 작용하였으며, 공식제도 외에도 민간

급식소(한마음 무료급식소)와 병행하여 식사 및 생활안정을 유도한 점도 효과적이었음.

- 단지, 시설입소를 꺼려하는 대상자 설득, 긴급복지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의 어려움, 불충분한 서류 준비 등 행정적 미비 점의 문제로 시간이 다소 걸린점이 한계로 느껴짐.

#### ○ 민간 후원시설 또는 단기 쉼터 연계

- 지역 내 독거노인 쉼터 또는 노숙인 보호시설 입소 가능성
- 연계기관: 창원시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창원시립복지원, 민들레 쉼터, 지역 복지관 사례관리팀 등
- 상담경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종합사회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에 문의

#### □ 경기도 오산시

##### ○ 퇴거위기에 처한 무허가 건물에 거주 중인 주민을 LH 전세임대 긴급주거지원으로 연계한 경험 있음.

- 2인 노인부부 전세임대 전용 50m<sup>2</sup> 초과 신청
- 단독세대주는 매입임대 일반 1형(방1개) 또는 전세임대 전용 50m<sup>2</sup> 이하만 신청 가능함.
- 2023년 기준 총 보증금 13,000만원(LH지원금 + 입주자 본인부담금 포함)
- LH지원금 대출한도 95%: 12,350만원 / 대출한도 98%: 12,740만원
- 입주자 본인부담금: LH지원금액의 5% 650만원 / LH지원 금액의 2% 260만원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일반 주택가 빌라 주차장에서 노숙생활 17년 생활자 병원·시설  
연계

- 동절기 한파 시 노숙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져 민관이 협력하여  
안부확인 등 실시
- 정신건강복지센터 월 1회 이상 방문 모니터링
- 이후, 대상자가 주택가 유리창 파손 등으로 112에 사건접수  
되어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입원 진행
- 정신과 치료병원에서 일정기간 입원한 후 요양시설로 전원

○ 동주민센터 앞에서 단기 노숙자, 정신병원 치료 및 입원 중

□ 세종시 부강면

○ 노숙인은 없었으나, 비정상 거주지인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주민  
을 대상으로 LH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한겨울이라 컨테이너에서의 거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택 이주 전까지의 임시거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주거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임시거처)에 약 3개월 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완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 직접적인 주거지원 경험

- 실제 사례로서 노숙인을 직접적인 주거지원을 연계한 사례는  
없음.

- 사례 발생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순천 디딤빌(지역 내 노숙인 시설)을 통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활용 가능한 제도 및 지원 방식

-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 연계 경험

- 30년 넘게 동네 야산 움막에 거주하면서, 늦은 밤에만 배회하면서 최소한의 식량을 얻어 생활하시던 노숙인을 등산객들이 발견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로, 거주지 마련뿐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가재도구 마련 및 지속적인 생활을 위한 지역주민 연계 등이 필요했던 사례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복지관, 주민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개입하였음. 또한 주민등록이 아예 되어 있지 않기에 법원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였음.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현재는 노숙인 또는 유사 주민에게 주거지원한 경험이 없으나

- 보통 시 민원을 통해 노숙인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구 또는 시청 노숙인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노숙인 쉼터에 인계하거나 병원입원을 진행함.
- 주거복지센터에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택이 있으나 자활 가능성이 없고 근로능력이 불확실한 노숙인은 사용이 어려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퇴거 위기 주민 또는 침질방 거주 주민에 대하여 임시거소 입주 및 지원 후 전세임대주택으로 연계 지원 사례 10건 정도 있음.

- 일반 가구(비수급자) 중 월세 납부 여력이 없고 채무를 상환 하지 못해 주거지가 신용보증으로 넘어가면서 퇴거 위기인 주민 대상으로 무상임차 가능한 SH공사 임시거소(바로도움주택)를 신청하여 입주함(신청 경로 구청 전담부서).

○ 노숙인 시설→동 주민센터로 의뢰

- 노숙인 시설(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종합지원 센터)에서 동 주민센터에 지원 의뢰
  - 노숙인 시설에서 상담 후 관내 고시원으로 입실료 지원하여 거쳐 마련
  - 동 주민센터에 단기 노숙(최근 6개월) 사유로 긴급생계비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 신청 의뢰
  - 고시원 3개월 거주 이후 주거취약계층이 임대주택(전세임대·매입임대)을 희망할 경우 신청하도록 안내

□ 전라북도 군산시

○ 노숙인생활시설

- 지역에 노숙인생활시설(신애원)이 있어서 연계하고자 하나 단체생활 등을 이유로 입소를 거부하여 연계의 어려움이 있음.
- 노숙인생활시설에서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 금융 교육, 인문교육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 등의 금융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활유도 필요함.

- (예시)원주시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주요사업
- 노숙인생활시설 연계 후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이어질 필요성 있음.

□ 부평구청 부개1동

- 은혜의집: 노숙인 쉼터(일반적인 노숙인)
- 인천내일을여는집: 일을 하는데 거주지가 없는 사람(밤에 잠만 자고 낮엔 개인적으로 일용직 등 근로를 함)
- 긴급전세임대지원: 주거지가 있지만 너무 노후하거나 취약한 경우 전세임대 연계

□ 광주광역시 서구

- 중간의 집 나은 하우스에서 노숙위험에 처한 장애인을 수용했습니다.
  -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광주서구에 월세를 얻게 되었지만 입주전 집주인의 거부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한 정신장애인이 2024년 9월부터 입주하여 거주합니다.
  - 이사당일 잔금으로 남아있는 통장이 압류되어 노숙할 상황에 놓인 청각장애인이 2024년 11월에 입주하여 1년 예정으로 거주합니다.
- 노숙위험이 있는 사람이 발견된 경우 수용 또는 이용시설의 의견이 노숙인의 의견과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시설운영자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거주시설의 규모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당직근무자가 협박 또는

설득해서 연계합니다.

- 이 과정의 어려움은 노숙우려자의 설득도 포함됩니다. 대부분 당직근무 시간 내에 종료를 하기 때문에 이동까지 시간과 주거 공간에 대한 이해와 설득, 위협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을 호소합니다.

▣ 노숙인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마련 되었으면 하는 제도나 지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안정적 주거지 지원 외 정서적, 신체적 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자활훈련 및 취업지원 관련한 프로그램 지원

□ 전라남도 영암군

- 노숙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지원하지만, 주거공간 지원만 된다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 수급비를 받고 노숙인 생활만 한다면 술을 사먹고 계속해서 노숙 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에 자활근무 안내, 지자체 복지 일자리 제공 등 탈수급자가 될 수 있게 안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 후 모니터링이 꾸준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충청북도 청주시

- 경험하진 못하였지만 노숙인 대부분 도움을 꺼려하거나 정착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의식주는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정서적 지원도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숙인은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사업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주소지와 관련 없이 정서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 노숙인 문제는 실업, 가정폭력 및 해체, 경제적 빈곤, 알코올 중독, 자연재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함.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는 노숙인의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한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이 센터는 주거, 의료, 경제, 문화생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노숙인의 자립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이러한 시설의 존재는 한국이 노숙인의 문제의 발생 경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보여짐.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인 시설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전라남도는 노숙인 지원 시설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시설 확충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노숙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식주, 의료, 고용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현장에서 접하는 노숙인 중에는 가족 및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이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까지 없어 노숙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노숙인’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개념적 경계가 모호해지며, 이들에게는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됨. 그러나 자원의 한계로 인해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화된 보호시설로의 연계를 복지의 발전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이러한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앞으로 고령으로 인한 노숙인과 주거취약계층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논의의 필요성을 느낌.

## □ 경상남도 의령군

### ○ 인테리어 제공

- 쪽방, 컨테이너, 조립식 판넬, 농막 등에 거주하는 대상자 중에는 간혹 임대아파트로 이주하는 것을 꺼려하심, 연로하셔서 아파트 생활에 익숙치 않고 컨테이너 주변환경의 고요함을 고집. 임대아파트 이주보다는 소규모 개보수를 원함. 인테리어 제공 간이 화장실 설치, 식수공급 등 생활편의시설 제공이 안정감, 정서적 측면에서 필요

- 이주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 제공

### ○ 빈 공공시설물 활용 주거 사각지대 일시, 쉼터, 6개월 단기거주 공간 마련 필요

- 법규 제도권의 주거복지 및 노숙인지원은 잘되어 있음. 제도권 외 주거난민 등 대책 필요

- 외국인 노동자 등 :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기숙형 거처 마련 필요
- 비정형거주자 : 거부감과 사회적 고립정도가 있는 비정형거주자 접근가능한 일시쉼터를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  
- 정신질환자 등 거리 배회자 관리 대책 필요
- 경증 정신질환자,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이상자 배회자가 종종 발견됨.
- 정신보건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 예) 청소년 상담실 학교 밖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같이 1:1 밀착 관리가 필요

#### □ 증평삼보사회복지관

○ 공공임대주택이나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안정적이지 않은 장소(여관 등)에서 거주하는 이들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주거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대상자가 복지제도를 신청하거나 서비스를 연계 받기 전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이나 공공임대주택 내 미활용 공실을 활용하여 노숙인 또는 사실상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 □ 세종시 보람동

○ 노숙인의 인식개선 또는 자립 의지를 키워주기 위한 제도 강화

- 노숙인이 스스로 주거지원 요청을 하기보다 주변의 신고 또는 발견으로 노숙인을 설득하는 과정이 더 많음.
- 간신히 설득하여 시설입소 또는 주거지원을 연계해도, 수급자 보장결정만 받고 사라지거나 지원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음.
- ‘시설 생활이 답답하다’, “주거 생활에 돈이 들어 싫다” 등의 이유를 해결할 방안과 노숙인 스스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임.

#### □ 서울시 성동구

##### ○ 노숙인 지원 제도 보완

- 노숙인 시설 입소 지원 자원의 부재 및 즉각적 대응 체계 부족
  - 서울시의 경우, 노숙인 동의가 있는 경우 노숙인 종합지원 센터(서울역, 영등포역, 서대문 등)로 자치구 담당자가 이동 할 수 있도록 연계(종합지원센터 측에서 상담, 검진, 적합 시설 연계)하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함.
  - 성동구의 경우, 어렵사리 노숙인을 설득하여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로 이동 연계하여도, 종합지원센터 측에서의 상담, 검진, 적합 시설 연계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즉각적으로 진행 될 수 없어, 1~3일 종합지원센터 내 또는 인근에서 노숙인들이 생활하다 원래 장소로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 권역별로 지원하고 있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인력 및 장소의 협소함으로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나,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종합지원센터로 연계하여

도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음.

- 또한, 서울시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1년 이내로 지속적으로 잊은 인사이동이 있어 업무 단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 인권 문제로 인한 강제성 부재

-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권 문제로 인하여 노숙인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시설 입소 또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진행될 수 없음.
- 이에 부정적인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자치구 담당자들이 현장 방문 후 상담을 진행하나,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전무
- 오롯이 자치구 담당자가 부정적인 민원을 받아가면서 진행 해야하는 업무 체계로 볼 수 있음.
- 추가로, 정신질환자의 경우 자타위험이 있는 경우, 보건소와 경찰서의 판단하에 병원 등으로 행정입원, 강제입원 등이 가능 하나 자치구 노숙인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임.

### ○ 노숙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제도 제언

- 노숙인 주치의 제도,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거나 정신 질환으로 병원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으로 진료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
- 후견인 제도의 확장/활용
  - 본인 동의를 구할 수 없는 후견인 제도는 사실상 실용 가치가 없는 제도

-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식이 없는 당사자가 후견인 제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경우가 없음.
-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할 자원이 전무한 상태로 친인척의 참여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정신과치료와 후견인 제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당사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어떠한 법적 장치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음.
  -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주거지가 마련된 이후에는 기본적인 옵션이 없는 상태로 그 이후에도 발생되는 비용이 높음. 중고 지원 또는 협약된 가전/가구제품 중고거래가 있었으면 함. 새 제품을 사주는 데는 지원부분의 한계가 발생함.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노숙인 지원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에 앞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자치구 노숙인 담당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담당은 주민 센터 요청에 의한 일시적 상담에 그치고 있어 노숙인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체계가 필요함.

□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 노숙인 주거지 등록 우선 제도 필요
  - 지자체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개입 기초 자격요건을 주민등록소재지로 두고 있다고 사료됨. 이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 개입할 필연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됨.

#### □ 의창노인종합복지관

##### ○ “이동형 긴급주거지원 차량” 또는 “노숙인 전용 임시 모듈하우스” 도입

- 거리 노숙인은 갈곳이 없이 방황하면서도 시설입소를 꺼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고집하며, 거리생활을 반복함.
-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단기거주가 가능한 조립식쉘터(모듈형 이동건물) 또는 이동형 긴급주거지원 차량을 공원, 역, 터미널 인근 유휴부지에 설치해 최소한의 “비상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예산이 마련되었으면 함.
- “노숙인 신분회복 통합지원 서비스” 제도 마련
- 노숙인들 중에는 대부분 신분증이 없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음.
- 주거지원, 기초수급, 긴급복지 등 행정제도 접근을 위해서는 신분확인이 필수인데 노숙인의 신분확인이 어려워 긴급상황 시 제도 접근이 불가능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신분 미소지자 전담 창구” 설치, 사회복지공무원+법률 훈닥터+복지관 사례관리자 협의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소재등록, 본인확인, 기초수급 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 마련 필요

##### ○ ‘노숙인 지원 통합 플랫폼’

- 노숙인 발굴 및 의뢰접수 ⇒ 신분 조회 ⇒ 시설연계 ⇒ 제도 지원 까지 한 플랫폼에 가능하도록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통합 플랫폼에서 사례관리자가 노숙인의 이름, 접수일자 입력만으로 긴급지원 신청여부, 쉼터 입소 가능 여부, 지원가능한

제도 여부 등이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  
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 문제는 단순한 주거지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개입, 치료, 주거, 자립까지 연결되는 연속적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해결과 함께 예방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 □ 경기도 오산시

-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나 홍보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중 긴급주거지원이 있음.
  - 지원 대상자: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방법 및 절차: 시군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하숙, 여관 등 임시거처로 확인되는 각종 주거형태)를 제공하며,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지원 기간: 원칙 1개월, 지원 연장 2개월 범위

#### □ 세종시 부강면

-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귀가여비나 숙박비를 요구하는 노숙인이나 부랑인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사례는 전국을 순회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여비를 반복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여비나 숙박비 지급 내역을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반복적 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과 효율적인 자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일시적인 귀가여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할 수 있는 단기 보호시설이나 쉼터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기본적인 숙식 제공뿐 아니라 기초 건강검진, 상담, 복지제도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노숙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주거복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 ○ 반려동물 지원

- 본 기관에서 사례관리 대상이 반려견에 대한 애착으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고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한 경험이 있어 관련 제도 정비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 ○ 노숙인 미용 업무

- 노숙인 미용 바우처(가칭)를 통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미용실 바우처, 목욕탕 바우처, 아름다운가게 의복 지원 등

##### ○ 일자리 제공

- 노숙인 일자리를 별도로 확립하여 안정적이고 단순한 일자리를 시작으로 사회참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공근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주거지 마련

- 긴급 임시주거지와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거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필요
  -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함.

○ 심리상담 지원

-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그에 적절한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함.

○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 직업훈련을 통한 기술 습득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노숙인의 알코올 중독 및 자활

- 단순 쉼터 연계 또는 병원 입원을 넘어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병원 입원이 즉시 진행될 수 있는 트랙 필요
- 자활 및 사회적응
  - 정상적인 거처 마련 및 노숙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응 훈련과 자활 연계 필요

□ 갈매사회복지관

○ 지역 특성에 맞춘 주거 지원 의무화

- 예: 노숙인복지법 제10조에는 ‘임시주거비 지원’ 조항이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규정이 아님.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8개소에서만 ‘임시주거비 지원’이 이뤄짐.
  - 더불어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생계, 일자리 등 지원 병행

□ 전라북도 군산시

○ 금융관리 교육사업

- 부채 또는 돈관리 교육 실시 : 연 2회 이상 지속적으로 교육
  - 노숙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손쉬운 일자리 창출

- 건물 청소, 등하굣길 교통지도, 무료 급식소 식사도우미 등
- 일을 통해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소득에 일정 부분은 주거 마련을 위해 적립
  - (예시) 한부모가족의 디딤씨앗 통장

○ 금융지원사업(소액대출사업)

- 용도: 긴급생계비, 임대보증금, 소규모 창업자금, 긴급 의료비 등

□ 부평구청 부개1동

○ 만성적으로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직업 상담 프로그램 필요

○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 입소 연계 필요

□ 광주광역시 서구

- 광역시도 규모에 약 50만 인구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제안합니다.
- 공공의 전문성과 집중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채용후 공공과 공동근무형식의 파근근무를 제안합니다. 공공은 주거 복지만 전담하는 팀을 설치한 후 수요자에 대한 주거이용 안내와 함께 기관간 연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4. 지역사회 통합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제언

■ 주거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해당 주민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귀 기관/군청/시청/구청에서 시행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후지원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심리적 안정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심리상담, 사회적 연결지원서비스를 통해 고립감 해소 및 관계망 연결 필요
- 금융, 경제, 재정 교육 연계
  - 재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위한 교육 필요
- 건강, 의료적 관리 연계
  -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비지원을 통해 질환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지원 및 자활 연계

- 직원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경제활동의 안정화 필요

□ 전라남도 영암군

○ 영암군에서는 달뜨는 집이라는 주거지원 형태가 있다. 수급자, 저소득 노인 등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있고, 자활근로 안내, 사례 관리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향후 지원에 관한 것은 수급비를 드리는 것뿐 실상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하고 있지 않다.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방법과 주거지원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정착지원 사업

- 독거 중장년 요리교실
  - 독립적인 일상생활 역량 강화 및 요리교실 참여가 관계형성에 도움.
- 주거상향 이주완료 가구 커튼설치 지원
  - 주거상향을 통해 이주한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커튼설치 못하는 경우
  - 지원하여 주거 안정감 향상 및 에너지효율(냉난방비 절감) 향상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 무안군은 주거지 접근성이 떨어져 군청 및 유관기관의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주민 교육과 재정 지원, 그리고 주민 참여형 마을 행사를 도입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주민 참여형 마을 행사(자연스러운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낙인 없는 공동체 결속을 강화함)
    - 우리 집 청소하는 날 : 주기적으로 가정 내 청소를 독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
    - 우리 집 안전 점검의 날 : 가정 내 전기, 수도, 가스, 노후된 주거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
    - 우리 동네 나눔 장터 :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교환하거나 나누며, 먹거리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 교류를 촉진하고 자원 재활용과 기한 내 소비를 장려함.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역사회 통합 주거지원 제언
- 거주시설 내 필요한 가전제품 지원
  -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빌라 등 다양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 시세의 50% 정도로 입주여건조성(보증금은 국가에서 저리 또는 무이자 장기 융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강화
    - 요양보호사의 재가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주거 취약 대상자 파악

- 주간보호 및 노인 요양원 입소 또한 주거문제 해결방법
-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한 추가위험 가구 생활속 밀착 파악 통계화

#### □ 증평삼보사회복지관

-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적인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는 주거 연계 이후에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착과 자립까지 고려한 사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대상자들이 갑작스런 이사로 새로운 공간에 입주하게 되지만,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없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거나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동반되어야 주거 정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인해 다시 퇴거 위기에 놓이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 제도, 긴급복지 연계, 임대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위기 개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외에도, 주거취약계층은 경제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상담, 자립을 위한 생활교육,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거지원은 단순히 주거 공간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사후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시 성동구

○ 통합적인 주거지원 사업 부서 필요

- 원스톱 주거 지원 시스템 구축 및 부서 조직

- 주거지원의 경우, 주거급여·임대주택지원·노숙인시설 입소·주택개보수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이 있으나, 해당 사업은 각 부서에 산재해 있어 원스톱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주거 관련 전담 부서가 신설되어 주거지원이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임대주택 유지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특수 상황에 따른 재계약 어려움 해소

- 계약자의 장기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동거하던 가구원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따라 공공후견인 또는 사회복지담당직원이 대리로 재계약이 연장 가능하도록 별도조항 신설 필요(사실상 치매가 있어 의사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어르신이 구급차를 동원해서까지 공사를 방문할 일이 없도록)

○ 저장강박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필요

- 시정명령 및 강제조치

- 일정 기간 또는 횟수의 시정 권고 조치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 적재된 물품이 명백히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주거급여 수급자의 정기 주택조사시 거주여부와 임대차 계약사항에 대한 확인 외에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주거상담을 통한 개별 주거지원계획 수립 필요

□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 주거생활 모니터링 및 서비스 지원
  - 주거지 이전 후 삶의 변화, 불편함, 안전 등 모니터링
  -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관계망 형성 도모
  -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조정
  - 나아가 전담인력을 편성하고 위의 항목들을 모니터링하면 주민의 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의창노인종합복지관

- “주거유지 사례관리” 제도화 필요
  - 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월 1회 이상 주거상황 확인
  -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실시(임대료 납부, 시설이용 법 등)
  -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 건강, 정서적인 문제 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치 연계 필요
- 동네 커뮤니티 기반의 “주거유지 동행자” 제도 도입
  - 노숙인 중 고령층의 남성이 많으며, 이들은 혼자 일상생활(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지역주민(자원봉사자, 노인일자리 등과 연계)과 1:1 또는 팀을 지정하여 방문 또는 전화 체크를 통해 이들이 일상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
- 이는 고독사예방, 재노숙 방지, 자립의지 강화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경기도 오산시

-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책정 후 LH전세임대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연계하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로 등록 후 월 임대료 및 복지자원 등을 연계하여 보호체계 구축

#### □ 세종시 부강면

- 주거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주거지원을 받은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나 지역자원을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민생활지원팀과 주거복지센터 간의 협업을 통해 입주 후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고, 고립이나 재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거주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거지의 청결 유지나 도배·장판 관리, 하자 보수 등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주거지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 비슷한 연령, 성별로 모아 자조모임 구성

- 연령대와 성별로 주거지원 주민을 분류하여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자립 관리
-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교류하며 특정 기관의 관리하에 일상생활(생활미션)을 비롯한 사회참여 활성화

○ 주거지원 후 사례관리 및 방문 상담

-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정기 가정 방문 등으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 접근 역량 강화, 지원
- 생활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욕구와 문제를 조기 대응하도록 함.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변이웃과의 연계를 통한 지지기반 마련이 가장 중요할 듯 함.

○ 그리고 노숙인이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새로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가정생활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할 듯 함.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보증금 관련 관리

- 임대주택→임대주택, 민간전월세→임대주택으로 전환될 때, 민원인의 대다수가 보증금을 어떻게든 마련하거나, 미리 마련

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종종 민간전월세에서 월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을 모두 삭감당하거나, 현재 재정상황으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세임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합판정을 받고 난 후에도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제도가 몇몇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긴 하나, 대출 시행 전에 이미 입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은 결국 사적으로 채무를 지는 경우가 종종있음.

####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전세임대 지원 시 주택 물색 정보제공(연계 등)을 통해 입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 자치구 권역별 주거상담소를 만들어 임대주택 신청 및 접수, 선정 후 주택물색, 권리분석 후 계약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

#### □ 갈매사회복지관

- 주민이 스스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 촉진, 지원 병행
  - 단순히 물품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마을에서 스스로 돌보고 변화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장단기 만남을 통한 촉진
    - 교육, 일자리, 일상 돌봄, 관계망, 기후위기에 따른 전자제품 설치 지원 등

○ 냉난방 및 관리비 지원

□ 전라북도 군산시

○ 공공 및 민간의 협력 강화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주거지원 시스템 구축
  -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이 케어안심주택, 케어비앤비(단기입주형 재활주택)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체계 구축
  -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세제 혜택, 공과금 감면 등) 제공

○ 주거지원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주거지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주거지원 상담 및 연계 체계 구축

□ 부평구청 부개1동

○ 노인 및 장애인(지적장애인) 등의 임대주택 재계약이나 주거 이전에 대한 상황 발생시, 대상자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게 때문에 “집 구하기·이사·집 계약” 등에 대해 1:1 개인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

□ 광주광역시 서구

○ 주거 역시 접점과 조정이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 살아온 일상이지만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단축시키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내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자 중 월세부담자, 65세 이상자 중 공동주택 비거주자, 의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방문과 응호활동이 지역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 또한 이런 활동을 컨트롤하고 통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싱글포인트 상담센터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 발견의뢰 수준에서 주거, 건강, 돌봄을 통합추진하는 방식의 돌봄정보센터를 제안합니다.
- 다음으로, 장애인과 노인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과 생활이 변합니다. 의료적 필요도를 중심으로 병원과 같은 주거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 기존에 제공된 영구임대 아파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서구는 6년 동안 년간 200건 이상 낙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와 안전장치를 작업치료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제공했습니다.
  - 재가에서 의료서비스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 경험있는 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 노인의 1/10,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1/10에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주거에 대한 경험과 의료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매일 현장을 방문해서 돌봄서비스와 편의를 조정하는 매니저를 7명 관리

해야 합니다. 이들 매니저는 장애인의 경우 20:1, 노인의 경우 30:1의 돌봄대상자를 전담하면서 의료와 주거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 □ 경상남도 산청군

##### ○ LH임대주택 관리비 등 감면제도 필요

-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으나 관리비 및 가스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입주를 꺼려하고 있음(예: 7.8평 기준 예상관리비는 18만원+가스비임).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적어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음.
- 농어촌의 경우 대도시보다 공시지가가 낮으며 APT 등 부동산 비용도 낮음. 그러므로 대도시보다 농어촌의 LH임대주택은 면적이 좀 더 넓었으면 함.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서상 APT 거주를 갑갑해 하고 갖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 선호하지 않을 뿐더러 너무 좁아서 살기 힘들다고 함.
- 보증금이 없어서 입주하지 못하는 수급자도 있음. 수급자인 경우 보증금 지원을 고려해 봐야 함(예: 월세를 기준임대료 4급지 1인 191천원/ 2인 215천원까지 올리고 보증금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주거취약계층 또는 노숙인을 위한 주거지원을 추진할 때, 주변 주민들의 반응이나 민원이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재개발지역에 있던 기관으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곳의 불결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었던 경험이 있었음. 이때, 주거지 주변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여 쓰레기를 치우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 주변 주민들의 반응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사업 추진시 설명회 개최
  -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취지를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음.
- 주거취약계층을 이해할 수 있는 주민 교육 및 워크숍 진행
  -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 및 주민자치회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전반적인 교육 진행 필요
- 안전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
  - 주거취약계층 거주지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함. 정기적인 청소 및 주변환경 개선 등이 필요
- 지역사회와의 협력
  - 경찰, 학교, 지역복지관, 보건소 등이 함께 협력하여 주민들의 불안요소를 제거,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전라남도 영암군

○ 직접적으로 주거지원 관련 근무를 해보진 않았지만, 노숙인에 대한 숙박비 지원의 경우 주변에서 근거는 명확한지, 지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시스템에 상담과 지원내역(수박비, 버스비 등)을 입력은 하지만, 실상적으로 영암에 거주하시는 분은 없었고, 다양한 지자체를 돌면서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반복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해결 방법은 방문 노숙인의 소속 지자체 통보와 노숙인에 대한 전담 사례관리사를 두고 지원, 향후 모니터링으로 꾸준한 관리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 충청북도 청주시

- 노숙인을 지원할 때는 주민들은 안쓰러운 마음보다는 왜 세금으로 노숙인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먼저 노숙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숙인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 대상자로 인식을 변화하게 하며, 인식의 변화가 되면서 노숙인 주변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국가적 지원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 현재까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대상자보다 서비스 제공을 더 원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음.

#### □ 경상남도 의령군

- 주변 주민들의 반응 민원

- 주변 주민들(임대인)이 알게되거나 민원이 발생할까봐 출장

으로 현지를 조용히 방문하여 주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깊게 진행. 특히 임대인이 알게되는 것을 꺼려함(보증금과 방세문제 연결).

- 대상자 주변 주민들 특히 임대인이 알게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극히 꺼림. 조용히 주의해서 진행 당부(신청자의 뜻), 방세를 빼는 문제와 연결하여 눈치를 살핌.
  - 합당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거취약계층에 협조적인 여관이나 여인숙 등을 조사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모범숙박시설 등으로 지정

○ 주거(노숙인시설, 시설 요양원, 주간보호소) 시설 건립 추진시 주민 동향

- 노숙인시설 : 기존 사회복지법인에서 존치하는 곳이 있으므로 인식이 없음.
- 노인요양원 : 주간보호소 노인시설 등 지역내 건립시 부정적 인식에서 호의적으로 변해감.

□ 증평삼보사회복지관

○ 주거지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 고물을 주워 생활하시는 어르신으로, 수집한 물건을 집 안에 쌓아두는 일이 반복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집주인은 방을 내어주기를 꺼려했고, 결국 일반주택이 아닌 임대 아파트로 연계하여 주거지를 이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주기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는 여관에서 생활하던 알코올 의존이 심한 대상자였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이분의 음주로 인한 행동 문제를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주거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하여 알코올 중독 관련 상담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상황을 완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단순한 주거 연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사전적 조율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거 연계 전후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활동이나 간담회를 통해 편견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알코올 의존, 위생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전부터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전 개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거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와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구축 체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돋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 서울시 성동구

##### ○ 주거취약계층(노숙인 포함) 주거 지원 현황

###### - 노숙인 이동 조치 요구 민원

- 노숙인의 위생 및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노숙인 제보를 하는 민원의 경우 부정적인 민원이 다수이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및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 <사례> 중랑천 인근 거점 노숙인의 경우, 치수과·녹지과·

기초복지과·담당 동에서 모두 노숙인을 이동시킬 근거가 없어 민원을 해결 못하고 있음.

-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주거취약계층 대상자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고시원, 여관 사업자 등 임대인의 노숙인에 대한 인식 개선

- 노숙인들의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과 관리가 어렵다며 입주를 거부당함.
-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인 것은 분명하나 노숙으로 완전히 가기 전에 막을 수 있다는 중간의 집 역할을 하는 고시원, 여관 사업자의 지원이 필요
- 고시원, 여관 등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리플렛, 인센티브 필요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저장강박 의심가구 또는 노숙인에 대하여 주변 주민들은 대상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강제입원 또는 시설입소를 주민센터에 요청
- 주거취약계층 지원추진시 대상자와 이웃과의 갈등완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함.

□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 전세임대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의 입주를 거부하는 사례
-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겪어보지 않고 가지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필요

- 임대인에게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목적, 효과성, 필요성 등을 납득(주민간담회, 설명회 등)시키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절세 등 강화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임대인과 임차인의 우호적인 관계가 늘어 실질적인 임대인에게 피해가지 않게 생활하는 임차인에게 강화물(생필품 제공, 임차료 지원 등) 제공을 제안함.

#### □ 의창노인종합복지관

##### ○ 임대주택 주변 주민들의 우려

- 창원시 내 일부 지역에서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지역이미지 하락과 치안문제 등을 우려하며 반대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음.
- 창원시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임대주택의 목적과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임.

##### ○ 독거어르신 가구 집 개보수시 집주인 반대로 인한 주거지원 불가능

- 민간후원을 통해 독거어르신 세대 개보수 시 (계단 안전봉 설치) 집주인이 집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안전봉 설치를 반대함.
- 복지관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가 집주인에게 독거어르신이 이동시 계단으로 인해 불편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안전봉 설치가 집 훼손에 영향이 없음을 설득하고 어르신 퇴거시 안전봉을 제거해줄 것을 약속하고 안전봉을 설치하게 됨.

□ 경기도 오산시

- 주거취약계층 또는 노숙인을 위한 주거지원을 하며 민원이 발생되었던 경험은 없으나, 민원발생의 소지를 낮추고, 주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함께 발굴하고 돌보며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를 벗어나 지역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말하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음.
  - 운영목적으로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회안전망으로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심각한 위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대상으로는 협의체 위원, 통장, 자원봉사자, 생활밀착직종 종사자 등이 있음.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주거취약계층 중 저장강박증 있는 대상자의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 다수 발생
  - 고시원, 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면서 방안 및 문밖에 가득 물건을 쌓아두는 대상자가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 및 임대인의 민원이 자주 접수됨.
    -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고 하더라도 저장증세가 반복되어 다시

퇴거위기에 놓임.

- 대상자는 병인식이 없으며, 이를 함께 도와줄 만한 사회적 네트워크도 없는 상태
- 화재위험, 벌레 등 환경 열악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대상 범주에 속함.

○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제정(2021.3.18.)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통합사례관리 가구,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구비 500만원 편성 및 지원(집 청소, 심리치료 등)
  - 대상자가 병인식을 갖고 치료를 병행해야만 문제해결이 된다고 생각되나, 통합사례관리가구를 제외하고, 대상자를 도와 이를 추진(심리치료 등 병원까지 가는 것이 어려움)하고 수행할 만한 기관이나 인력은 없는 실정임.

□ 세종시 부강면

○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원룸 등 임대주택을 이용한 후 퇴거 시 청소를 하지 않거나,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 퇴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임대인들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수급자나 노숙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 인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교육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납부의 중요성, 퇴거 전 기본적인 청소와 정리에 대한 의무, 주택 내 기본 생활 예절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 둘째, 임대계약 시 청소 의무와 관련된 특약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청소 의무와 임대료 납부 책임을 기재하고, 위반 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안내함으로써 입주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셋째, 주변 이웃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 형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주 초기부터 지역 행사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원봉사자나 커뮤니티 매니저가 중재 역할을 하여 자연스러운 관계 맺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시행된다면, 수급자나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점차 개선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나 이웃 주민들의 수용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결국에는 주거 안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주거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 주변 주민들의 반응이나 민원
  - 노숙인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은 잘 없었으나 간혹 저런 사람들은 도와줘도 계속 문제가 반복되니 부질없다는 반응도 있었음.
- 민원 완화 및 해결 방안

-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
  - 노숙인 지원에 대한 효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편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 실시
  - 지역사회 내 성공 사례 공유
-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우리 복지관 라루체합창단의 경우 수급자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 합창단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화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간담회 실시
  -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신속하고 투명하게 민원을 완화하고 해결하고자 함.

####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 사례관리를 통해 만났던 지역주민들은 노숙인에 대해 거부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지 몰라 걱정하시는 이들이 많았음.

####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전세임대주택 물색 시 까다로운 권리분석 및 근저당 설정의 사유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
  - 자치구 권역별 주거상담소를 만들어 임대주택 신청 및 접수, 선정 후 주택물색, 권리분석 후 계약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

□ 갈매사회복지관

○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위한 서명운동 경험

- 실제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주민들은 그 필요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
-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동참

□ 전라북도 군산시

○ 노숙인 시설에서 자활, 자립했다고 판단하여 월세 주택을 마련하여 이주하였음. 그러나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알코올의존(중독) 문제와 노숙생활(인근 공원)을 계속해서 수급자 관리가 어려워짐.

-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월세 체납 및 청결 유지가 안되어서 집주인으로부터 강제 퇴소 조치함.
  - (해결 방안) 오랜 노숙생활을 반복해왔던 사례는 다시 노숙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므로 무료급식소 이용 안내 또는 식사 제공, 일상생활 도우미(가사지원) 등이 필요함.

□ 부평구청 부개1동

○ 대상자 혼자서 “집 구하기, 계약, 이사”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대상자의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집 기물 파손, 술 드시고 큰소리로 혼잣말하며 욕하기,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기” 등을 하여 집 주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민원 호소

○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망자의 물품 정리”를 행정복지센터가 책임지는 것을 요청함.

□ 광주광역시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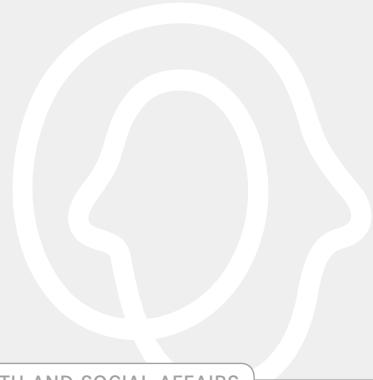
- 민간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후 운영과 지원은 공공에게 책임을 가지고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케어안심주택을 운영하면서 주택을 건립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민간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동안 공공과 협업한후 공공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 고령자특화주택을 더 운영하기를 희망하지만,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LH 등지에서 허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과 결합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3장

### 외국인과 공공부조

제1절 모니터링 개요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제3장 외국인과 공공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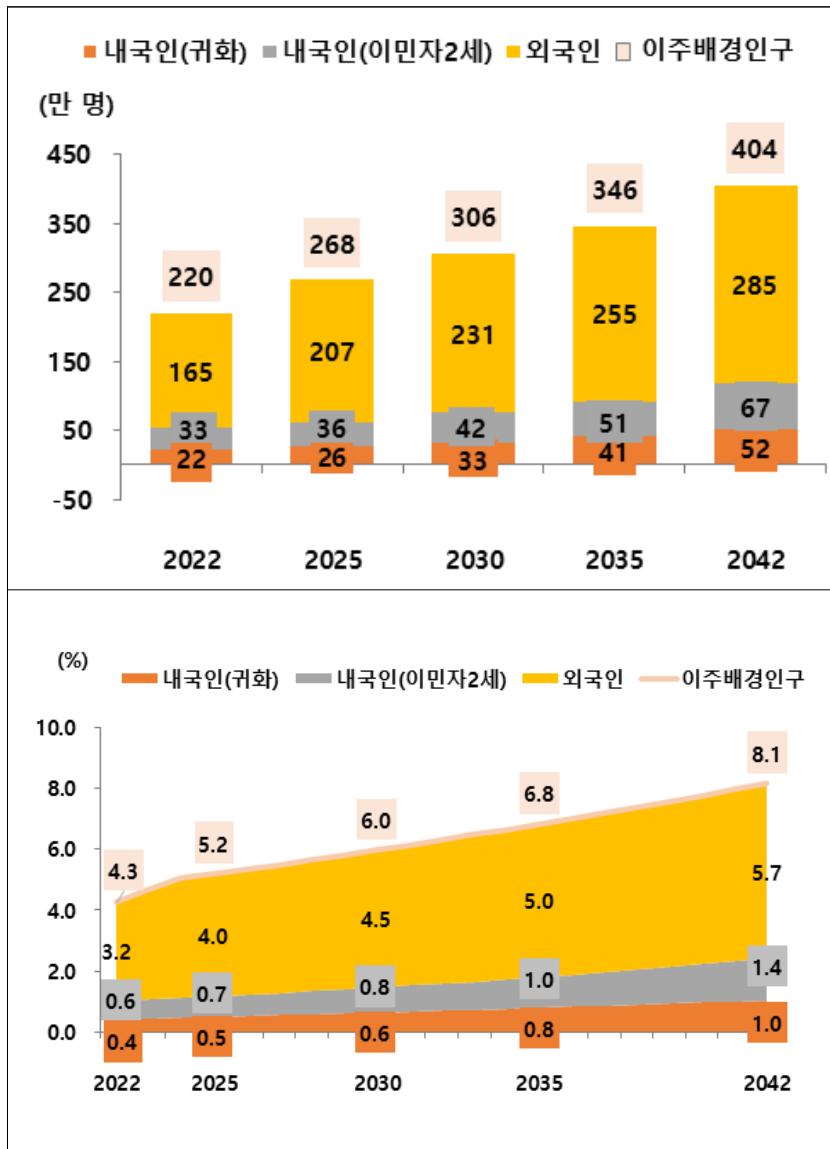
### 제1절 모니터링 개요

#### 1. 이주배경인구의 유입 현황

- 이주배경인구에 대한 사회권 보장 의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
  - 이주배경인구는 2022년 220만 명에서 2042년 404만 명으로 증가,총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구성비는 2022년 4.3%에서 2042년8.1%로 증가할 전망
    -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 내국인(귀화), 내국인(이민자2세), 외국인의 합으로 산출
  - 2070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3,80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이주배경인구의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됨.

## 160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그림 3-1] 이주배경인구(2022~2042년) 추이



출처: 통계청. (2024.4.11).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p. 3.

□ 이주배경인구는 단일하지 않으며, 체류자격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나뉘어짐.

○ 집단별로 체류 인구의 규모도 상이하며, 비교적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체류자격(사증 D, E, F, H2)에 한정해서 유형별로 살펴 보면 다음 <표 3-1>과 같음.

<표 3-1> 주요 체류자격별 체류 기간 및 체류 인구

체류자격 계열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체류 인구(명)
D계열: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D-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152,094
E계열: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D-10 (구직)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는 사람	6개월 (첨단기술 인턴:1년) (연장 가능)	14,956
	E-8 (계절근로)	농작물 재배·수확,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5개월 (연장 불가)	14,143
	E-9 (비전문취 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제조업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3년 (연장 가능)	310,825
	E-10 (선원취업)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내항선원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	3년 (연장 가능)	21,476
F계열: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H-2 (방문취업)	18세 이상 7개 국적의 동포로서 모국 방문 또는 취업(46개 업종)하려는 사람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년 (연장 가능)	103,981
	F-1 (방문동거)	친척방문, 가족 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년 (취업 불가)	112,260
	F-2 (거주)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	5년 (취업 일부 제한)	53,325

## 16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체류자격 계열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체류 인구(명)
체류하는 사람	F-3 (동반)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동반기간 (취업 불가)	30,613
	F-4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3년 (단순노무 불가)	536,374
	F-5 (영주)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영구 (취업제한 없음)	185,441
	F-6 (결혼)	국민과 혼인한 사람	3년 (취업제한 없음)	142,042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비자 내비케이터”, 2022년 5~7쪽 내용 정리 및 통계청 (2025.4.19) 시군구별 및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2%26tblId%3DDT\\_1B040A11%26orgId%3D111%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2%26tblId%3DDT_1B040A11%26orgId%3D111%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014. 12. 30.>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12. 28.〉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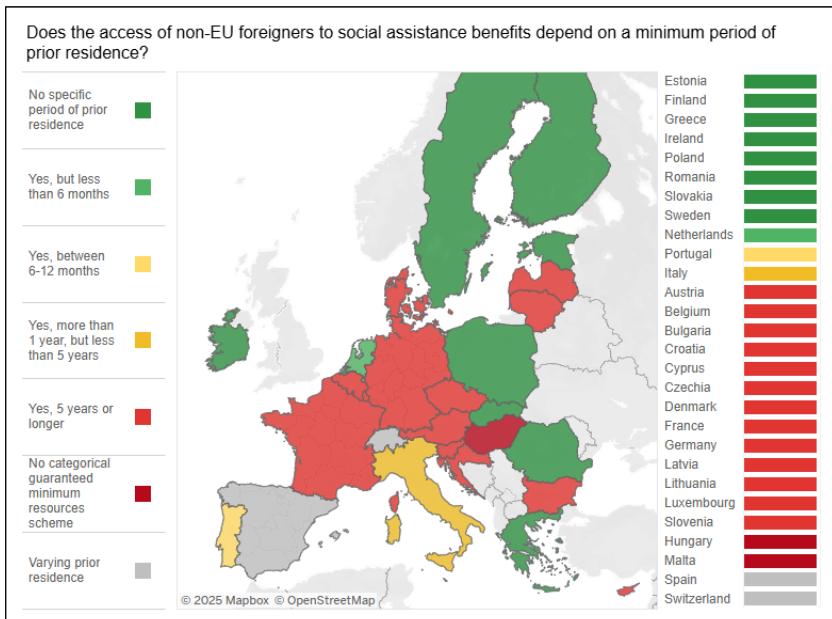
## 2. 이주민의 공공부조 수급 관련 제도 현황

-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도의 대상을 ‘국민’으로 설정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한국인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외국인에 대해서 특례 조항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가구원으로 포함. 난민 등 일부 이주민도 예외적으로 포함.
  -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시행령에서 귀책사유 없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자로 설정하면서, 이주민을 일부 포함. 구체적인 기준 제시는 없음.
  - 두 제도에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외국인 특례는 2007년에 마련됨.
-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
  -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에 대해서는 제6조 제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 그 외에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문재인 대통령이 2018. 3. 26. 발의하였던 헌법 개정안에서는 “세계화가 진전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천부인 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를 각각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할 필요”를 이유로 다수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하였으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권을 규정한

### 개정안 제35조는 여전히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

-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저한도 생계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주민 가운데 일부는 공공부조의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법학쪽 다수의 학술논문에서 이주민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김복기, 2019, 조재호, 2020 등). 이를 테면, “최저 생활보장은 문명국가의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가치이며, 설사 편입 여부를 보호의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에 유사한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김복기, 2019, p. 34). 학계와 시민단체 쪽에서 요구가 있었으나, 반대 논리는 공개적으로 제시된 바 없음.
- 참고로, 유럽의 경우, 다수의 국가에서 외국인이어도 일정한 체류 기간이 보장된 경우 공공부조의 제도 대상자로 포함하는 경향이 나타남.
- Vintila와 Lafleur(2021)에 따르면, 헝가리와 몰타를 제외하면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체류 외국인도 공공부조 수급권을 가지고 있음.

[그림 3-2] 유럽연합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 수급권 부여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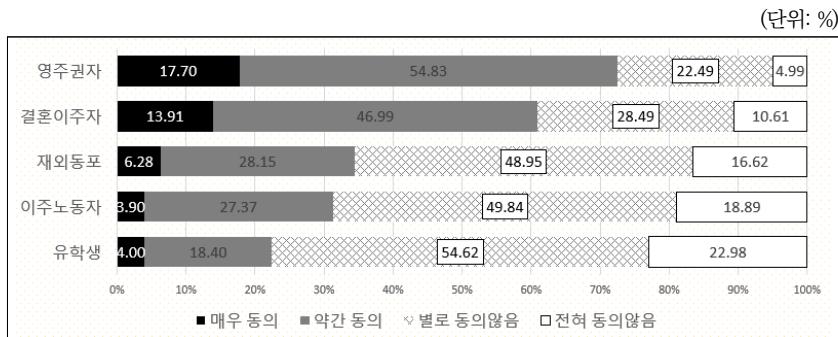


### 3. 문제의식

□ 종합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혹은 이주배경인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에 정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이들 가운데 적지 않는 인구가 빈곤에 빠질 위험에 처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원칙적으로 ‘국민’을 제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지난해 곽윤경 외(2024) 연구에서 이주민 유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은 다음과 같았음. 상대적으로 수용적임.

[그림 3-3] 이주민 유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권리 보장에 대한 동의 정도



출처: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원자료 저자 분석.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정주하는 빈곤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 수급권 부여의 가부 및 제도적 조율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4. 모니터링 내용

-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제2차 포럼
  - 모니터링 주제
    - 외국인과 공공부조
  - 모니터링 내용
    - 질문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조항 관련 경험 및 의견
      -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 특례 적용 대상자의 급여 신청·심사·지급 실무 경험
      - 특례 대상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질문 2) 긴급복지지원제도상 외국인 지원 경험 및 의견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대상 급여 신청·심사·지급 처리 경험
  - 현장에서 체감하는 외국인 긴급지원 제도의 한계 및 개선점
- 질문 3)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빈곤한 외국인 발굴 및 공공부조 신청 사례
  - 한국국적 미보유 빈곤 외국인의 공공부조 신청 및 위기기구 발굴(사각지대) 경험
  - 해당 사례에 대한 행정적 대응 현황 및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적 공백과 개선 과제
- 질문 4) 기타 현장 의견
  - 외국인 공공부조 지원 주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겪은 기타 애로사항 및 제언

##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1. 외국인 급여 지급에 대한 경험 및 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 조항에 따라 결혼 이주 여성이나 난민 등의 급여 신청, 심사, 지급하신 경험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느꼈던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합니다.

□ 제주시 노형동

○ 결혼이주여성

- 생활환경

- 가족 : 남편, 자녀 1(장애인)
- 남편과 대상자가 자녀양육과 생계 담당
- 부부가 젊은 나이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신청이 어려움.
- 한국에 10여년을 살았으나 원활한 언어소통이 힘듦.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지원

-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시 공무원과 신뢰관계를 만들기 힘듦  
(대상자는 외국인에 대해 한국인은 선입관을 갖고 있을 것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특히 공공부조는 차등이 있다고 생각  
하여 수급자 신청부터 급여액까지 차별 받는 것으로 생각;  
금액 차이에 대해 납득시키기 힘듦).

- 상담시 함께 동석한 다문화센터 통역사가 대상자와 오랜 기간 상담을 했는지 대상자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함 (대상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음).
- 다문화 가정으로 종교기관, 외국인 지원 단체 등등 여러군데에서 후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찾아내기 힘듦.
- 생계비 등의 수급 통장을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가족간 갈등 발생(배우자 가족은 남편,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시켜 줄 것을 요구)
- 특히, 배우자의 가족은 대상자가 생계비 등의 일부를 친정으로 보낸는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음.
- 대상자가 언어 등 소통의 문제로 낫 일을 다니지 못하고 있어서 늦은 밤 또는 새벽 일(주로 부두에서 하는 일)을 하는데 배우자의 가족이 일보다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 (이성 친구 사귐 등)
- 자녀의 발달장애가 후천적 요인(언어 습득이 늦고 집과 학교 환경이 너무 달라 아동에게 혼동 발생 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나 가정에서 자녀에게 치료에 적정한 훈육을 할 수 없는 환경
  - 개선방안
  - 각 시도의 사회복지직 중 전문 사회복지 및 상담자 양성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와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이후 기초수급 신청사례

- 2인가구로 조사후 2인가구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나 대한민국 국적의 1인만 보장가구원으로 책정
  - 문제점 : 가족구성원의 다양화 등 국제결혼도 핵가족이 많으나 직계존비속의 돌봄여부로 외국인 지원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생
  - 개선점 : 기초수급자 외국인 특례선정기준 완화 필요(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부합시 직계존비속 돌봄여부와 상관없이 선정 필요)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결혼이주 여성이 자녀 출산 및 배우자와 이혼 후 맞춤형 급여 신청 사례가 많음.
  - 한국 국적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폭력 등 이유로 이혼 후 한부모가정으로 공공부조 신청 사유가 주를 이룸.
  - 해당 가구가 복합적 위기 상황으로 통합사례관리가구로 선정 되어도 개입 과정에서 언어장벽으로 인한 행정적 지원과 소통의 어려움이 큼.
  - 우울·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가진 대상에 대한 각 나라별 외국어 표준평가지표 필요
  -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두려움으로 긴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의료기관 노출을 상당히 꺼려함.
  - 성북구 가족센터의 경우, 도움가능 나라 통역사는 2개국(몽골, 베트남)에 한정되어 있어 2개국 외의 대상자가 있을 시, 중앙 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나 타 센터에 배치된 통역사의

### 연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 언어장벽으로 아동양육 및 취업의 어려움, 정신과적 질환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통합사례관리가구 증가

#### □ 인천광역자활센터

- 언어 및 신청자격 및 서류 준비의 어려움이 따름.
- 국적 문제 : 난민이나 결혼 이주 여성들은 국적이나 체류 상태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함.

#### □ 세종시 부강면

-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의 포함된 다문화 가구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 조항에 따른 급여 신청 업무를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후 어린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많아 저소득 한부모 가구나 생계, 주거급여 신청을 도와드린 사례가 많습니다.
- 현장에서 느낀 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이주여성들은 아이들을 위해 생계를 책임지며 밤낮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제도를 필요에 따라 잘 활용하고 있는 반면, 제도의 혜택을 이용해 급여만 수령하고 자녀를 사실상 방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들이 외국인 어머니의 보호 아래 방임되거나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급여를 지급한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 사회복지사나 방문지도사 등의 전문 인력이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 ○ 한국국적이 없는 결혼 이주 여성의 급여 신청 동행 경험

-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이 실종되어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어 급여 신청에 동행함.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당사자가 제도 이해와 대응에 어려움 있었음. 실질적 생계 단절 상황임에도 급여 신청 및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꼈음.
-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적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의창노인종합복지관

##### ○ 가정폭력상담소에 의뢰된 결혼이주 여성 A씨 사례

- 2018년 창원시에 거주하는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계속된 가정 폭력으로 2024년 창원00쉼터에 3세 자녀와 함께 동반 입소 중이며, 기초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한국어가 서툴러 신청서류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상담소 직원과 주민센터 직원의 도움으로 접수를 진행하였음. 문제는 남편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외에 본인의 거주지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근 이웃의 진술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받아 지급시기가 많이 지연되며, 계속적으로

생활고를 겪어야만 하였음.

- 결혼이주 여성들이 의사소통에 불편하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과 행정업무 처리시 통역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함.
- 급여신청시 주민등록 외에 임시주소지(예: 상담소 입소일 경우, 상담소 주소 등) 등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
- A씨는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적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음. 관련된 정보를 잘 알지 못했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현 상태까지 온 것임. 국적 신청부터, 공공부조 급여까지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필요함.

#### □ 경상남도 의령군

##### ○ 결혼이주여성 기초생활수급신청 사례

- ○○ 국적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하여 자녀 1명을 양육 중 생계곤란으로 수급신청선정, 갑작스런 생계곤란 사유는 한국 국적 남편 농업(하우스), 알코올 중독 의심, 농가 부채과다, 외 도로 외국 국적 배우자 및 자녀 돌봄과 가정소홀, 배우자 역시 남편과 함께 하우스 농사일을 전담하면서 살았으나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시부모와의 고부갈등, 문화적, 언어적 다름,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가출반복(경찰서 가출신고)한 3인가정이 마을 이장의 신고로 수급 신청 선정 기초생활보장자격 취득

##### ○ 다문화가정(한국인 남편, 외국인 배우자, 자녀1명)의 3인가구 수급신청 선정후 자립자활(수급자격 중지) 사례

- ○○ 국적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인 남성(정신질환 경증)과 결혼 자녀 1명 신청 당시 남편은 정신질환으로 근로무능력 판정,

농사 일용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소득이 적어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수급신청 선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하여 오다가 국적을 취득하고 개명 10년후 인근 도시지역 회사 취업(정규직), 정신질환 남편 장애인 일자리 참여 가구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중지

#### ○ 외국인 배우자 수급 신청 선정후 부정 사례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 후 자녀 1명을 낳아 살고 있던 중 남편이 간경화로 사망, 이후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던 중 본인과 동일국적 남성과 동거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생활, 이웃주민의 제보로 가정방문 시 적발되어 수급중지 된 사례
- 한국인 배우자 특히 남성을 이용하여 혼인한 00국적의 배우자가 친정 형제 및 부모까지 입국시켜 식당일, 농업 등 가족전체가 이주하는 경우도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다문화가정 수급자가정 해외체류 60일 이상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중지사유, 해외체류 90일 이상이면 정지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해외체류 출입국 기록이 사후에 발견되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 자녀 및 가족을 찾는데 상당한 애로와 급여 상계 등 문제점이 있음.
  - 해외체류 변동사항은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 가구의 부부가 해외체류 사실을 읍·면에 미신고
  - 국내에 홀로 남겨진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 및 행방·거취를

파악하기 어려웠음.

- 개선점 : 결혼다문화가구 친정방문(일시, 단기, 장기) 주소지 관리행정동 신고 안내 철저 및 사전 신고의무(수급 신청시 고지)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 해외체류 계획이 있을 경우 출국 10일 전에 관리동을 통하여 반드시 변동 사항을 알리도록 안내 및 관리가 필요함.
- 해외체류 변동 사항 접수와 관련하여 공문 등으로 급여 사업 팀과 공유

#### □ 서울시 성동구

○ 외국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주소지가 전체 표시 되지 않음.

- 외국인은 한국 국적인 가족들과 동일 주민등록이 아닌 따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주소도 일부만 표시되어 동일 거주 확인의 번거로움이 있음.
- 또한 외국인은 주소지 변경 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을 해야 해서,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음.

○ 혼인관계증명서상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공란인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공란인 경우도 있으나, 있어도 확인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말하지 않는 경우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생김.

○ 결혼이주여성의 공공부조 신청의 어려움.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결혼이주자 급여 신청 시, 금융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

- 결혼이주자가 급여 신청 시, 사적이전소득 및 자국통장출금 또는 자산을 통한 내역 확인이 어려움.
- 결혼이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한국 국적의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 자국 통장에서 출금하여 한국에서 쓰거나, 자국에 있는 부동산 수익이 있음에도 외국에 있는 소득 재산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런 경우 자국인과 달리 소득재산이 있음에도 수급자로 책정될 수가 있어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큼.

○ 결혼이주자의 언어적 한계

- 결혼이주자 중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증개업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매매혼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음.
  - 자녀를 키우면서 살았으나 한국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경우 상담이나 조사 자체가 당사자와 힘들어 미성년 자녀와 상담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결혼이주자와 자녀가 사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가 수급자 신청이나 한부모 급여 신청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어려움. 부모는 언어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는 공공부조 등에 대한 관심이 없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또는 외국인지원민간기관 담당자와 동행하여 공공부조 신청 연계가 되는 경우가 있음.
  - 예로, 같은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을 통해서 일용근로를 전전

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의 경우 학교 폭력 등에도 노출되어 있었지만 경찰 신고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외국인지원센터의 통역직원을 통해 신고되는 경우도 있었음.

#### □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 기초수급 신청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를 예를 들면 난민이 밀집한 지역,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에 따라 기초수급 신청 횟수의 편차가 심합니다.
- OO 국적의 노부부가 한국에 와서 귀화 신청을 했는데, 남편은 귀화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사람이 되어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었고, 부인은 귀화 시험에 떨어져 기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부인은 신장질환이 있어 치료비가 많이 들지만 이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는 미미하며, 민간기관의 지원제도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한계에 다달아서 복지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문제점: 외국인(이주자, 영주권자, 귀화자 등)의 기초수급 신청에 있어, 신청자들의 정확한 가족사항 및 자국 소유 재산 정도를 파악 할 수 없음.
- 개선점: 외국인지만, 현재의 상태가 어려워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외국과 조약·협력 등을 통해 외국인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증평삼보사회복지관

○ 결혼이주여성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지원 경험

- 사례로는 남편 사망 후 만 10세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결혼이주여성으로, 체류 비자 만료로 인해 불법체류 상태에 있었으며, 언어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세 등 공과금 체납과 불법 노동 중단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사례였음.
- 의뢰 당시, 혼인에 따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 중이었으나 남편 사망 후 체류자격이 상실되었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병간호하였으나 요양원 입소 이후 시댁 가족 간 관계 단절로 인해 국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는 상태였음.
- 지원 과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음.
  - 비자 연장 지역에 따른 수급 신청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위해 체류 자격이 선행되어야 하나, 체류 연장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지원이 어려웠음.
    - 자녀 단독 수급 신청 진행: 보호자(결혼이주여성)의 자격 문제로 인해 자녀만을 대상으로 수급 신청을 진행하였고, 이 후 보호자가 자활근로 참여 가능한 수급자로 선정되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음.
    - 신청자의 소극적 대응: 불법체류 상태로 인해 복지제도 접근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언어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상담 초기 단계부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음.

- 체류자격 미비자에 대한 한시적·조건부 지원 혜용: 결혼이 주여성, 난민 등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통역 및 다문화 전문인력 확대: 언어 및 문화적 장벽 해소를 위한 통역 지원 체계와 전문 상담 인력 배치가 확대되어야 함.
- 긴급복지 및 관련 제도 간 연계 강화: 체류자격 확보 전이라도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제도 등과 연계하여 선제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체류자격 미비, 행정 절차 지연, 신청자 소극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며, 위기 외국인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 □ 전라남도 영암군

-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자격 부적격으로 인한 어려움.
  - 행정복지센터 근무 시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대상자가 일용직 근무를 하는 대상자였고, 소득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음.
  - 대상자 중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귀화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음.
  - 대상자들에게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때, 대부분의 대상자는 화를 내거나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 공장 밀집 지역으로 한국사람과 결혼한 대상자는 많지가 않고,

일단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웠음.

#### □ 경상남도 산청군

- 해당없음 : 외국인 대상 공공부조대상자가 10세대 이내임(우리군 기초수급자는 3,940세대 4,826명임<증복포함/ 생계 1,303세대 1,537세대, 의료 1,146세대 1,353명, 주거 1,355세대 1,727명, 교육 136세대 209명 등>).

#### □ 경기도 오산시청

-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적이 있으며, 한국인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00 국적의 당사자는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모(母)로 특례 조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되는 가구였음. 00 국적의 모는 주기적으로 00을 오가고 있었으며,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통산 180일까지의 기간 중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시 보장 제외되는 내용으로 출국 전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일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증지가 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외국을 오가며 지원 받고 있었음. 00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국적의 자녀가 수급 자로 등록되어 있어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저소득 양곡지원이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0kg 2,500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 10kg 10,000원) 요금감면 혜택(전기, 가스, 수도세 감면 / 에너지바우처 등)을 받고 있어 보장을 받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OO동포가 국적 획득 후 기초수급권 신청 및 선정하였던 경험은 다수 있었음. 한국 국적 획득 이후라 수급권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음.
-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국적의 자녀가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외국인이어서 부양의무조사 미실시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음.

□ 세종시 보람동

- 결혼이주여성이나 난민 등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로 공공부조를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나 한국인 가족이 신청함.
- 다문화가족의 신청 건수는 전체의 5% 미만으로 보임.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 사회적 기본권은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나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논의는 기여 기반의 사회보장제도를 고려할 때 기여에 기반하지 않는 외국인 보장은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호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회보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사회보장법 제 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국인 관련 특례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단, 한국인과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한 경우, 배우자의 한국인 직계 존속과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음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 천재지변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 국민과의 혼인관계, 미성년자녀 양육,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 위의 경우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혹은 결혼한 적이 있는 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한정되어 기초수급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음. 난민의 경우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해당되나 난민 인정자는 1994~2024까지 총 1,544명으로 2024년 한 해 100여명 정도 인정을 받았음. 또한 101명이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을 받았음. 따라서 실제 해당자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접촉빈도가 낮음.
  - 난민의 경우 생활정보 상담, 자녀유치원 입학 상담 등의 난민 상담은 있었으나 급여신청 건은 전무함.
- 외국인 지원 현장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산하의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센터 별로 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공부조 지원을 받는 외국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그 외 지자체에서 외국인 정책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설립한 외국인지원센터는 대상자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가정, 결혼이민자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부조 지원 대상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다루기 쉽지

않음. 난민의 경우도 일부 지역에 한하여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대상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에도 실 사례가 많지 않음.

- 결혼이주여성 :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자동차만 있어도 기초수급 불가 판정을 받았음. 국적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부모 다문화 가정의 경우 자녀인 아들의 이름으로 한정수급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였음.

---

■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의 급여 신청, 심사, 지급을 하신 경험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셨던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합니다.

---

#### □ 제주시 노형동

##### ○ 결혼이주여성

- 사건 개요
  - 대상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집에 배우자의 모, 자녀 1명과 함께 거주하는데 아동의 실수로 생활하는 방과 부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방 1칸만을 사용하는 상황
- 화재 이후 환경
  - 대상자는 낮, 밤으로 일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배우자 모와는 구분된 생활을 하고 있음.
  -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지원이 힘든 상황

- 대상자가 외국인으로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모가 정부지원이 나오면 본인이 받겠다고 함.
- 아동이 화재를 냄으로써 가족들의 질타가 많음.

- 지원

- 긴급지원을 할 수 없어서 위기가정지원(제주도 자체사업)을 통해 생계비를 지급하고 통장은 대상자 자녀의 통장을 활용함.
- 사건을 계기로 대상자는 자녀와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배우자 가족과 단절
-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모금활동을 통한 후원금 등을 학교 사회복지사와 의논하여 이사 후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

- 문제점

- 경찰과 소방서에서 대상자와 자녀를 조사하는데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읍사무소로 공적 자료를 요청하여 의견 충돌 발생
- 경찰과 소방은 아동을 조사할 때 대상자가 보호자로 동석 하여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함.
- 재산 손실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결혼이주여성은 배우자의 가족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대화와 협의보다는 배우자의 가족들의 요구 사항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상황 발생(보상을 전혀 받지 못함)

- 개선 방안

- 각 시도의 사회복지직 중 대상자와 배우자 가족이 인정할 수 있는 전문 사회복지 및 상담자 양성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중한 질병의 외국인이 입원 및 수술로 인한 긴급의료비 지원 요청 사례

-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미지원
- 대한적십자사 희망진료센터 상담 안내

□ 인천광역자활센터

- 자격요건 제한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급 자격은 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행정 절차의 복잡성

-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서류 준비 및 번역의 어려움이 따름.

□ 세종시 부강면

-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신청, 심사, 지급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해외 이주 여성이 이혼이나 별거 후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 급여를 수령하고 모국으로 귀국하거나, 1년마다 같은 사유로 반복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도적 개선을 위해 외국인의 체류 상태 및 귀국 여부 확인 강화, 반복 신청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후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 외국인 긴급복지지원제도 급여 신청·심사지급 처리 경험

- 실제 현장에서는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여전히 신청 건수 자체가 드문 편임. 이는 현행 법령상 외국인 지원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 당사자들이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언어·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신청 의사가 있어도 실제로 행정기관 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실직, 질병, 가족 해체 등)에서 일부 외국인 신청자들이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언어 장벽, 복잡한 자격 요건, 증빙서류 준비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 절차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함. 신청자가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지원 자격이 제한되어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다국어 안내자료 및 통역 서비스 확대, 복잡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현장 확인 중심의 적극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지원도 강화되어야 함. 또한 실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례별 예외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의창노인종합복지관

- 창원시는 창원가족센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긴급복지신청 시 별도 통역지원이 거의 없어 외국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외국인이 긴급 복지지원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이며, 실제로 신청을 해도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는 지원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음.
  -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외국인 대상 맞춤형 안내가 필요함.
  - 제도 신청을 위한 다국어 홍보물,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공이 필요
  - 각 동에 통장인력을 활용한 안내지원 활성화(통장대상 다국어 통역교육, 제도 안내)
  - 행정기관과 가족센터, 이주민센터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신청절차에 통역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상담 전문성 강화
    - 외국인 대상 긴급복지 상담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공무원의 이해도 및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
  - 주거 및 신분증빙의 어려움 해결방안 마련
    - 신청자의 실제 거주지 확인이 힘든 경우 지연 없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현장방문 절차 매뉴얼이 필요

□ 경상남도 의령군

○ 외국인 급여 신청시 문제점 및 개선점

- 갑작스런 위기사유 중 의료적 문제 –급성질환,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교통사고, 근로 중 사고, 농업일 사고 등으로 의료 기관 접근성 문제
- 외국인 중대질환시 의료급여특례 검토 필요
- 허위, 부정, 고의로 소득을 감추고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음. 예: 영유아 자녀 양육으로 조건제시 유예 식당, 일용 등 소득활동 가구 소득평가액 누락
- 개선점: 복지급여 신청 후 가정방문조사시 소득활동여부 철저 파악

□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 외국인의 긴급지원 신청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며, 5번 정도 신청한 경험이 있음.
- 외국인 노숙자와 외국으로 귀화한 정신질환 한국인을 긴급지원 신청한 경험이 있는데, 복지 조건과 맞지 않아 부적합 받음.
- 문제점: 외국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며, 외국 대사관에서도 자국인의 지원 범위가 협소함.
- 개선점: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아닌, 외국과의 정확한 협약에 의한 지원이 필요함(국내 지원방안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지만, 이것을 무능력·무책임으로 인식해 사고발생시 담당자가 곤란한 경우 있음).

## □ 증평삼보사회복지관

### ○ 외국인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지원 경험

- 외국인의 경우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더불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신청 초기 단계부터 지원 과정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특히,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많고, 해당 서류에 대한 안내나 발급 경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에 따라 담당자가 동행하여 서류 발급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 행정 처리에 부담이 있었음.
-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 사회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자국 출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니, 사실과 다른 정보나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 이로 인해 제도에 대한 오해로 신청을 주저하거나, 반대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신청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음.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목적의 제도이나, 실무상에서는 경제적 상태에 대한 서류심사나 가구 조사 등을 우선시하면서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음. 특히 외국인의 경우 소득·재산 확인이 어렵고, 신속한 자료 확보가 힘들어 제도 본래의 ‘긴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 외국인 신청자 중 일부는 ‘긴급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 기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선정 기준과의 괴리로 탈락하거나 행정적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외국인을 위한 전문 통·번역 및 제도 안내 인력 지원: 언어 장벽 해소 및 서류 안내, 제도적 절차 설명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다문화 사례관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외국인 대상 안내자료 제공: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기반의 정확하고 표준화된 안내자료 제공이 필요함.
  - 외국인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사회복지관, 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의 초기 상담과 제도 접근을 지원하는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경상남도 산청군

-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소득, 재산기준이 적합하고 위기사유가 적합하면 긴급복지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준에 부적합할지라도 긴급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체 조례에 의거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
-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외국인이어도 제도상의 문제점 없이 긴급지원하고 있음.
- 긴급지원 사례 공유

## □ 경기도 오산시

- 외국인의 긴급복지지원제도 급여 신청을 받은 적은 없으나, 해당 제도의 문제점은 위기사유가 굉장히 다양하고(주 위기사유 10여 개 외 지자체 긴급복지지원 조례로도 적용 가능) 딱 맞는 위기 사유가 없을 지라고 소득이나 재산 등의 기준선에 맞을 시 복지 사각지대로도 신청을 넣어볼 수 있음. 기본적으로 3개월 단기 지원이 원칙이나 다른 위기사유가 있을 시 3개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형과 경기도형이 있어 약용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수급이 가능함.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는 젊은층에서도 실직 등의 위기사유로 긴급생계비를 신청하여 급여를 지원 받는 경우 다수 있으며, 과다부채의 사유도 부채가 1천만 원 이상만 있으면 기준이 충족되는 부분으로 기준이 너무 완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국민기초수급자로 등록되어 낙인효과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 지원금액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약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근무지에 외국인이 많지 않아 한국 국적의 사람들만 급여 신청을 받아보기는 하였으나, 외국인 민원인이 많은 곳에서는 충분히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 건도 많을 것이라고 사료됨.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긴급지원업무를 수행하던 당시(약 6년 전) 외국인은 정부 긴급 지원이 되지 않아,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으로 외국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였음.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서 외국인은 한국국민과 혼인 중인 자, 한국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자로서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자, 난민으로 인정된 자,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인도적 체류자로 일부가 지원대상에 해당됨.
- 대전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의 경우 경제적 위기로 생활용품 지원, 질병관련 의료지원 등 생계가 어려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공부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함.
  - 긴급복지지원 요건이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기준이 충족되어 야 해서 결혼이민자도 그 기준(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의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화재 등으로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대전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자체에서 만든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에서는 긴급지원의 종류 중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생계, 의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보다는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대한적십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많을 것으로 보임.
  - 가정폭력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가정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이주여성쉼터 입소 연계 등 공공부조 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도 혼인 중 신청하는 비율이 거의 없음. 민간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현실임.

- 장애인 한부모 외국인 가정 : 장애인복지관 연계 후원사업을 통한 지원 신청
- 미등록 노인 외국인 : 지역보건소, 후원단체, 무연고장례식장 등 연계
- 외국인가정 : 질병문제의 경우 지역내 의료시설 사업공현팀 연계지원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빈곤한 외국인이 공공부조 급여를 신청하거나, 당사자가 발굴되는 경우를 직접 경험하신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관련 행정적으로 대응하셨습니까. 현장에서 느끼셨던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합니다.

####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광진구 자양4동은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임차료를 체불하는 등 빈곤한 외국인에 대하여 임대인이 기관에 직접 지원요청 사례 다수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공공부조 신청이 불가하여 빈곤 외국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며 민간 후원물품(쌀, 밀반찬 등)을 연계하기도 함.
  - 서울시 민관 연계사업인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중위소득 120% 이하)으로 지원 가능하나 민간 후원금으로 재원이 마련되어 외국인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가 많음.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빅데이터 활용 위기정보로 복지사각지대 외국인 간헐적 발굴

- (사례 1) 한국국적 남성과 결혼하였으나,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 취득 전 이혼함.

- 남편의 가정폭력 및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이혼
-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 위기가구로 발굴
- 이혼 후, 갑작스러운 뇌출혈 등 건강 악화로 의료비 및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나, 공공부조 급여 자격이 없음.
- 인근 여동생(국적취득)의 도움으로 근근히 생계유지 중
- 민간기관 후원 요청, 외국인 무료병원 정보제공에만 그쳐 제도적·인도적 차원의 한계를 느낌.

○ 공공부조 급여 신청이력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 후 공공부조 재신청

- (사례 2)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자녀 출산 및 국적취득 직후 이혼함.
- 이후, 본국에서 만난 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으로 같이 입국한 후 맞춤형급여 신청
  - 공공부조 급여 수혜 경험이 있어 스스로가 급여 상담 요청하는 사례 간혹 있음(자녀 양육 시 어려움 호소 - 초혼 한국인 자녀, 재혼으로 인한 둘째 자녀).

□ 인천광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 참여시 언어 장벽으로 공공부조 급여

신청 못한 사례를 접함.

- 다문화 참여자가 센터로 찾아와서 센터 실무자가 직접 주민 센터로 찾아가서 신청해드림.

#### ○ 정보 부족

- 외국인 대상의 공공부조 정보는 대부분 한국어로만 제공됨. 외국인에게 필요한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급여신청을 포기하거나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음.

####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 「국적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는 귀화 허가 시 신청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생활에 필요한 자산이나 생계 유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 해당 가구는 부부 모두가 청각장애인인 다문화 가정으로,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구는 기초 생활수급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 생계유지 능력 미확보를 이유로 외국인 국적의 어머니는 수급자 가구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남편과 자녀들만 기초 생활보장 급여를 지원받고, 어머니는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 대상자는 혼인귀화를 통해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상자는 혼인귀화 요건 중 일반적인 거주 경력은 충족하였으나,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예금잔액 요건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2인 가구(부부 기준)의 경우 약 2,000만 원 이상의 예금 잔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녀를 포함해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그 기준은 약 4,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나 이 가구는 부부 모두 청각장애를 가진 상태로, 정규직 근로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농촌 지역의 임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예금 잔고 형태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제도가 요구하는 생계 유지능력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대상자 부부는 모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수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인 아내는 한국어 습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혼인귀화를 위해서는 귀화 면접과 한국어능력 평가시험을 응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통역사 배치가 원활하지 않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미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외국인에 대한 귀화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국적 부여의 형평성, 사회통합,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와 저소득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은 외국인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일한

조건이 자국민에게 적용될 때에는 복지 제도와 사회안전망을 통해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체류 자격, 국적 요건, 복지 배제 등 복합적인 제약으로 인해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기보다 구조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화 심사 과정에서 사회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복합적 취약 요인을 지닌 경우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상황별 탄력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유아 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외국인 보호자에 대해서는 양육 책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수급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권 보장 차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 세종시 부강면

- 실제로 빈곤한 외국인이 발굴되어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 지원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관련 사례가 있을 때에는 우선 체류 자격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 대상 제도여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은 외국인 대상자가 언어문제로 인해 제도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원 기준이 엄격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개선점으로는

다국어 안내 강화와 최소한의 요건 하에 외국인들에 대한 생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 ○ 한국 국적이 없는 빈곤 외국인의 공공부조 급여 신청 경험(문의)

- 본 지역에서 한국 국적 없는 빈곤 외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 급여를 직접 신청하거나 발굴되어 지원 절차를 진행한 사례 매우 드물었음. 현행 법령상 외국인은 국민과의 혼인, 미성년 자녀 양육 등 제한적 특례 요건 충족 시에만 신청 가능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접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외국인 당사자가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언어·정보의 접근성 한계로 인해 신청 의사가 있어도 실제로 행정기관 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외국인 빈곤층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자격요건 현실적 완화, 다국어 안내 및 상담체계 구축, 적극적 발굴 및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 권리와 처우에 대한 법·제도적 기준 접근성을 구체화해 지역사회 내에서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 의창노인종합복지관

##### ○ 결혼이주여성 C씨는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남편은 연락이 끊긴 상태임. 통장의 도움으로 공공부조 신청을 하였으나, 본인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였음. 이후 창원가족센터를 통해 민간 후원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고 있음.

- 법령개정 검토

- 외국인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경상남도 의령군

○ 경남 의령군은 2025년 4월 기준 총인구 25,844명 중 외국인 국적자가 936명(남 644명, 여 290명)으로 인구대비 3.6%임.

- 외국인 국적자 936명 중 남자 644명은 농업일(하우스)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공단 근로자임. 여성외국인 290명 중 결혼이민자는 200명이고, 나머지는 근로자로 일시 입국자 이거나 가족임.
- 남성외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복지수당,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여성외국인 중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가구 외에 근로 등을 조건으로 장단기 체류하면서 남성외국인처럼 복지서비스 신청이나 이용하는 경우는 없음.
- 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은 대다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가구에서 주소득자 실직, 질병, 갑작스런 위기사유 등이 발생 했을 때 복지서비스 신청이용 지역에 소재한 다문화센터, 보육 기관, 마을의 이장을 통하여, 같은 국적 단톡방이나 모임, 지인 등을 통하여 신청
- 영유아 보육지원, 자녀수당, 세제혜택, 감면 등 한국국민들과 동일하게 인지하고 신청

○ 외국인 복지급여 신청시 문제점 및 개선점

- 결혼이민자 가구는 복지지원근거법 및 관련규정이 있어 지원 방법이 있으나 그 외 외국인은 정상적인 근로나 활동 중에는 문제가 없으나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차량 등) 발생 시에는 산재, 실업급여 등 한국인과 같은 혜택이 없으므로 소득을 상실한 후에는 질병치료도 못받고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있음(다문화 센터 상담).
- 정식체류 자격 기간내 외국인에 대하여 중상 등 중대한 질환에 대하여 자산조사를 거쳐 질병치료 기간내 의료보험 특례, 중증 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필요

□ 서울시 성동구

○ 한국인 父와 OO인 母 사이에서의 국적취득과 공공부조

- 한국인 父와 중국 국적의 母가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음.
- 태어나자마자 母는 父에게 아이를 주고 도망갔으며, 이후 아이는 OO국적(미혼공증서류를 제출한 후 여행증이 발급되었으나 그러는 동안 출입국에서 법이 바뀜)
- 다행히 사정을 알고 외국인 등록을 해주어 F1 동거인으로 발급 받음. 유효기간은 1년으로 계속 연장을 해야 하며 외국인으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음.

○ OO국적인 상황에서는 공공부조에 미해당되어 어린이집조차 갈 수 없음.

○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지원의 절차적 문제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부조는 외국인이 지원 받을 수 없는

구조임.

- 특히 상기 사례는 절차상의 올바른 인지를 못한 상태로 OO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과 행정력을 소모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빈곤한 외국인이 공공부조를 신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결혼이주자이거나 가족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음.
-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상담 또는 신청을 받아 본 적이 없음.

□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 ① 폐허지 줍는 외국 노인, ② 외국으로 귀화한 정신질환 한국인, ③ 노인성 질환과 질병을 갖고 있는 외국인 등을 경험함.
  - 기초수급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지원 기관에서 지원도 한계가 있으며, 외국인 대사관에서 지원이 미미함.
  - ①번은 민관기관의 후원을 받아 본국으로 갔고, ②번은 외국에 있는 자녀가 한국에 와서 데리고 갔고,
  - ③번은 계속 한국에서 거주 중임.
- 문제점 및 개선점: 외국은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치료에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 또한 외국 대사관 등에 자국민을 보호하라는 협조 요청 필요

□ 증평삼보사회복지관

- 외국인이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를 신청하거나 복지관을 통해 발굴된 사례는 많지 않았으며, 실제 사례는 남편 사망 후 한국에 거주 중이던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 국적이 없고 체류자격이 불안정한 상태였음.
  - 대상자는 언어 소통이 어려워 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제도 안내에 한계가 있었으며, 남편의 사망 이후에도 재산상속 등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경제적·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음. 해당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미소지 상태였으며, 공공부조 신청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발급, 통장 개설, 각종 서류 발급 등 기초적인 행정 절차부터 복지관에서 동행하여 지원하였음.
  - 또한, 외국인을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나 중간 지원 기관이 부재하여 대부분의 행정적 절차를 사회복지관에서 일일이 직접 동행하고 안내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음.
  - 이와 같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언어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 및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 외국인 전담 중간지원기관의 지정 필요: 외국인의 공공부조 신청 및 연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기관 혹은 지역 단위 중간기관이 필요함.

- 단기적 지원보다는 자립 기반 조성 중심의 접근 필요: 일회성 급여 지원보다는 외국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취업 연계, 자활 프로그램 참여 등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도 병행되어야 함.

#### □ 전라남도 영암군

##### ○ 사례관리 및 신고접수로 발견된 경우

- 대부분 외국인 대상자는 공공부조 급여에 관한 지식이 많이 없음.
- 드림스타트나 사례관리를 통해 사례관리사들을 통해 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옴.
- 경찰이나 아동학대 사례 신고로 접수된 경우도 생각보다 많음.
- 간단한 대상자 가구 조사 후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안내하거나 수급자 신청을 안내함.
- 대부분 의사소통이 어려워 외국인지원센터 통역 지원을 요청하였던 적이 많음.

##### ○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및 전화상담

-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상담은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들이 많음.
- 대부분 어느 정도 공공부조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대상자 여부에 관한 상담이 많음.
- 전화상담의 경우도 소통이 대부분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음.
-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대상자 자격요건이나, 소득 기준 등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음, 회사 및

일자리, 주거지에서 제도 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가 필요함.

□ 경상남도 산청군

- 결혼이민자가 부부 불화로 국적 취득이 늦어지고 있는 사례 공유

□ 경기도 오산시

- 한국 국적의 남편과 OO 국적의 아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위하여 내방하여 상담한 경험이 있음. OO인 아내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로 중으로 소득기준 초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외국인으로서 타국에서 힘들게 생활하는데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역정을 내었음. 국민기초수급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설명하였으나, 본인이 수급자로 책정되어 지원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으며 수긍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외국국적의 외국인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가진 한국인 지적장애 여성가정이 기초수급권을 유지하다가 외국인배우자의 근로 소득으로 자격이 중지되는 상황 발생
-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되나 배우자가 소득 중 일부를 OO의 자녀에게 송금하고 한국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극히 소득의 일부를 생활비로 주어서 체납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발생
- 지적장애가 있는 한국인 여성은 수급권 이 외에 근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외국인 배우자에게 경제력을 의지해야

### 하는 상황 발생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낳은 자녀를 잘 돌보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지적장애가 있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너무 적게 주어 어려움 발생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상황을 유지해야 함. 외국인 배우자가 이를 위해 결혼상황을 유지한다고 속단할 수는 없으나, 배우자로서 성인 가구원으로서 가구 내 충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세종시 보람동

- 한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모가 배우자(한국인) 부재(가출, 연락두절 등)인 상황에서 아동의 공공부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언어소통 문제로 행정처리 안내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신청서를 영어, OOO어 등 외국어 번역본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음(예,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신청자 및 내용 입력 후 외국어 여부 선택하여 출력).

###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은 외국인 특례조항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수급권이 미성년자녀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돌봄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으로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음. 사별한 결혼이주여성, 한국인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결혼이주여성, 미해당인 외국인 등 공공부조 수급권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주제로 현장에서 경험하거나 체감하신 다른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합니다.

□ 제주시 노형동

○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공공자료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대상자와 상담한 사항)

- 사건개요

- 대상자는 장기 불법체류자로 일일고용의 남편, 자녀 1명과 생활하고 있었음.
- 국적취득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상담한 결과 자진 신고 후 사실혼 배우자가 초청하는 것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 별금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불법체류기간이 길어서 약 2천여 만원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음.
- 대상자가 생각하는 문제는 별금을 낼 돈이 없으며, 두 번째는 불법체류자 자격으로 귀향했을 때 조국에서 해외출입 금지를 내릴 수 있어서 대상자는 조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었음.
- 대상자의 배우자는 2천만원을 구하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 사고로 수년간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함.

- 대상자 노력

- 대상자는 수급자가 될 수 없었고, 자녀만 수급자로 지원이 결정되었다고 함.

- 대상자는 외국인근로센터, 다문화센터, 종교 단체 등을 방문하며 별금 경감 등에 대해 도와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상담을 했는데 선처를 해 줄 수 없다는 주장만 들었다고 함.

- 확인

-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면서 알게 된 내용은 OO도에 이러한 가정이 너무 많으며 대상자와 같은 상황보다도 불법체류자간 가정을 이뤄 자녀를 낳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함.
- 출생아 위험 노출 및 복지사각지대 발생

- 개선방안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TF팀 구성 필요
- 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 필요
- 사라지는 아동 발생에 대한 경각심 필요
- 불법체류자 부모의 자녀 국적 취득 완화(국적법 개정)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복지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하여 빈곤한 외국인인 경우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소득기준, 체류조건 등) 빈곤아동의 교육지원 필요
  - 이주배경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내국인 아동과 외국인 아동의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조기에 예방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민간(무료) 비영리병원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

- 200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 이미 시행  
중이나, 동주민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인지 부족으로  
상담 시 사업 안내가 잘 되지 않음.
  -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 국적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자녀
  - 난민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서울시) 시행 의료기관 :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13개 기관
- 또한, 외국인 위기가구 발굴(상담) 시, 무료로 진료하는 의료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에만 그치는 실정임.
  - 이마저도 현장에서는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안내를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실무 현장에서 무료 진료병원 등 외국인 지원에 관한 정형화  
된 정보제공 필요

□ 갈매사회복지관

- F6(결혼이민자 비자 대상)

- 자녀 보육비 지원 추가 요청
  - 서비스 제공 등의 어려움은 크게 없으나 자녀 보육비 등  
필수적인 요소 지원 마련 필요

### - 기타 고충사항

- 소통, 어려운 법률, 복지용어 등을 서비스 지원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각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세세한 세부 자격요건은 확인 불가
- 잊은 담당자(공무원) 변경에 따라 원활한 업무 처리 불가

###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이혼을 원하지만, 체류 자격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들과 함께 별거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심각한 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법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직 가족 단위로 묶여 있는 행정적 구조로 인해, 여성과 자녀들이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혼 이민자 여성은 체류 불안정과 복지 배제 속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도의 한계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으로도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 해당 가구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한국인 남편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건강 악화로 인해 동정심을 느끼며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별거를 선택하였으며, 현재 경제적·정서적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완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이혼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이후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 210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현실적으로 법률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통역 지원 미비, 법률 비용 부담,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인해 소송조차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 세종시 부강면

- 외국인 긴급지원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원 요건을 최소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가 가능한 외국 인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을 위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 외국인·이주민 복지지원 현장에서 체감한 기타 경험
  - 현장에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미등록 이주아동 등 다양한 외국인 주민을 접하며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정서적·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크게 느낌. 언어·문화 차이, 정보 부족, 신분 불안정 등으로 외국인 당사자가 복지제도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음. 복지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자주 경험함.
  - 최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복지 신청 증가로 행정업무 부담이

커지고, 다양한 국적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 미등록 이주아동, 난민 등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만 실제 지원은 법적 한계와 전달체계 미흡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체감함.

- 외국인 주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 강화, 자격 요건의 현실적인 완화가 필요함. 다국어 안내자료, 통역 서비스 확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필수적임. 미등록 이주아동 등 제도 사각지대 대상자의 실질적 보호 방안 마련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 의창노인종합복지관

○ OO에서 이주한 여성으로 창원에 거주한지 14년 되었으며, 현재 노인복지관 등에서 디지털 배움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B씨와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 살면서 힘든점, 주변 결혼이주여성들 중에서 공공부조를 신청하거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공공부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에 대해 인터뷰를 해 보았음

- B씨는 시댁가족들의 도움으로 결혼 후 한국어를 바로 배울 수 있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가 훨씬 수월하였으며, 덕분에 취업도 잘되어 지금은 어려움이 없지만
- 결혼이주여성 모임에 나가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도 많고 (언어소통 어려움, 미취업 등), 결혼 후 남편의 폭력 등으로 별거 후 아이와 힘들게 살고 있으나 공공부조를 신청하는 방법, 절차도 모르고 의사소통도 힘들어 식당에서 알바를 해가며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함.

- 창원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수인원에 불가하고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함.
- 우선적으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고,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많다고 함. 취업정보, 취업알선 등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함.
-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 경상남도 의령군

##### ○ 복지서비스 신청외 일반적인 근로자 집단거주 안전성 문제

- OO시 OO면 고추하우스 집단 농업지구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천변 비닐하우스내 컨네이너형, 조립식 판넬 조립형으로 외부에서는 비닐하우스처럼 보이도록 해놓고 10명 정도가 생활하면서 인근 일터에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생활, 특히 야간에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모임, 생일 등 소규모먹거리 행사를 함.
- 일시적인 농한기 계절근로자로 보이며, 월세 등 주거에 부담을 느낀 외국노동자들이 집단 소규모 거주, 아지트
- 이곳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임금을 많이 주는 농가 또는 업체로 삼삼오오 이동
- 동절기 안전사고 취약, 위험(전기장판, 온열기, 난로 등)

### ○ 외국인 노동자 주거편의 제공사례

- OO군은 농사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폐모텔, 빈집 등을 활용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에게 주거제공
- OO군 OO면 파프리카, 주키니호박, 토마토 등 시설하우스 농가주변 농막(농민휴게쉼터)에 외국인부부 등 근거리에서 일하면서 생활하도록 제공
- 농민휴게쉼터(농막) : 20m<sup>2</sup> 이하 내부 화장실, 샤워실, 싱크대, 가전제품 등 일시적으로 단기간 거주, 숙식 가능,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 가건물, 무허가 건물, 건축물대장 없음.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유형에는 청년(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수급자 등이 있는데 다문화가정도 별도로 제정 필요
- 다문화가정 영구임대 소규모 타운 조성 필요 : 인구소멸위기 대응, 한국경제발전 기여 등 지속가능한 인류애적 접근 현재 의령군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유형 분류
- 청년(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기초수급자, 일반 등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배정 할당 없음.
- 다문화가정 유형 포함 필요한 이유
  - 인구소멸지역,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인구증가율에 기여 할 수 있음.
  - 인구증가 시책으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유형에 다문화 가정을 포함
  - 전입을 유인하여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 서울시 성동구

○ 외국인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진행 건수: 5건

- (사례1) 임신 중 한국인 남편과 사별한 OOOO 국적 이주 여성의 출산과 양육
  - 남편 사고사 이후 보상금 수령 문제를 두고 시댁식구와 마찰, 외면되었다 주장하며 홀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
  - 시댁은 당사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보상금을 들고 OOO으로 이주할 것을 염려,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당사자를 의도적으로 배제,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되면 보상금을 돌려 주겠다고 약속
  - 언어, 문화 적응, 경제, 자녀 양육 기술과 지원 부족 등 복합적 위기로 사례관리 진행
  - 한국 국적의 자녀에 대한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만 가능하였으나, 추후 당사자가 한국 국적 취득으로 공적부조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 현재 근로활동 유지 및 공공부조를 통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국 생활 유지
- (사례2) 한국인 남편의 해외 수감으로 홀로 출산과 양육을 맡게 된 OO 여성
  - 남편은 재혼, 본인은 초혼으로 OO에서 만나 한국으로 이주, 혼인신고
  - 사업차 OOO을 오가던 남편은 범죄에 연루돼 OO에 수감 되며 연락 두절

- 당시 임신상태였던 당사자는 한국에서 혼자 출산과 양육을 감당
- 언어, 문화, 경제, 자녀양육 기술과 자원이 부족한 당사자는 모자 가족을 지원하는 그룹홈을 전전하며 어린 자녀를 양육 하다 독립
-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착용, 정서적 학대, 방임 정황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되어 사례관리 유입
- 이후 출소한 남편과 재회, 한국에서 정착하여 생활, 국적 취득 하여 공공부조 등 복지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짐.
- (사례3) 긴 한국생활에 비해 한국생활이 서툰 외국인 부부와 자녀
  - 한국계 다문화 남성과 OOO인 여성의 부부와 자녀는 OOO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부부 모두 한국 국적 취득 완료)
  - 부부는 물론 자녀들까지 OOO 말과 문화에 더욱 친숙하여 오랜 기간 한국생활 중임에도 말이 서툴고 한국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보임.
  - 그 중 둘째 딸은 OOO으로 자주 출국하여 외가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관찰됨.
  - 경제력이 있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실질적 빈곤 호소, 확인 결과 언어, 문화, 경제, 자살시도 등 복합적 문제로 사례관리 유입
  - 현재는 가족 모두 한국에서 생활 중
- (사례4) 출산 없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구제와 비자 연장

- 자녀가 있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OO인 여성
  - 둘 사이에 출산은 없이 남편의 자녀를 함께 양육
  - 잦은 가정폭력 피해 신고로 경찰로부터 통합사례관리 의뢰됨.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음주 문제가 있던 OO인 아내에게 흡수되는 서비스의 한계를 경험
  - 남편의 음주와 가정폭력 가해에 대한 구제 반기를 원하지만 본인의 음주 문제에는 문제의식이 매우 낮았고, 남편은 OO인 아내의 비자 연장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아내는 남편과의 이혼이 본인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
  - 코로나 직전 뇌졸중 진단받아 당시 긴급지원, 후원금 지원 등으로 의료비 지원 받음.
  - 가족으로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인식한 OO인 아내는 본국으로 돌아감.
  - 이후 코로나로 입국하지 못하다 최근 재입국하여 한국인 남편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례5) 한국인 남성과 OOO인 여성으로 구성된 부부의 다문화 가정
- 부부는 혼인 후 1남1녀를 출산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음 (기초수급자).
  - OOO인 아내는 오래 전에 한국 국적 취득하였으며, 이름도 한국식으로 개명
  - 오랜 기간 한국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어 구사의 어려

음이 있음.

- 남편의 이상행동 및 가정폭력 등으로 사례관리 유입
- OOO 출신 아내의 암 발병 후 공적 지원 받는 것은 한국인과 같이 원활히 진행
- 타 다문화가정 사례에 비하여 안정적이고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으로 파악됨.
- 성인이 된 자녀들 모두 한국어 구사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며, 대학 및 군복무 유지에 어려움이 없으나 다소 위축되어 있는 경향은 관찰되고 있음.

#### ○ 외국인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지원 현장을 경험하고 느낀 점

- 한국 문화에 맞는 자녀 양육 기술을 전수하여 줄 밀접한 자원이 부족하다.
- 경험했던 모든 사례에서 자녀 양육상 문제가 발생
- 외국인 부모의 한국생활 부적응의 문제가 자녀 양육 태도에 반영
- 단순히 문화의 차이에서 보여지는 양육 태도를 주변의 한국 인들이 오해하여, 불필요한 부정적 시각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
- 한국의 생활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본국의 문화까지 이해하고 있으면서 한국 생활 속 자녀의 양육을 밀접 멘토링 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
- 경제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 단순 제공 서비스 외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움.

□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 언어의 장벽

- 외국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업무 진행,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즉각적으로 통역사가 연결되지 않거나, 통역사의 시간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함.

○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의 정서, 지능 수준에 영향을 받음.

- 한국인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남편이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해 대사관 등 주민센터 외의 다른 기관과의 소통이 필요할 수 있는데,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
  - 남편이 도망가려고 하느냐고 오해를 하고 일부러 도움을 주지 않기도 함.
- 한국인 남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으나 남편의 지능 수준이 낮은 경우
  - 서류 작성에 가장 많은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 남편이 비협조적(어려운 일이므로 귀찮아하는 등)이어서 행정절차 진행이 더욱 더뎌지거나 신청을 중도 포기하기도 함.

○ 대안제시

- 50+센터 가치동행일자리와 같이 단시간 아르바이트격 혹은 프리랜서와 같이 외국인 행정지원가(통역, 서류 준비 등)를 일자리로 창출하는 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민간단체 인력 충원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확대
  - 비협조적인 남편을 두었거나 혹은 이혼 후 자녀와 국내에서 독립된 개인으로 살고 싶은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경우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에 더 많은 품이 들. 이들에 대해 장기간 맞춤형 행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사회보장급여 지급시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인데, 외국인에 대한 조사 시에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 외국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미미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지만, 행정복지센터 혹은 구청에 연락하는 기관들은 외국인에 대해 해당 담당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는 죄책감이 드는 경우가 있음.
- 외국인 지원 기관이 생각만큼 지원하는 부분이 적음.
- 외국인 때문에 외국 대사관과 연락하여 업무 협조를 요청할 때, 이를 지원하는 정부 기관 필요

□ 증평삼보사회복지관

- 지원하는 과정에서 언어장벽, 경제활동의 한계, 제도적 기준의 제한 등 다양한 문제 경험

- 언어 장벽으로 인한 서비스 신청 지연 사례

- 경제적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체납고지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 외국인이 발급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여 서비스 신청이 지체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음.
- 사례) 외국인 배우자가 장애가 있는 가정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나,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위기가정 지원 신청이 필요 했음. 해당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고지하고 안내하였으나, 언어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신청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음.

- 경제활동의 한계 주요한 문제로 작용

- 지속적인 취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고용 불안정, 근로환경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단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 등 비정규 노동에만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웠음.
- 서비스별 지원 기준 등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 국적 취득 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지자체에서 후원 물품 등 일시적인 지원을 의뢰하였으나, 자격요건 미비로 인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음.
- 사례)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진단과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웠음. 지자체를 통해 후원물품 지원이 의뢰되었으나,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일시적인 지원에 그쳤으며, 국적 취득 지연

등의 사유로 이후의 연속적인 서비스 연결이 불가능하였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 전라남도 영암군

##### ○ 아동학대 조사업무 시

- 아동학대 조사업무 당시 외국인 상당수가 생각보다 체별에 관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민감하게 생각함.
- 외국인 아내가 한국 남편을 신고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았음.
- 가정조사 시 체별가정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긴급복지지원 연계나,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소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연계 등 서비스 연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개내용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재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남.
- 외국인 부부의 경우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조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음.
-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로 연계했던 기억이 있고, 센터에서 같은 국적 대상자가 대한민국 제도를 많이 교육하고 설명하였음.

#### □ 경상남도 산청군

##### ○ 계절근로자 외국인과의 언어소통 어려움 있음.

- 예) 지난해 여름,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위험지대 순찰 중, 강둑에서 낚시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서 그곳에서 낚시하면 위험하니 귀가하시라고 하였는데,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피하는 사례 있었음.

- 만약, 갑작스러운 홍수가 나서 피하지 못했거나, 다쳤다면?

#### □ 경기도 오산시

- 특례내용으로 편법을 활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진정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보장받고 있는 대상자가 많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에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카페나 단체카톡방 등에서 어떻게 하면 편법을 써서 더 많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등의 상황에서 탈수급이나 진정한 자립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때때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음.

#### □ 세종시 보람동

- 각 지자체별 외국인 대상 공공부조 및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 기본적으로 공공부조체계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주민 유형이 더 많고 해당되더라도 모르거나 기준이 제한적이라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공공부조체계 지원에 대한 외국인 전반 실태를 검토하여 선별하되 확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긴급지원은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4 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25주년 관련 평가

제1절 모니터링 개요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제4장 기초생활보장제도 25주년 관련 평가

### 제1절 모니터링 개요

####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돋기 위한 공적부조제도
  - 2015년 7월 제도 개편을 통해 통합급여 →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 수급자 선정 시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 ②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교육급여('15년), 주거급여('18년), 생계급여('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표 4-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
생계급여	28%	29%			기준중위소득 30%				32%	3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44%	45%	46%	47%	48%	50%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출처: 보건복지부. (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재구성. (각 연도).

## 226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표 4-2〉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연도	내용
2015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인 경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li> <li>-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li> <li>-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li> </ul>
2021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10월)
2025	- (변경)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재구성

###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 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 환산율]

〈표 4-3〉 2025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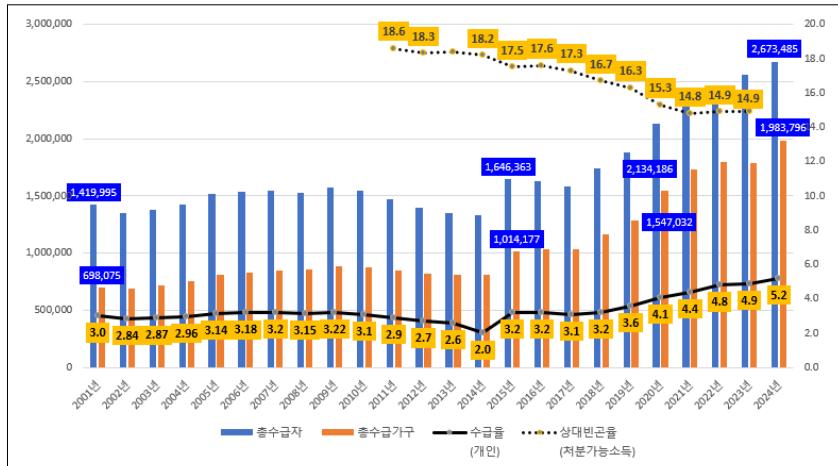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2025). 수급자 선정기준. 2025. 8. 1. 검색. Retrieved from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 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제도 도입 직후인 2001년 일반수급가구는 약 69만 가구
  -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 이후인 2016년 100만 가구가 수급하였고, 이후에도 부양의무자 폐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이어갔으며, 2024년 약 198만 가구가 수급
  - 급여별 수급자 현황
    - 생계급여 수급자 2016년 124만 명 → 2024년 169만 명 (+45만 명)
    - 의료급여 수급자 2016년 141만 명 → 2024년 148만 명 (+7만 명)
    - 주거급여 수급자 2016년 138만 명 → 2024년 250만 명 (+112만 명)
    - 교육급여 수급자 2016년 38만 명 → 2024년 30만 명 (-8만 명)

## 228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그림 4-1] 연도별 수급자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 3. 모니터링 내용

#### □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제3차 포럼

##### ○ 모니터링 주제

- 「기초생활보장제도 25주년 관련 평가」

##### ○ 모니터링 내용

- 질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원칙에 대한 평가
  - 제도의 3대 원칙(최저생활보장, 보충성, 자립지원)의 실효성 평가
  - 보충성 원칙과 자립지원 원칙 간의 배타성 및 상충되는 경험
- 질문 2) 선정기준에 대한 평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 관련 논의

- 기준중위소득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 및 평가
- 중앙 및 지자체 현금성 급여와의 관계 논의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및 운영 실태 점검
  - 질문 3) 생계급여제도에 대한 평가
    - 생계급여(현금 급여) 수준의 적절성 평가
    - 보충급여원칙의 변경 방식 관련 논의
    - 청년가구 논쟁(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유지, 별도/보장가구 관련 논의)
  - 질문 4) 의료·주거·교육 및 장제·해산 급여에 대한 평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 논의
    - (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 및 기준임대료 수준 평가, 급여의 성격(목적) 재정립
    - (교육급여) 지급 대상 확대의 효과 및 바우처 방식 전환에 대한 현장 평가
    - (장제·해산급여) 지원 수준 및 운영 관련 논의
  - 질문 5) 전달체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리 운영 평가
    - 맞춤형 급여 전환 이후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 제도 관리 운영 측면에서의 보충성 원칙과 최저보장수준 달성 여부 점검

##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원칙에 대한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있습니다.
- : “최저생활보장”에서 최저생활보장 원칙과 보충성 원칙이 “자활을 돋는 것”에서 자립지원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 : 지난 25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위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왔다고 보시는지, 긍정적으로 보시면 그 이유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 제주시 노형동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주요 변경 사항

- 김대중 정부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가구별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로 함으로써 ‘자활사업으로 빈곤 해소’로 규정하고 있음.
- 노무현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으로 ‘빈곤해소와 자활 조성’으로 규정하여 사업을 이분화하였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통합급여(제6조 1항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에서 맞춤형급여 방식(제6조 1항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으로 전환하였음.

- 최저생활보장 원칙과 보충성 원칙
- 최저생활보장 원칙과 보충성 원칙은 국가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일반인과 소득역전 현상이 일부 발생되고 있는바 새로운 산출방식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인지능력이 낮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복지급여의 구성 항목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사용할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일정 정도 지도 및 관리할 수 있는 표준안 등이 필요함.

### ○ 자립지원의 원칙

- 기초법에 자활과 자립의 정의는 없으며 사전적 의미로 자활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이며 자립은 “남에게 예속 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섭”으로 되어 있음.
-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립지원의 원칙’은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으로 되어 있음.
- 현장에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통지 후 3개월 동안 버티고 이후 취업준비, 근로소득 발생 등을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대해 담당자 및 관련 상담사 등이 조사를 해야 하나 1회 방문 등으로는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아울러 인력 및 시간의 부족으로 전화 상담을 주로 하는 상황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힘듦.

- 따라서 기초법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수급자는 자활을 하기보다는 편법, 지침의 허술한 점을 통해 생계급여를 고정 소득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이러한 현장을 고려할 때 기초법은 ‘자활을 돋는다’는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사료됨.

#### ○ 새로운 법 제정 필요

- 기초법은 ‘정부의 수혜’의 생활보호법에서 ‘국민의 자립’ 이후 ‘국민의 권리’로 변화되었고 2014년까지 이어온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급여(개별급여)’로 선정기준 및 복지급여 내용이 변경되었음.
- 현재 필요한 논의는 기초법 제1조 목적에 있는 기초법의 대상자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자활’을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만약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경우 새로운 대상자 유형을 만들고 ‘자활’이 아닌 그들이 지향해야 할 목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12년 기초법이 정책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에 소득역전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지난 윤석열 정부는 저비용 높은 홍보효과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 기준을 낮추는 무분별한 복지지원 시책으로 소득역전이 이루어졌다 는 일부 학계의 발표가 있었음.
- 정부가 바뀌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 정부 또한 빈곤자를 돌본다는 저비용 고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해 외면하는 상황임.
- 현재 일반인과 갈등이 많은 복지급여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총액인건비제도’처럼 수급자 각 대상에게 ‘총액복지 급여(가칭)’제도를 통한 급여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비급여를 점차 축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금액을 당사자와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적정 급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지금과 같은 기조로 기초법이 유지된다면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자활’이라는 대상자와 목적에 대해 정서상 생각하는 부분과 실질적인 현장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사회적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바 미래를 위해서도 현재기초법을 대상은 노동자와 비노동자, 목적은 보장과 노동자 등으로 이분화하거나 또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광진구 종곡1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중 자립지원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함.
  - 자활수급자의 수요와 자활 공급의 불균형으로 자활수요 미충족
  -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경험이 일반 시장으로의 연계 부족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최저생활보장 원칙 제도적 확립 및 보충성 원칙의 실현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전에는 공공부조가 제한적 이었으나, 이 법 도입으로 법적 권리로서의 생계보장이 이루어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각종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확대 등으로 신청자격과 급여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

- 국가가 국민 삶의 마지막 보루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
  -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심사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음.

○ 자활지원 원칙의 진전

- 단순 급여지급에서 벗어나 자활근로, 자활사업, 맞춤형 자립 지원 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활지원 정책이 강화됨.
  - 다만, 현재 자활사업 유형이 저임금, 단순, 임시근로 위주로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한계 등

□ 서울시 성동구

○ 최저생활 보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생계 위기에 빠진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
- 생계가 정말 곤란할 때 제도의 지원을 받아 2차 위기로 추락하지 않고, 교육
- 급여 지원 받고 (재)취업하여 자활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일부 충실히 지켜옴.

○ 자활을 돋는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

- 수급자 중 일부는 복지혜택에 의존하게 되어, 오히려 노동시장 진입이나 자립의 동기가 약화('복지의 늪' 현상)
- 제도 지원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이혼 등 가족을 해체하고 취업을 하지 않는 사례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막지 못함.

- 근로유인책·자활지원 프로그램(자활근로 등)이 실제로는 실효성이 부족
- 진정한 자활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부족
  - 특히 청년들의 자활을 위한 질 높은 자활 프로그램 부족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근로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조건부과유예를 위해 서도 일정금액 이상 소득활동을 해야 함. 생계급여 보장유지를 위한 소득활동을 함과 동시에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로 중지되면,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함. 이는 보충성 원칙에도 부합하고 자립지원의 원칙에도 부합
-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지원하고 있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의무에 맞게 그에 맞는 보장을 유지하는 관점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보지는 않으며 탈수급과 근로, 자립이라는 취지에 적합
  - 다만, 자활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자활 이후 일반 근로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다시 수급자 신청과 자활을 번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민원인들조차도 이럴 거면 처음에 수급신청을 왜 하는 거냐고 묻기도 함.
  - 예1) 1인가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600,000원, 생계급여 165,400원 지급되나 근로능력 있어 자활 또는 소득활동 참여하는 경우, 생계급여 중지

□ 인천시 부평구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대상자들의 자립지원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함.
- 지원을 받은 수급자들은 탈수급을 통해 대상자들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대상자들이 늘어났음.
- 또한 수급자들 중 수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대상자가 다수이며, 한번 수급을 받은 사람들이 탈수급해도 다시 수급권자로 재진입하는 경우가 많음.

□ 경상남도 산청군

[긍정적 평가]

- 기초생활 사각지대의 지속적 해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에서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은 헌법 제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봄.
  -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전에는 기초생활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제외되었지만, 이후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았음. 그러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음에 해당되면 모든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맞춤형 급여체계 이전이나 이후에나 동일하였음.
  - 교육급여의 경우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생활이 어려운 더 많은 국민을 사회안전망으로 포용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실제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

급여는 2019년, 2021년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의견 많았음(출가한 딸과 사위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대부분이 맞벌이인 경우가 많은데, 소득·재산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 등).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하여 그동안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수급 빈곤층에 머물러 있던 실제 어려운 세대가 실질적인 보장을 받게 되었음(부양의무자 구비서류 지연 혹은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되지않아 서류를 받지 못해 신청을 못하고 있던 세대, 가족관계 해체세대, 실제 자녀가 아님에도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던 경우 등).

#### ○ 기초생활 보장수준이 점진적 현실화됨.

-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어 수급 세대수가 대폭 증가하여 제도의 양적 성장을 이뤄냈음. ‘해마다 역대 최대 인상’임.

〈표 4-4〉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기율(4인 가구 기준)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증가율	4.00%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6.42%	6.51%

#### [부정적 평가]

#### ○ 기초 의료급여 사각지대 잔존

- 기초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여전히 의료 보장을 받지 못함.
- 기초 의료급여수급자로 보장을 받지 못하면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수급자로는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함.

- 생계급여 보장수준이 해마다 역대 최대로 인상되고 있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다 혹은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공제 혹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자립지원의 원칙 긍정적 측면]

- ‘자활을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의 긍정적 측면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유지 및 자립을 지원해 주며, 근로소득공제 등 자활유인책 등으로 수급자 중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높음.
- 농촌지역 A군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의 대부분이 1인 가구이면서 도시지역에서의 실직으로 인한 귀촌, 정신적, 지적 어려움이 의심되는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여러 사회적 문제를 겪을 수 있음.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생각함.

[자립지원의 원칙 부정적 측면]

- 소득활동 조절로 수급권에 머물고 싶어 함.
- 수급자가 자활사업이 아닌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면 그만큼 소득도 높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를 하여도 수급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음. 자녀가 (대)학생이 있거나 하면 수급권에 머물기 위해서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자활사업이나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음.

- 개인별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및 지원 부족: 수급자의 건강 상태, 가구 특성, 근로 능력, 부채 문제 등 자활을 가로막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과 맞춤형 지원이 부족함. 획일적인 자활프로그램 참여 요구만으로는 실질적인 자립을 이끌어내기 힘들며, 다양한 자활사업단 발굴이 어려움.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혜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에 의한 복지급여 신청 및 지급이라는 근간하에 충실히 운영되어 옴. 시민과 행정청의 의식 부족 등은 있었지만 사회적 통념보다 성숙한 법적 제도적 근간하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며 우리사회 공동체에서 약자 보호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기준의 사회적 통념보다 상향하여 발전시켜 왔음.

#### □ 세종시 보람동

- 최저생활보장 원칙은 대체로 잘 지켜진 것 같으나, 자립지원 제도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 같음.
  - 예를 들어,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매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신청이 매우 저조함.
  - 2025년 8월 기준 보람동 생계·의료 수급 72가구 중 1가구 신청(희망저축계좌1)
- 소득이 적을수록 급여(생계·주거)를 많이 받는 보충성의 원칙으로 인해 근로의욕 저하
  - 탈수급 및 자립을 위해 노력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 제도 개선 필요

- 자활, 탈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긍정적인 사회 인식 개선과 홍보 필요

▣ 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원칙 중 보충성 원칙과 자립지원 원칙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일선에서 두 가지 원칙으로 인해 상충되는 경험이 있었다면 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 □ 제주시 노형동

#### ○ 조건제시유예자

- 수급자 가족은 부부 중심이며 자녀로는 초등학생 1명, 영아 1명을 두고 있음.
- 주 소득자(A)는 비장애인이며 부인(B)은 발달장애 2급으로 근로능력 없음.
- 특이사항은 초등학생 자녀는 할머니가 양육하고 있음.
- 3년 전 A는 20대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소득은 250~350 만원이었음.
- A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았으며 그때 나온 내용 중 하나가 조건제시유예임.
- 담당자가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으로 조건제시유예를 권유하였고 A는 90만원 정도의 소득에 맞춰 편의점 알바를 다님.
- 이러한 경우 근로소득,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를 합산해 보니 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 각종 감면제도(일반인과 집세 차액, 통신요금 등)와 현물성 지원(지역사회 및 단체 지원)을 감안하면 월 30~50만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A는 수급자가 된 후 조건제시유예에 대해 더 알아보았고 3년 동안 ‘취업준비생’과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을 변경하며 지금껏 수급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급자에서 중지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A는 3년 전과 달리 근로 욕구가 사라졌으며 B와 함께 하루의 대부분을 핸드폰 게임 등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또한 사행성 비용에 많은 부분 사용하고 있음.
- 부채가 20백만원 정도 있어서 확인한 결과 핸드폰 게임 등을 하면서 통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두 사람의 통신비(통신기기 및 이용료+대출금 상환)로만 12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음.

### ○ 상충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수급자 초기에 가졌던 자활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수급자를 유지하면서 소득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 자활사업에 조건제시유예가 광범위하고 지도, 감독 및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은 미약하며 현장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 상황을 볼 때 복지 담당자를 통해 수급자가 자활하겠다는 의지를 세우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현실임.

###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 근로능력 및 근로의욕이 있는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 유지를 위해

## 24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형태 선호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는 미지원이어도 기초생활보장 부가급여 등 기타서비스를 선호하여 근로의욕이 저하됨.

####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 (사례) A씨(45세, 남성)는 실직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최저생계에서 부족한 부분만 생계급여로 지원받고 있음. 한편 자립지원의 원칙에 따라 A씨는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자활근로사업 또는 소득 활동 참여가 의무화됨.

##### ○ (상충 예시 1) 급여 삭감 우려로 자립의지 저하

- A씨가 자활사업 등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삭감됨. A씨는 자립하기 위해 근로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결국 보장급여가 줄어들 뿐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게 됨.
- 자립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 인센티브가 되지 못해 자립지원 원칙이 약화됨.

##### ○ (상충 예시 2) 일시적 소득 증가로 급여 중단

- A씨가 만약 일용직을 구해 단기간에 소득이 크게 생겼을 때 (선정기준선 초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단됨. 얼마 지나지 않아 일용직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반복됨.

□ 서울시 성동구

- 일자리를 구했으나, 의료급여가 탈락될 위기에 처하자 일자리를 포기함.
- 또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의 금액 만큼만 소득 활동함.
- 보충성 원칙에 따라 급여를 줄여야 하나, 자립지원 원칙에는 반해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 복지 의존이 심해짐.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지출기반으로 산출되는 경우, 가계마다 지출되는 부분을 공공부조로 모두 보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타 제도나 기관을 통해서 요금 감면, 부채탕감, 회생, 의료비 지급 등 지출요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보충성원칙에 대한 소득지원제도가 적절

□ 인천시 부평구청

-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일부만 생계비를 지원받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생계비를 지원받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받은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향이 있으며, 자립을 통해 탈수급하기보다는 수급을 유지하거나 재진입하는 경우가 많음.
- 오히려, 수급을 유지하려고 일정한 금액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만65세가 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완전한 수급으로 진입 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론적으론 보충성과 자립지원은 배타적이지만, 현실은 보충성이 자립지원을 방해하는 요소로 적용될 수 있음.

□ 경상남도 산청군

- 자활사업 참여보다는 소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일노동(농업 등)을 하는 사례
  - 3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는 경우(세대주<40대>)는 근로활동 가능, 배우자 등록장애인, 자녀 학생) 3가지 유형 중 본인 의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음.
    - 사례1) 자활사업 시장진입형에 종사하면 150만원의 소득이 있고(30% 소득공제), 생계급여는 55만원 정도 받음(3인기준 생계급여 160만원).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해야 함. 총 205만원의 실제 소득이 있음.
    - 사례2) 자활사업에 일하지 않고, 91만원의 소득신고서(30% 소득공제)를 제출하고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 이웃집 일일노동(딸기 따기, 곶감깎기, 산나물 채취 등)을 하면서 생활하는 경우 생계급여 96만원과 일일노동으로 150~250 만원 정도 받음. 일하는 시간은 자유로움. 실제 소득은 생계급여 96만원과 일일노동 150~250만원이므로 246~346만 원 정도 됨(이 사례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지만 수급권자들이 이런 유형으로 노력(?)하며, 실제 이런 사례 다수 있음).
    - 사례3) 91만원(30% 소득공제)의 소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 96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음.
- 자활사업단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보다 자유롭게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많으며, 일거리가 많은 지역은 소득신고서만 제출하고 1개월에 며칠만 일해도 되므로 반짝 일하고 길게 쉬는 경우도 있음.
- 일거리가 많지 않은 지역이거나 몸이 불편하지만 근로능력 판정이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은 자활능력 배양보다는 근로기회 제공과 생계 유지 목적이 더 우세한 것 같음.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두 단어 자체는 배타적이지만, 적용하는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아닌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보충성의 원칙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최저생계가 확보 되지 않을 때 부족한 만큼만 지원하는 것임.
- 자립의 원칙은 자립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부양 의무자 등) 역량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함.
- 전국민이 생계~교육급여의 대상이라면 배타적인 보충성의 원칙과 자립지원의 원칙이 혼용되는 것이겠지만, 최저생계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저생계를 달성하고, 자립을 위한 역량이 갖춰진(신체, 정신건강 등) 사람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여 상충하지 않음.
- 단, 자활참여 의무가 부과된 수급자가 불성실한 태도로 자활 사업을 맴돌며 기초수급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고 다양한 조치가 필요함.

#### □ 세종시 보람동

○ 수급자 중 본인이 얼마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 탈락되는지 문의가 많음.

- 대상자의 현재 소득인정액과 급여기준 등을 설명하면 근로 활동을 포기함.
- 소득이 발생할수록 급여액이 감소하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킴.
- 저소득 수급가구에 안주하는 악순환 발생
  - 예) 2024년까지 근로활동으로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40세 장애인이 퇴직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현재 생계·주거급여, 장애수당으로 매월 약 77만원 수령, 앞으로 일하지 않겠다고 함.

## 2. 선정기준에 대한 평가

■ 2015년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전 최저생계비가 지출을 기반으로 산출된 것이라면,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기준중위소득과 관련하여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 첫째, 공공부조 혹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출보전 제도이냐 아니면 소득지원 제도이냐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제주시 노형동

○ 지출보전

- 소득의 정의는 ‘경제 주체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노동·토지·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함.

- 수급자는 위 조건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음.

□ 서울시 광진구 종곡1동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지출보전 및 소득지원 병행

- 지출보전 : 지방세, 공과금 면제 및 공공요금 감면, 문화생활 지원
- 소득지원 :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충급여 지원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현행 제도방향(기준중위소득 기반)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국민 전체의 소득 분포를 바탕으로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지원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구의 상황을 단순·객관화하기가 용이함. 개인·가구별 다양한 지출 특성 반영에는 한계가 있음.

□ 서울시 성동구

○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원칙을 보면 현금·현물 등의 급여를 통해 소득수준을 일정 기준까지 보완해 주는 소득지원 제도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함.

○ 지출보전도 하고 소득지원도 하는 제도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을 조건을 혼합하여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 모색 필요

□ 인천시 부평구청

- 공공부조는 소득지원 제도라고 생각함.
- 지출보전은 가족의 환경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지출 범위는 다양함.
- 보편적으로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서 이를 경제활동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소득을 보충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여 소득지원 제도라고 생각함.

□ 경상남도 산청군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출보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으면서 그 수단을 ‘소득지원’ 방식으로 채택된 제도임.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가 최저생계비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방식으로 개편된 것은 빈곤을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음.
- 최저생계비 방식은 전문가들이 식료품, 주거비, 의복비 등 최저 생활에 필요한 품목과 비용을 계산하여 빈곤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경제적 발전에 따른 상대적 생활 수준의 향상을 반영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음. 기준중위소득은 사회전체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빈곤선도 올라가므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 통합에도 기여함.
- 맞춤형급여 이전의 최저생계비 지출보전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중심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이는 질병, 노령, 장애 등 개인의 특성이나 생애주기별 지출이 반영되어야 함.

- 맞춤형급여 이후의 기준중위소득의 소득 기반 측면에서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보장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소득의 형태로 지원하여 수급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를 지출 보전의 측면에서 보면,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지출이 평균보다 많으나 수급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므로 다양한 사회현상, 가족의 개념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등 가구유형에 맞는 생계급여 지원책이 필요 하며, 무엇보다 최저생계비이든 기준중위소득이든 생계급여액이 해당 수급자에게 적정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봄. 생계급여액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 농촌에서는 그래도 적정하다는 의견 등 다양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지원 기준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보전이든 소득지원이든 지원 기준에 부족한 차액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함.

□ 세종시 보람동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소득 지원제도라고 생각함.
  -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소득을 지원하여 점차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둘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전 정부와 현 정부 들어 기준증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곤층 지원제도로서 기준증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 또한 기준증위소득 기반으로 역시 급여별 선정기준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43%에서 48%로 조정되었으며, 이후 생계급여는 35%로 주거급여는 5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일선에서 보시기에 급여별 선정기준은 어느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제주시 노형동

○ 총액복지급여(가칭) 마련 필요

- 2014년 기초법이 맞춤형급여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면서 기초법의 ‘어려운 사람’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
- 생활보호법 당시에는 생계급여안에 구성요소(식비, 의류비, 주거비 등)를 다 나누어 산출하고 이를 수급자에게 인지시키며 지급하였으나 현재 생계급여는 구성요소가 없고, 주거급여 또한 구성요소가 없는바 선정기준을 정하기 전에 우선 구성요소를 만들고 산출기초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이는 지금과 같은 중위소득, 평균소득을 통한 급여산출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수급자의 현금, 현물과 공제 등을 모두 합한 ‘총액복지급여(가칭)’ 방식을 고심할 필요가 있음.
- 급여의 구성요소, 산출내역을 통한 총액복지급여(가칭)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 및 검증받아야 함.

- 또한 현재 의료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가 산출내역과 급여의 총합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급여만을 말하는 지급기준으로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 당장 내년부터 소득역전 현상이 눈에 띄게 드러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광진구 종곡1동

○ 매년 개별급여별 선정기준의 비율 상향 불필요

-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되면 개별급여의 선정기준도 비례하여 상향되므로 별도로 기준 자체를 상향할 필요가 없음.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사회적 격차 완화 효과

- 기준중위소득이 상승하면, 각종 공공부조의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보호망 안에 들어올 수 있음.
- 최근 생활물가, 주거비, 교육비 등 주요 소비항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급여 수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해야 복지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

○ 급여별 선정기준은 단계적 상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 생계급여의 경우, 단계적 상향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최저 생계비 실태조사 결과보다 부족하다는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있음. 35% 수준은 상대적 빈곤선 통상 중위소득 50%와 비교하면 충분하지 않으나, 현실상 점진적 상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음.

- 주거급여의 경우(48%→ 50%), 주거비 폭등 현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현실화가 이루어진 수치라고 볼 수 있음. 다만, 대도시, 수도권 저소득층의 실제 임차료 등 주거실태를 보면 적정성을 조금 더 높아야 한다는 현장(대상자 등)의 요구가 있음.

□ 서울시 성동구

- 기준중위소득의 급격한 인상은 예산 부담, 형평성, 근로의욕 저하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물가, 경제지수, 법감정,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를 조정할 필요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기준중위소득이 빠르게 오르고, 급여 선정 기준도 오르고 있어 수급자가 정말 많아지고 있음. 소득 기준선을 늘려서 복지제도 내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다만, 일부 수급자는 제도를 이용해 소득에 맞지 않는 월세 계약을 하고, 주거급여액으로 이를 보충하는 등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 인천시 부평구청

- 급여별 선정기준이 높아지면 대상자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탈수급 하려는 대상자 수는 적어짐.

- 선정기준이 높아서 오히려,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상자의 수가 적어짐으로 빈곤의 악순환,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공공부조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대상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 □ 경상남도 산청군

- 기준중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발전 수준을 빈곤선에 반영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이 큰 반면, 급격한 재정 부담과 정책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음.
-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보장수준이 현실화되어 더 많은 빈곤층이 제도에 편입될 가능성이 많으며, 생계급여액의 실질적인 증가로 이어져 수급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 물가 및 생활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제도의 현실성과 수급자에 대한 체감복지 수준이 증가할 것임.
-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 및 지방재정 악화가 크게 우려됨. 그러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거나 다른 복지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교육급여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50%로 조정된다면 차상위계층과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며, 50% 바로 위의 기준선에 있어 그 혜택을 받지못하는 차상위계층 및 수급권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음. 그들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으므로 인해 빈곤선 이내에 들어오기 위해 ‘빈곤의 뒷’에 놓여질 가능성 많음.

○ 급여별 적정 선정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

- 현재의 선정기준은 맞춤형급여 체계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지만 질병, 고령, 장애인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자녀성장 시기에 따라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며 여전히 ‘최저생활’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음.
- 생계급여의 경우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실과 맞지 않는 식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전기세 등 공과금의 대폭 증가로 필수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생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함.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비용도 고려해야 함.
-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인세대의 경우 생계급여보다 만성 질환 등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더 원함. 기초생활 의료급여에 포함되지 못하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보장받고 싶어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오히려 선정기준이 더 엄격한 설정임. 기초 의료급여에서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수급권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주거급여비는 최대치로 높여야 함.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 대비 지출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이며 기준임대료 또한 현실 임차료와의 갭이 가장 큰 항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선정기준뿐만 아니라 기준 임대료도 대폭 상향조정되어야 함.
-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기준증정소득 최대치로 높여야

하며 저소득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원 항목을 대폭 확대하여야 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근로소득자간 소득편차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가 있음.
- 그러나 산업구조 등의 사유로 소득격차 상승으로 인해 중위소득 상의 위상에 따른 차이보다 실소득격차가 더 크므로 중위소득을 연차별로 상향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세종시 보람동

- 중위소득이 매년 오르고, 그에 따른 선정기준도 상향되면서 수급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우려됨.
  - 다수에게 분산 지원보다, 실제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소수에게 집중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지 개인적인 생각임.

■ 소득평가액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에서 각종 현금성급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기회소득, 기타 도의 농어민 기본소득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늘어나는 현금성 급여를 소득평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으로 보고 소득평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혹시 명확한 적용원칙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주시 노형동

○ 총액복지급여(가칭) 마련 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총액복지급여(가칭)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볼 수 있음.
- 복지급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에 '빈곤자는 많은 지원을 받아도 빈곤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정서적 생각이 무분별한 각종 현금지원제도를 양산하고 있음.
- 복지급여의 산출내역과 총액이 정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표권이 있는 중산층 등을 생각하여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현금급여 지원 정책 및 시책에 좀 더 신중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지자체 현금성 급여는 소득평가액에서 공제 필요

- 지자체 현금성 급여는 지원대상자의 선별적인 상황에 따른 지원이므로 공제
- 다만, 지자체 현금성 급여의 공적자료 회신 한계로 공제반영의 어려움 발생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현금지원 소득은 소득평가액 포함이 공정

- 복지의 형평성 확보나,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복지대상자의 측면에서는 소득상승의 효과를 체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나, 지자체에서의 복지제도 남용을 예방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기초연금의 경우,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부조 등에서 급여가 삭감되거나 탈락하는 경우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 서울시 성동구

- 형평성 측면에서 소득공제가 맞다고 판단됨.
- 현금성 급여 소득 미반영 시 이중지원, 집중지원, 형평성 위배 등의 우려가 있음.
- 다만, 이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함. 공적·금융조회로 회신 되지 않는 소득의 경우 수작업으로 관리해야 함.
-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를 미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장애 등으로 인한 지출상황이 많은 상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인천시 부평구청

- 소득평가액으로 평가할지? 공제할지?는 그 급여로 인해 세금납부 여부를 확인하면 됨.
- 소득은 세금을 납부하며, 보편적인 복지 급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경상남도 산청군

- 소득 평가액에서 공제해야 된다고 생각함.
  - 각 지자체마다 각종 현금수당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한다면 각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하는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수급자에게 오히려 혼란과 상대적 박탈감만 상승 시켜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 소득 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면 보충성 원칙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삭감하게 되어 오히려 줬다가 뺏는 생계급여가 될 것이며, 중앙정부의 생계급여 예산이 감소 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됨.
    - 기초생활보장 지침에서는 지자체 지원유형 중 조례에 근거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은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소득공제에도 포함하지 않으며, 반면 조례 비(非)근거 복지 대상자 추가지원에 있어서는 실제소득에 포함하고 소득공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전국민 대상 지원 일회성 사업 ⇒ 소득반영 제외
- 그 외 사업 ⇒ 소득 반영

□ 세종시 보람동

- 현재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대로 비정기적 또는 일시적 급여인 경우 소득에서 제외하고, 일정기간 이상 정기적 소득의 경우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각종 현금성 급여의 목적 요인을 보장하면서도, 반복적인 소득·재산조사로 인해 낭비되는 행정력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

■ 소득인정액제도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맞춤형 급여 이전 통합 급여 속에서는 자가의 경우 귀속임대료 개념에 따라 주거비를 지출하지 않아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상계하였습니다.

- : 맞춤형 급여 전환 이후 별도의 주거급여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자가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국민이나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택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개념에 대해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이 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면서 다른 복지 제도에서도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소득인정액 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더불어 자동차 기준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제주시 노형동

##### ○ 재산의 국가 귀속 필요

- 소득인정액에 대한 수급자의 불만은 수급자가 된 이후 국가의 지원을 받았을 때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있음.
- 각종 급여에 대해 '①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소비한 후, ② 국가의 급여를 사용하고, ③ 사후 남겨진 유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급여지원 및 귀속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수급자가 힘들다 하는 것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경우 타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다는데 문제제기를 하는바 재산을 소유한 자는 소득인정액을 현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면 모든 수급자의 현금급여가 같으므로 불만이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어 서울에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소득이 없다며 수급자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사후 재산을 통해 정산을 받으면 됨.
- 이 제도는 수급권자가 수급신청을 할 당시에 판단하여 자신의 소득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정책이 부재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 제도는 어떤 기준을 삼아도 수급권자와 일반인을 만족시킬 수 없음.

####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소득인정액 기준이 개별급여별 공제내용이 상이하여 너무 복잡함.
  - 동일 지원대상자이더라도 개별급여별 소득인정액 상이
  - 개별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르므로 공제내용과 반영 비율의 단순화 필요
  - 자동차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 동차 중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 필요 여부 등 객관적 판단 기준이 불명확함.

####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자가(내 집 거주)의 귀속임대료 산정 문제
  - 일반 국민, 심지어 복지수급자조차 '내 집에 살아도 소득이 발생

한다'는 개념(귀속임대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제도의 투명성과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음. 결과적으로 일부 자가 보유 저소득층 수급자는 상대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음.

- 실제로 자가가 있다고 해도 주거비 부담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질적 생활 여건 개선과는 무관할 수 있음.

#### ○ 소득인정액 제도의 확장성 문제

-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초생활보장 제도뿐 아니라 타 복지사업(기초연금, 의료급여 등)에도 광범위하게 기준으로 활용함.
- 복잡하고 추상적인 소득인정 공식은 대상자의 이해도와 제도 신뢰도를 저하하기도 하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쉽게 계산해 내기가 어려움.
- 소득인정액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정확하게 선별'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 간소화하고 수급권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희망함.
- 또한 타 제도와의 연계는 기준 산식의 단순화, 지역적 특성 반영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 자동차 기준에 대한 평가

- 차량이 필수인 농어촌이나, 차량 보유가 생계유지와 직접 연결된 경우(자영업, 생계형 운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근로 유인이 떨어짐.
- 자동차를 단순 자산으로 보지 않고 '생계 필수성이동권 보장' 관점에서 유연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성동구

- 소득인정액 제도 자체는 잘 운영되고 있으나, 복지제도별로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 달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
- 과도한 재산 보유를 통한 복지제도의 악용 방지 및 복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동차 기준은 필요함.
  - 다만, 자동차 명의를 개인이 아닌 사업체로 돌려 놓는 경우, 반영이 어려움.
  - 가구원 6인 이상 등의 차량 기준이 같은 차종이라도 승합과 승용에 따라 기준 적용이 달라짐. 카니발의 경우, 승합·비영업 용의 경우 해당 내용 적용이 어려움.
  - 자동차는 경우에 따라서 국민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됨.
  - 소득반영 대상에 언급되지 않은 소득도 모두 찾아서 소득에 반영하여 혼란 없게 정비 필요(예: 기초연금과 생계수급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기초연금은 소득에 반영되는데 생계 급여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음)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주택은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함.
- 다른 복지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음.
-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평가 기준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자동차 구매에 대한 선택지가 좁지 않고, 질병 등의 사유로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 심의로 제외할 수 있어 협행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 인천시 부평구청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람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인의 재산을 매도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에 소득 인정액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유용함.
- 자동차도 매도하여 개인의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재산으로 반영해야 함.

□ 경상남도 산청군

- 소득인정액 기준은 세부 항목에서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자가에 대한 소득 산정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동차 기준은 수급 탈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민원이 많은 실정임.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복잡하고 현실과 맞지 않으며, 수급자 대부분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 보장에서 탈락한 수급권자들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큰 민원을 야기함. 수급권자 본인이 왜? 보장에서 탈락했는지를 질문 하여도, 업무담당자조차도 탈락된 사유를 한 마디로 안내하지 못하고 각종 공제, 환산율 등을 길게 안내해야되며, 수급권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함. 심지어 복지직 이 외의 공무원들도 이해하지 못함.
  - 아무런 소득이 없는 노인가구가 자가주택으로 인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로 인하여 생계급여가 탈락되거나 수급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House Poor’ 문제가 발생함.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House Poor’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음.

- 거주 목적의 1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산정에서 Cut-off 방식을 취하거나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함.

#### ○ 자동차 기준에 대한 평가

- 농촌에서의 자동차 소유여부는 필수 이동수단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여전히 자동차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임.
- 교통수단이 매우 불편한 농어촌의 고령자인 경우 자동차가 없을 경우 사회적 고립감의 우려가 많음. 심지어 목욕탕, 영화관 등을 이용시에도 거주지와 거리가 멀어 차량없이는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다수 있음.
- 수급자이면서 자동차를 구입하여 환산율이 100%에 포함되면 자동차를 다시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며, 탈락을 우려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음.
-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기보다 가액을 모두 재산으로만 산정해야 된다고 봄.
  -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부채가 많으면 생계급여는 제외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급여는 책정될 경우도 있음.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에 있어서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만 산정하기 때문에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일반재산이 12억을 초과하면 제외됨.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경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등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임(주거용재산: 월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재산: 월2.08%).
- 사례) 부양의무자가 12억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주택에 대한 부채가 8억 정도 있음. 의료급여에서는 부채를 산정하기 때문에 4억에 대해서만 재산으로 산정함. 그러므로 부양의무자의 부채가 많으면 의료급여에는 해당됨.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가구원수별로 적용금액을 달리하고 있음. 소득평가액은 대상자의 연령별, 장애별 상황 등을 고려한 공제항목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다양한 사유로 인한 공제와 재산에 따른 요율, 부채 등을 적용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소득 인정액은 개인별, 가구별 현황을 고려하고 있으며 매년 여러사회여건을 고려하여 개선하여 여타 지원기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사료됨.

#### □ 세종시 보람동

- 자동차 기준을 포함하여 현재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최근 상당수의 수급자 상담사례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보임.
  - 예를 들어, 부모(30대)와 자녀 2인(미취학)으로 구성된 4인 가족, 건강상태 양호하나 무직(자발적 비취업), 공시지가 5억 아파트 소유, 부채 4억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가 최근 많아졌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에 맞게 기준을 정비하여 무분별한 수급자 양산과 부정 수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3. 생계급여제도에 대한 평가

■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에 보충성 원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35%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조정과 더불어 생계급여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주거 급여와 각종 수당 포함시 1인 가구 기준 80 ~ 100만원). 현재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의 보충급여 원칙을 변경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예, 차등급여방식(소득 및 재산수준별 구간설정), 정액 급여방식 등)

#### □ 제주시 노형동

##### ○ 총액복지급여(가칭) 마련 필요(p.257 답변과 같음)

- 2014년 기초법이 맞춤형급여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면서 기초법의 ‘어려운 사람’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
- 생활보호법 당시에는 생계급여안에 구성요소(식비, 의류비, 주거비 등)를 다 나누어 산출하고 이를 수급자에게 인지시키며 지급하였으나 현재 생계급여는 구성요소가 없고, 주거급여 또한 구성요소가 없는바 선정기준을 정하기 전에 우선 구성

요소를 만들고 산출기초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이는 지금과 같은 중위소득, 평균소득을 통한 급여산출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수급자의 현금, 현물과 공제 등을 모두 합한 ‘총액복지급여(가칭)’ 방식을 고심할 필요가 있음.
- 급여의 구성요소, 산출내역을 통한 총액복지급여(가칭)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 및 검증받아야 함.
- 또한 현재 의료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가 산출내역과 급여의 총합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급여만을 말하는 지급기준으로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 당장 내년부터 소득역전 현상이 눈에 띄게 드러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광진구 종곡1동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 수준 변경 필요

- 근로능력자라도 근로소득에 따른 보충급여 원칙으로 조금 일하고 적게 벼는 대상자에게 더 많은 생계비를 지원하므로 근로의욕이 저하됨.
- 근로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는 보충급여원칙이 아닌 정액급여 방식으로 전환
- 주거급여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은 지원 불필요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 수준 적정

- 기준 대비 지원범위 및 금액 증가 : 최근 물가상승,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 반영

- 사각지대나 실제 더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소득 환산 등).

○ 현재의 보충급여(맞춤형 지원) 방식이 효과적

- 차등급여방식은 행정상 복잡하고, 구간 경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정액급여방식은 복지 예산 부담이 급증하고, 진짜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부족하게 지원될 수 있음.

□ 서울시 성동구

- 서울의 경우, 기초생계·주거급여 최대 수령액 1,117,450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됨.
- 급여 수준이 높을 경우, 복지의존도를 높이고 자립 동기 저하와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어 보충급여 방식이 맞다고 생각함.
- 기초연금 등 보완급여가 있으므로 현재 현금생계급여수준이 적정함.
- 보충급여원칙에서도 허용하는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 진단서 조작, 소득 은닉 등 확인곤란한 방법으로 전액을 지원요청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있으며, 정부에서도 여러 특례제도를 통해서 별도로 보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 있으므로 보충성원칙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정액급여방식으로 전환하여 상호간 불필요한 노력을 절약 함도 적절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보충급여 원칙과 더불어, 근로요건이나 자립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처럼 지원금 매칭 또는 취업 및 근로유지 조건 이행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인천시 부평구청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 수준은 높다고 생각함.
- 급여가 높기에 탈수급할 이유가 적어지며, 차상위층의 경제활동 의욕 저조와 수급유인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차등급여방식으로 선택하며 재산의 소득인정액 금액을 높이고, 현금급여 수준을 낮추어 탈수급을 유도해야 함.

□ 경상남도 산청군

- 생계급여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거급여 지출에 있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함.
  - 물가상승률, 질병, 노인, 장애인 등 가구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생계비 지원은 불안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조사 참여, 여가활동,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생계급여비 지원이 필요함.
- 차등급여방식과 정액급여방식의 혼합형 방식이 적절함.
  - 정액급여방식은 중증장애인, 노인가구 등 특수한 가구유형인 경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심플할 뿐 아니라 수급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 그 외의 수급자에게는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급여 감소율을 달리하는 구간 설정을 통해 급여를 산정하는 차등급여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일할수록 손해라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 수준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급여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급여 방식이 좋으나 행정처리는 복잡해짐.
- 일해서 벼는 소득이 급여 산감액보다 많아지므로, 이로 인해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소득을 늘리려는 동기가 부여되어 근로의욕이 강화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급여는 사회보험과 달리 수령자의 기여금 없이 지원되는 금액이므로 수령자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금액을 희망하고, 운영자인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이상적인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그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들의 인상요구는 있지만, 그 정도가 심각 하여 부정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 점점 심각해지는 소득 양극화는 현재의 기술발전 추세에 따르면 보다 심각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특정계층의 이익 강화는 그동안 사회 발전을 위한 전 시민의 기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 시민의 권리로서 복지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납세와 재분배에 대한 부분 강화를 합리적으로 선도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아동수당, 학생수당, 청년 수당과 같은 사회수당 강화와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국민의 실질소득을 향상하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국민 기초생활 제도를 적용하여 기초수급권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 세종시 보람동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 수준은 적지 않다고 생각함.
  - 생계급여액을 늘리는 것보다 수급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 현 지침상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 유인에는 부족하다고 봄.
  - 소득공제율을 높이거나 공제액을 정액(예, 100만원까지는 소득에서 공제)으로 하여 근로를 통한 탈수급 유도가 필요

#### ■ 청년가구 논쟁

- : 첫째,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이후 현재 소득 1.3억, 재산 12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기준을 폐지하자는 의견과 부자자녀의 별도 가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둘째, 2021년 인권위원회에서는 생계급여에서 적용중인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는 조항을 개정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 : 복지부도 2025년 지침을 변경하여 “①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기준

증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③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④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혼 자녀의 연령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조정한다면 어느 연령대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 제주시 노형동

○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 정책의 효과 중 하나는 사회기조를 만드는 것인데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회풍토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는바 기준은 사실상 폐지와 같은 수준으로 높여도 좋으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회기조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미혼자녀 나이 기준

- 기초법의 목적은 어려운 생활에서 자활을 돋는 것인바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주거 및 생활이 분리된다면 자활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 고등학교 재학인 경우 19세 이하(재학인 경우 졸업시까지), 대학교 재학인 경우 24세 이하(재학인 경우 졸업시까지)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에는 그를 포함한 가족을 자활할 수 있도록 돋는다는 원칙보다는 청소년과 청년의 자활을 돋는다는 새로운 원칙을 마련해야 함.

- 즉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에는 자활의 대상이 가족이 아니라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들의 가족보다 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함.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유지 필요

- 무분별한 별도가구 신청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
- 공적급여의 선별지원 형평성 문제 발생

○ 미혼자녀 연령조정 : 현 30세 미만에서 민법에서 성인의 나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할 필요

- 민법상 성인나이로 실제 독립가구 구성가능(단 세부조건은 필요함)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찬성

- 취약계층 보호 강화 필요
- 가족관계가 실질적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양 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계속 탈락할 수 있음.
- 사회통념의 변화로, 현대사회에서는 1인 가구, 가구 내 분리 현상 등 부양의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일반적임.
- 악용 가능성이 높은 극소수의 고액 자산, 소득 부양의무자에 한해 엄격히 심사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가구는 완전 폐지에 가까운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봄.

○ 미혼 자녀의 동일가구 기준(30세 미만 조항)에 대한 조정 필요

- 현재는 만 24~30세까지 청년의 자립이 지연되는 경향이나, 실제 주거분리 필요성이 점점 커짐. 회일적 연령 기준은 비합리적이며, 다양한 청년 현실(금융, 취업형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음. 또한 부모와 사실상 단절,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 가구의 개인/주거빈곤 심각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만 24세' 기준으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 만 24세는 학업종료와 사회진출 시기로, 복지 현장에서도 자립이 시작되는 시점임.
- 만 24세 미만이라도 실제 생계분리, 부모와의 단절, 주거 및 소득 독립 등 현실적 자립 필요성이 있다면 예외인정 폭 확대가 필요함.

□ 서울시 성동구

○ 미혼 자녀의 연령 기준으로 가구 분리를 결정하는 것에는 반대함.

- 다만, 수급자 선정 시 단순 소득·재산만이 아니라 자활 및 취업 연계 등 실질적 자립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취업 시 촉진수당이나 추가수당 지급 등 자립을 유도하는 방안 필요

○ 현 제도는 소득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 보충성 원칙이 폐지 또는 변경되면 부양의무자제도도 폐지 또는 변경 필요

○ 고소득 고재산 근거기준이 모호하므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완전폐지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미혼자녀 연령기준은 사회진출하는 연령의 남녀차이와 국가의 청년사업 확대 등을 감안하여 만 25세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소득활동을 하는 자녀의 경우, 자립지원보장가구로 별도분리해서 부양의무자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30세 미만 소득이 있는 미혼자녀를 분리하는 것이 실제 민원인과 상담 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는 것 같음.

-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장가구(30세 미만) 기준 또는 별도 가구(30세 이상) 기준에도 30세 미만/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있음.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극심한 경우에는 외상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보장가구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30세라는 연령이 넘거나 미만 이어야 하고, 소득조건까지 동반되어야 하는 상황임.

-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갖고 자립을 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부모와 함께 지내며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렇지 않으면 30세 이상이 되어야지 별도가구로 보장이 될 수 있는 상황임.

□ 인천시 부평구청

○ 가족의 핵가족화, 가족 유대관계 변화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가 미미해짐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필요함.

- 동일가구로 편입하는 자녀의 연령은 20세 이상이라고 생각함.  
20세 이상은 성인임으로 근로가 가능함.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 경상남도 산청군

-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후 향후 폐지에 대한 의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되는 것으로 2025년 변경되었지만, 부자 부모나 자녀를 두고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상, 혹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직까지는 부자 부모(자녀)를 둔 자녀(부모)는 부모(자녀)가 먼저 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강한 실정임.
-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지원을 끊고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성이 있음. 반면 가족관계가 이미 해체되었거나 학대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의미가 없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족쇄로만 남겨져 있을 것임.

- 30세 미만 자녀에 대한 가구 분리가 필요함.

- 30세 미만 자녀는 주로 대학생, 휴학생, 졸업, 취업준비, 자격증 취득준비 등 구직활동 등을 위해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꾸리고 있음.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면

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부모의 소득이 중산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도시지역에서 높은 월세와 생활비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많음. 그러므로 가구분리가 필요함.

- 미혼자녀의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 25세 정도가 적정할 것임. 대학생 자녀의 경우 군 복무 제대 및 대학 졸업후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시기이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보편적인 연령이라고 할 수 있음.
- 학대, 가정불화 등으로 집을 나온 청년들이 저임금으로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고 청년복지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음.
-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제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 폐지를 지향해야 함.

#### □ 세종시 보람동

##### ○ 현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데에는 동의하나,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봄.
- 부양의무자를 통한 소득·재산 은닉 등으로 부정수급 발생이 우려됨.

##### ○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는 자녀 연령은 25세 미만이 적정하다고 생각함.

- 대학 졸업 및 병역의무 기간 등을 고려, 부모 세대와 독립하여

생활이 가능한 25세 미만이 적절해 보임.

-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자녀 범위와도 동일하며, 사회초년생과 부모가구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30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적정해 보임.

#### 4. 의료, 주거, 교육 및 장재 해산 급여에 대한 평가

■ 맞춤형 급여 전환 이후 현재 의료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혹은 폐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선은 내년부터 부양비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와 같은 단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제주시 노형동

○ 총액복지급여(가칭) 마련 필요

- 총액복지급여가 확정되지 않으면 의료급여로 인해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의료급여 및 복지급여 체계로는 긍정과 부정을 논할 수 없음.

□ 서울시 광진구 종곡1동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및 부양비 부과 유지 필요

- 의료급여는 초빈곤층에 대한 지원이어야 하며, 비의료급여

대상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은 긴급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등 보완 지원 활용이 가능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긍정적 측면

- 실질적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실제로는 지원이 절실한 만성질환자, 중증환자,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됨.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음.
- 수급자 선정 기준의 일관성 확보
- 생계급여 등과 기준을 맞춤으로써, 국민 눈높이, 행정 일원화, 불필요한 혼란 감소 등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이 증대

※ 의료급여 사용 남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 부정적 측면

- 국가 재정부담 증가
- 의료급여 수급자 수 증가 시 장기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압박이 커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고령화 진행 상황에서 의료비의 구조적 증가 요인이 됨.
- 가족부양 책임 약화
- 모든 부양의무를 국가가 떠맡는 구조가 되는 경우, 가족·개인의 자립 및 경제적 책임의식이 약화될 수 있음.

□ 서울시 성동구

○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보장하되, 반복적·과도한 진료

이용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심사, 횟수 제한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됨.

- 긍정) 성혼율 하락, 핵가족화 확대, 개인주의 만연 및 가족부양 의식 (책임감, 의무감) 점증적 소실 등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함이 적절
- 부정)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적 안정성 및 사회질서와 문화발전, 가족책임을 위하여 최소한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존치가 필요함.

####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서류를 받지 않고 있어 민원인이 보장신청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고 생각함. 의료급여신청을 주저 하는 이유도 부양의무자로부터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기 어렵거나, 단절은 아니지만 관계가 애매하게 남아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 서류를 제출하기가 번거롭다는 사유가 많음.
-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강화하여 의료급여 남용 또는 악용을 막되, 부양의무자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처리로 접근성을 높이면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 하지 않겠다’ 등의 사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 □ 인천시 부평구청

- 긍정적인 측면: 실제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는 대상자의 혜택 증가
- 부정적인 측면: 부모의 재산을 변경하여, 부정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가 실제로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지? 부정수급자들을 어떻게 방지(예방)할 수 있는지?의 기준/적용이 필요함.

□ 경상남도 산청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긍정적 측면]

-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 실제 도와주지 않으나 서류상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제외되었던 비수급 의료 빈곤층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과도한 의료비 부양부담 완화로 가족관계 회복

- 갑작스러운 혹은 만성질환은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까지도 심리적,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게 됨. 이로 인하여 가족관계 해체 세대로 인정받아 의료 지원을 수급 받는 경우도 있었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가족관계 해체 세대가 되지 않아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족관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예방적 의료복지 지원

-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의료비 부담이 덜어지므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으며, 질병이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입원비, 간병비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효과도 가져옴.

[부정적 측면이 있으나 이는 지자체별 ‘의료급여관리사’가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임.]

- 의료급여 예산의 급격한 국가 재정 증가
-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음에도 기초 의료급여제도에 의존하려는 경향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부양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 신규수급자,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등 사례관리, 상해요인조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등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국민의 기초생활에 대해 부모, 자녀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복지사회,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됨.
- 단, 이러한 변화는 사회구성원인 시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 어져야 함.
- 사회적으로 최약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최우선적인 복지 과제이지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는 미약한 가운데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지원의 폭을 집중하여 넓히는 것은 오히려 다수 시민의 반감을 살 수 있음.

□ 세종시 보람동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긍정적 측면
  - 현대사회에서 가족 간 부양의 의미는 예전에 비해 많이 퇴색됨.

- 가족의 형태와 유대성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부양의무자 폐지가 바람직
- 이혼, 방임, 학대, 고립, 은둔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용이
- 현 지침상 가족관계 해체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할 수 있으나, 해체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부정적 측면

- 수급자 혜택을 위해 부양의무자를 통한 소득·재산 은닉 등 부정수급 우려
- 습관적인 의료기관 방문,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막대한 재정 부담 발생

■ 지난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정률제”를 추진한 바가 있었으며, 수급자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를 없던 것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제주시 노형동

○ 총액복지급여(가칭) 마련 필요

- 시민단체의 불만 또한 총액복지급여(가칭)가 확정되지 않아 저소득계층이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

- 논쟁은 통계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각각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바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총액복지급여(가칭)를 우선 만들 수 있어야 함.

□ 서울시 광진구 종곡1동

○ 의료급여 정률제 찬성

- 단, 건강생활유지비 우선 사용 등으로 본인부담금 보전
-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 및 과다 진료 방지 가능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빈곤층 생명권 보장측면에서 도입 신중

- 과잉진료 방지 등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없는 이용’이 얼마나 줄어들지 불확실함.
- 부정수급,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서는 행정적, 사후적 관리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본인부담 증가로 일반화해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성동구

○ 의료급여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을 일부 완화하되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이용을 방지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발전적인 사회변화를 위하여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 관련하여 언론, 미디어,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정책개발에 기준이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음.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정률제는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됨. 당장의 생계도 급한 상황인데, 조금 아픈 것 같아 병원에 가느니, 아주 아플 때까지 병을 키우는 사람이 지금도 많음.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도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에 가지 않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신청하거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도 본인부담금이 큰 진료나 수술, 검사의 경우 하지 못하고 긴급지원이나 민간지원 또는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을 때 하는 사람들도 있음. 정률제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생계급여를 의료비로 많은 부분 지출할 수밖에 없고, 생계비를 증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의료급여 남용을 막기 위해 선택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급여일수 연장 등의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의료급여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의료쇼핑을 막고자 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정률제는 수급자, 특히 질환이 심하고 많거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봄.

□ 인천시 부평구청

- 의료급여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넓히기 위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의 변경이 필요함.
  - 필요에 따라, 부정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벌금 부가 증액 필요
- 병원 진료에 있어 무료라는 인식으로 과잉진료하는 경우가 많음.
- 오히려 건강보험가입자는 진료비 부담으로 진료가 적음.

□ 경상남도 산청군

- 의료급여 정률제는 본인부담률 인상과 의료기관별 부담률을 적용 하려 했으며, 추진 중단 사유는 저소득층 부담 가중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한 것이었음.
- 정부가 정률제를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급여제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였음.

[정률제에 대한 의견]

-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책으로 정률제 추진이 합당한 이유
  - 소액이라도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면 습관적인 병원 방문, 불필 요한 외래 방문이나 과도한 약물 처방과 같은 의료 쇼핑을 방지할 수 있음. 수급자 스스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만 이용하게 되어 의료 남용을 줄일 수 있어 전체적인 의료급여 비용은 감소할 수 있음.
  - 의료 쇼핑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의원에서 수급자에게 의료 쇼핑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음.
  - 의료비 본인부담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제로 하고, 의료비가 100만원 이상 등 고비용일 경우에는 정액제로 점차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본인부담액이 많은 경우에는 긴급복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률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므로 정률제는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임.

-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이용시 최소한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제도간 형평성에 부합됨.
  - 수급자와 시민단체는 정률제가 의료급여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반발함.
    - 수급자에게는 소액의 의료비라도 병원방문을 꺼리게 되어 치료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병을 키우고 향후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 한다고 봄.
    - 대부분의 수급자는 노인, 장애인 등 건강이 취약하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의료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음. 이를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급자에 대한 낙인찍기 이자 차별이라는 비판임.
  - 본인 부담률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정률제를 도입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함.
  - 수급자 중에서 장기요양병원 등 장기입원자의 경우 의료급여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나 퇴원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부 과다이용하는 사례가 있음.
  - 일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 행위나 과잉진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 세종시 보람동
- 수급자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고 의료급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재정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임

- 현재 의료급여 일수 초과자에 대해서도 연장승인 제도를 통해 사실상 제약없이 의료 이용 중이나, 2026년부터 외래 이용 365회 초과자에게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함.
- 기본적인 의료급여 제도 개혁과 함께 긴급의료비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거나 저소득층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완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주거급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 첫째,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준중위소득 50%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차상위지원 제도와의 문제 부각).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제주시 노형동

○ 총액복지급여(가칭) 마련 필요

- 모든 급여는 현재 생활과 미래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개개인에 따라 주거급여를 높게 책정하거나 낮게 책정하고 있음.
- 총액복지급여(가칭)제도를 마련하여 각종 급여에 대한 사용 방법 또는 비율을 수급자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복지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당사자에게 적정한 주거비용을 스스로 책정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 서울시 광진구 종곡1동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필요

- 단, 주거급여 중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 환산 금액 지원 불필요
- 동일한 월세가구라도 더 적은 보증금 가구가 주거급여를 적게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주거빈곤 사각지대 해소

- 현행 기준(기준중위소득 48%)으로도 실제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 상당수가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조정 시 주거빈곤층 및 위기가구가 폭넓게 보호가 가능함.

○ 주거비 부담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저소득가구 특히, 1인가구·청년·고령자 등 사회적 도시주거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
- 다만, 차상위지원제도(중위소득 50% 이하 등)와 선정기준이 겹칠 경우, 동일가구가 여러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등 제도간의 충돌이 발생(중복지원 등)하므로 정책의 실효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급여 간 조정’ 또는 ‘급여 차등화’ 필요

□ 서울시 성동구

-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급여 신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주거급여 역시 근로능력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필요
- 주거급여를 주거비 지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청년용 공공임대 주택 확대, 주거상담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등 실질적 자립 방안 강화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주택이 축재 수단화되고 있는 사회풍조에서 취약계층 대응 방편으로 주거급여의 기준완화가 불가피함.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현재 차상위가 중위소득 50%인 가구의 사람들이 모두 주거급여 수급자로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너무 많이 늘어남. 주거급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제도나 사업, 바우처, 감면 등 전반적인 제공 서비스와 제도에서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라서 단순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늘리는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 인천시 부평구청

- 급여 상향이 경제활동을 저하하며, 일반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음.
- 주거급여의 증가는 전세보증금/월세비 금액이 높아질 수 있음.

#### □ 경상남도 산청군

-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주거권 보장이 강화되고 있음.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상향조정되면 그간 선정기준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차상위계층 및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권으로 포용할 수 있어 주거안정이 강화됨.
- 주거급여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다른 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함.
-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와의 관계 설정 문제 : 차상위계층은 중위 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통신비 등을 감면받고 있음. 주거급여기준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차상위계층에는 해당되는 데 주거급여는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복지 제도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보장수준이나 선정 기준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주거급여)보다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더 엄격한 아이러니한 형태가 됨).
- 막대한 재정 부담과 지속가능성 문제 : 임대인이 주거급여액을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이는 정부 지원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임대인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주거급여 확대는 표준임대료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과 병행되어야 함.
- 주거비는 저소득층 가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필수조건인 만큼 주거급여 선정 기준의 지속적인 증가는 저소득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동력이 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사회보험과 같은 기여금이 없는 공적부조의 특성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대에 대해 다양한 사유의 찬반의 시각이 있을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부정수급의 유형이 어떠한 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넘어 풍요로운 일상에 기여하는 국가의 역할을 생각할 때 단계적인 사회복지급여 상승은 필요함.
- 단, 이러한 복지국가 비전을 위한 재정 소요와 납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집단과 국가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과 충분한 소통을 하여 시민의 동의와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

□ 세종시 보람동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50%에는 크게 이견이 없으나, 보증금 및 월차임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중위소득 50%에 해당한다고 하여 월세 100만원 짜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관련

- : 둘째,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논의는 ① 기준임대료가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② 기준임대료에 관리비가 포함되고 있지 않아 실질가치 반영이  
어렵다(향후 기후 위기로 인한 광열수도비 관련 지출도 포함 필요성  
제기). 현재의 기준임대료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추가적으로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제주시 노형동

○ 지역별 임대료 구분 지원

- 제주도의 경우 읍면동마다 주거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 읍면은 월 40만원 이하로도 임대할 수 있으나 동지역에서는  
오피스텔과 원룸을 빌릴 경우 임대료 40~70만원 관리비 20~  
25만원을 받고 있음.
- 지역에 따라 임대료의 차이를 일부 보전해 줄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기준임대료에 관리비 추가 지원시 관리비 기준과 내용이 모호함.
- 주택유형별 관리비 금액이 다양하여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려움.
  - 기준 전기요금, 가스비 경감 등 공공요금 할인으로 관리비 대체  
가능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기준임대료의 실제 지원액이 현 시세와는 약간의 괴리가 있음.
  - 임대차계약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례 등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에 지역별·유형별 실거래가 추이 반영을 강화할 필요
  - 다만, 고시원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높이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도 기준임대료에 맞춰서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문제점이 발생
  - 요즘 임대아파트, 원룸 등에서의 임대료와는 별개로 관리비 부담이 매우 큼.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너지 바우처 등과 연동, 폭염 등에 대비한 에어컨 설치가구를 늘려야 함).

□ 서울시 성동구

- 기준임대료가 인상되면 실제로 임차료와 고시원비도 함께 상승하는 현상 발생
- 지원 확대가 오히려 임대 시장 가격 상승을 부작용으로 나타남.
  - 기존의 기준임대료 방식 대신 임차료의 일정 비율(예: 50%)을 지원하는 정률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 높은 월세를 기준임대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소폭으로 인상 필요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관리비까지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이미 요금 감면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준임대료 수준을 높이는 경우, 고시원 등에서는 현재 기준임대료만큼 월세를 받고 있어 고시원 등 쉽게 방을 구할 수 있었던 숙박시설의 월세 가격 자체도 높아지는 문제도 동반됨.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월세를 지원받는다는 생각에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맞지 않는 월세 집을 구하고, 일부는 어차피 보전해 주지 않느냐는 경우도 있음.

□ 인천시 부평구청

- 주거급여의 증가는 전세보증금/월세비 시장가격의 상승과 정비례함
-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반영한다면,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소득 증액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함.

□ 경상남도 산청군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실제 주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실정임. 실제 시장의 임대료 시세에 맞는 기준임대료 현실화가 필요함. 도시지역의 경우 지원 금액에 맞춰 반지하,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음.
- 수급자가 기준임대료 상한액만큼 지원받아도 관리비, 전기세, 광열수도비, 가스비 등을 별도로 납부해야 되므로 관리비를 기준

임대료에 점차 반영해야 됨.

- 또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관련 비용도 주거급여에 반영되어야 함.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 등과 관련하여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급증하는 냉난방비와 광열수도비의 경우 기준임대료에 포함하거나 에너지 바우처제도의 대폭 확대로 좀 더 나은 주거생활이 되도록 해야 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현재는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현재의 생계급여에 주거를 위한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미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함.
- 한편 기후변화에 따라 냉난방비 등 주거에 대한 지출이 커지고 있어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재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면 관리비와 냉난방비 지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거급여 성격 혹은 목적에 대한 질문

- : 주거급여제도는 두 가지 원칙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거권 보장과 상향으로 주거급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 좋은 주거조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둘째는 주거급여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빈곤층의 주거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출보전 성격의 급여로 주거권 보장과 상향이동은 다른 주거복지제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두 가지 대립된 견해에 대해 주거급여의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주시 노형동

○ 주거급여 통합

- 현재 저소득계층 대상의 주거급여와 일반인 대상의 주거지원 (청년월세, 전세, 주택구입자금 이자보전 등)이 구분되어 저소득 계층과 일반계층을 나누는 정책이 계층간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음.
- 현재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듯이 주거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주거급여의 하나로 통일하여 모든 계층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며 단지 소득 구간별로 지원받는 금액 또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저소득 주거급여 지원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구는 감소할 것으로 사료는바 이 외의 별도지원이라는 형태의 복지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광진구 종곡1동

- 주거급여는 빈곤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지출보전 성격의 급여
  - 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변경 필요가 있음.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일러 설치, 도배장판 교체, 기타 집수리 사업 등 임대인의 부담분 경감으로 인식됨. 임대인 부담분 지원보다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방향으로 변경해야 함.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빈곤층의 기본적인 주거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기능
  - 주거급여가 빈곤층의 최저주거 수준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봄.
  - 주거급여의 원칙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수급자가 보다 나은 환경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주거 수준의 상향 이동은 별도의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 서울시 성동구

- 주거급여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출을 보전해주는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함.
- 다만,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상향 이동, 주거환경 개선 등의 방향은 바람직하나, 기본조건이라기보다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기본적으로 주거권 보장의 대원칙 아래 주거상태에 따라 이원화

하여 주거급여 세부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 기준 이상 주거상태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월차임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기준 이하 주거상태에 대하여는 월차임지원과 상향이동 지원 추가 필요

□ 인천시 부평구청

- 주거급여는 빈곤층의 주거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함
- 그러나 현재의 주거급여 지원은 보충성의 원칙을 넘어 업그레이드 된 주거를 지원함
- 이로 인해 더 좋은 주거환경을 갖기위해 저축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현재의 환경에 안주하기에 경제적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경상남도 산청군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주거급여법 제1조)으로 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음
  - 지출보전 : 빈곤층의 주거급여는 지출보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장의 주거비 부족분을 해결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공공부조제도로서의 개념으로 접근하므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행정 업무상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 주거권 보장 및 주거 상향 이동 : 주거급여의 주거권 보장과 상향 이동은 주거수준을 향상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베팀목 대출, 월세 대출 등을 통해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공공부조제도로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 주거급여의 원칙은 더 어려운 세대에 대한 지출보전의 성격과 궁극적으로는 주거권 보장과 주거 상향 이동을 지향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진행해야 하며, 지출보전 방식으로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하여 주거 최저선을 방어하며, 공공임대주택, 베팀목 대출 등과 연계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주거사다리, 주거상향과 같은 사업은 현재의 취약한 거주지를 보다 나은 거주지로 옮기는 사업임. 주택임대지원사업의 틀 안에 있음.
- 주거급여는 현 거주지의 주거현황을 조사하여 주거 비용을 지원 하는 사업임.
- 이미 별도의 사업이며 상호보완적이고 충돌할 사항 없음.

#### □ 세종시 보람동

##### ○ 첫 번째 의견에 동의함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급여 지급 외에 노후주택 수선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상향지원 등이 주거급여 수급자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함

▣ 교육급여의 지급대상은 현재 초중고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현상과 겹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는 수급가구의 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교육급여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주시 노형동

○ 확대 반대

- 어린이집 이용료 무료 등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여 보조금 또는 사회서비스 사업비로 지원하면 업체에서는 그것을 기본으로 다른 이용료를 올리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의 보호자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체감이 떨어진 상태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기관이나 업체에서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앞세워 보호자들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제도는 오히려 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음.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영유아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조기 교육의 권리와 기회 보장 필요

- 생애 초기(0~5세)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어린이일수록 초기 교육의 불평등이 평생 지속될 수 있음. 따라서, 초중고에만 국한하지 않고 영유아기부터의 교육 기회 평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30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기존 보육료·양육수당 등과 유사증복되지 않게 제도 설계가 필요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지원 형평성도 고려

#### □ 서울시 성동구

- 어린이집·유치원 지원과 교육급여 지원의 다른 복지제도(보육료 등)와의 증복 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집·유치원 교육 급여 확대는 무리수
-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자는 방향은 양자의 체계, 목적, 대상 등이 크게 상이하고 교육체계의 근간부터 재정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 및 현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내용 확대에 방점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현재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유아학비 등이 지급되고 있어 교육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봄.

#### □ 인천시 부평구청

- 교육급여를 소득에 따른 지원보다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변경되어 야 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의무교육과 다름 없는데 이를 소득차에 의해 차별 지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임.

□ 경상남도 산청군

- 교육급여의 대상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으로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임. 유치원 등에 교육 활동지원비(개인별 바우처 지급)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독립적인 미래를 위한 교육 기회의 확대와 보다 나은 성장공간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저소득가구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지원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부모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차별에 대한 대안임.

□ 세종시 보람동

- 교육급여 대상은 현재 초·중·고로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아동은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으며, 이 외에도 아동수당, 양육수당의 지원도 받고 있음.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에도 부모의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린이집, 유치원 원비가 상승한 것처럼 교육급여 지원의 실익이 크지 않을 우려가 있음.
  - 교육급여 대상을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하는 데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교육과 관련된 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급여에 대한 중요성과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바우처 방식 전환으로 인한 혼란도 있었습니다. 교육급여가 빙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교육급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다른 교육복지사업과 통합해 운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분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 제주시 노형동

○ 교육급여 통합 필요

- 보호자와 상담을 하다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각종 바우처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지원서비스,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자녀부모지원서비스,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인서비스 등 각각의 부처별로 지원사업이 있고 자녀의 보호자는 항상 남들이 수혜 볼 수 있는 지원을 자신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음.
- 법에 의해 구분된 중앙부처에서 저소득계층 또한 포함하여 지원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국민에게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그에 따른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현재 교육급여만의 고유성이 약화되고, 교육부·교육청 등과 유사종복사업이 많기에 실질적인 교육복지의 역할을 교육기관이 통합

적·포괄적 운영하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유리

- 현재 지원사업의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대상자 혼란, 행정 효율성 저하 등 문제가 있으므로, 중복·유사 제도와의 체계적 연계와 정비가 필요함.

#### □ 서울시 성동구

- 실질적으로 교육급여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
- 교육지원청이 학생 관련 복지사업(교육급여, 방과후, 통학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사업 수행 주체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할 때,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리가 필요함.
  - 사회적 변화와 행정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생활보조제도 → 기초 생활보장제도 → 맞춤형급여 등으로 지속, 분화 발전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 개별 사업의 별도 특성이 있으므로 교육급여도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분리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보여짐.

####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조사만 행정기관에서 하고, 사업 자체는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조사가 끝난 이후에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음. 책정 이후에는 교육청을 통해 업무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인천시 부평구청

- 교육은 의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며, 지원기관만 다른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통합 필요
-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바우처를 지급하여, 다양한 특성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수업(과외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경상남도 산청군

-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부 소속의 업무인 만큼 교육부로 이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에서 교육급여 신청, 조사,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를 하면 학교(교육청)에서 보장 결정한 후 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 해당 대상자가 교육급여관련 급여내용 등 모든 궁금한 사항은 모두 행정(시군구)에 문의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에서도 행정에 문의를 하라고 안내를 한다고 함.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스는 학교(교육청)에서 급여액을 생성하고 지원하며,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청에서 급여액을 확정하여 바우처 지급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든 민원이 행정에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임.
-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으로 빈곤층의 교육복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분리하여 교육복지 제도로서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급여 등에 대한 신청, 조사, 지급 등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교육전문가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교육급여의 선정 및 사후조사만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운영은 이미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음.
- 선정 기준을 국민건강보험기준과 같이 단순화하고 보다 많은 학생에게 단계적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늘려가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대안과 복지사회로 발전하는 방안으로 사료됨.
  -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통합 돌봄사업으로 인해 지자체 및 각 동행정 복지센터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학생에 대한 지원 결정과 선정 등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세종시 보람동

-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하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분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함.
  -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서 다른 교육복지사업과 통합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나이, 가구환경, 성별, 특성, 희망 진로 등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유용해 보임.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함으로써 수급자 낙인을 우려하는 사춘기 청소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실제로, 저소득 수급자 가구이나, 민감한 시기의 자녀 수급자 낙인을 우려하여 교육급여 신청 취소 및 취하하는 경우도 발생함.

▣ 장제·해산급여와 관련하여, 현재 지침상 장제·해산 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대상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사회변화로 교육급여를 수급하면서 사망이나 자녀 출산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 교육급여로 장제·해산급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주시 노형동

○ 확대 반대

- 10여 년 전 보훈청 직원에게 독립유공자가 이제는 많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보훈청은 예산을 줄이지 않는 대신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수당을 새롭게 만들거나 금액을 상향시켜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음.
- 이러한 내용은 복지정책에서도 다수 발견되고 있음.
-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소득분위의 산출기초 등을 명확히 보고 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가 없어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일반 국민에게도 같이 지원을 할 것인지 등을 고심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교육급여 대상자의 장제 해산급여 확대 불필요

- 필요 시 국가 긴급지원 및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장제 해산급여 지원이 가능함.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실제 처리경험 없으나, 지원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 교육급여 수급자는 다른(생계·주거·의료) 급여자격이 되지 않고, ‘교육급여만 받는’ 빈곤 영역의 새 사각지대임. 이러한 가구에 사망, 출산 등 긴급한 일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됨.
- 현장에서는, 복지담당자로서는 안타깝지만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할 수 없어 지자체 차원의 일회성 긴급지원이나 후원,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을 안내하는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
- 교육급여만 지원받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취약한 상태임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이나 출산 등 돌봄·돌발 위험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함.

○ 서울시 성동구

○ 교육급여만 받고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는 많지 않음.

○ 기준을 일치시키거나 연계하는 등 수급대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급여는 교육비 지원이라는 고유의 목적과 기능에 맞춰 별도의

### 310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생과 사망은 한 사람의 생애에서 시작과 끝을 의미하므로 역사적으로도 국가에서 우선 지원했던 제도임.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7대 급여 중의 하나이므로 임의로 장제와 해산급여를 지원함이 타당

#### □ 인천시 부평구청

- 교육급여 대상자들은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족 기능이 낮지 않아 장제·해산급여의 필요성이 적음.
- 교육급여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지, 이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의 증가는 공공부조의 원칙과 다르다고 생각함.

#### □ 경상남도 산청군

- 우리 지자체에서 실제 경험한 사례는 없음.
- 교육급여 수급자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차상위 계층과 동일함. 교육급여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차상위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까지 함께 확대하여 복지 형평성에 부합되도록 해야 함.

#### □ 세종시 보람동

- 위의 경우를 아직 경험한 적은 없으나, 1954년생 어르신이 교육 급여를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는 있음.
- 현재 교육급여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이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장제·해산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5. 전달체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리 운영 평가

### ■ 맞춤형 급여 전환 이후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 맞춤형 급여 전환 이후 생계·의료는 보건복지부가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LH가, 교육급여는 교육부·지방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 제주시 노형동

#### ○ 전반적 평가

- 제주도의 경우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시청과 읍면동에 큰 틀에서는 사무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음.
- 그러나 저소득계층 명단 등을 맞춤형 또는 주민복지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 협조라는 명목으로 일을 대신 수행하기도 함(주거취약가구 조사 등).
- 좀 더 바라는 것은 자활사업 담당을 노동부로 변경하고 긴급생계 지원 중 교정시설퇴소자는 법무부로 담당을 변경해 주길 바람.

#### ○ 문제점

-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코디네이터’라는 제도를 운영토록 한 바가 있음.
- 정부의 모든 복지에 대해 주민센터의 직원 중 한 명을 지정하여 국민이 방문하면 그를 통해 모든 복지를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 취지의 제도였음.

### 31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읍면동에서 이 제도는 오히려 각 정부부처의 복지 담당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모든 법의 복지가 다시 복지팀으로 전가되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것으로 인한 갈등이 심한 곳도 있었음.
- 보건복지부는 빈곤에서 자활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중앙 부처 각각의 복지사업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복지라면 모두 흡수하려는 결과로 보이는바 복지법에 따른 사업은 복지부가, 그 외에 타 법에 따른 복지사업은 타 중앙부처가 추진도록 하여 자치단체 및 읍면동 각각의 업무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로 받아들이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 전문성 제고 및 정책 효율성

- 각 부처와 기관이 자신의 전문 영역을 담당함으로써 정책의 질과 서비스의 전문성,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음.
  - 주거급여는 주택 및 부동산, 임대관리 경험이 풍부한 국토교통부와 LH가 수행
  - 교육급여 집행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 사정을 반영한 지원 가능
  - 부처별 업무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

#### □ 서울시 성동구

##### ○ 제도상 주관 부처는 다르나, 실제로 민원인은 대부분 지자체(구청, 주민센터 등)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진행

##### ○ 처리 주체와 민원 처리 창구가 달라 혼선과 불만이 발생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는 타 부처 소관 급여에 대해서는 답변을 미루는 경향이 뚜렷함.
- 129의 경우 상담원에 따라 답변이 다른 경우도 발생하여 어려움이 발생함.
  - 모든 급여에 대해 정확한 안내·상담·신청·처리가 가능한 통합 창구 마련 등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
  - 개별사업의 특성이 있고, 행정수요도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전달체계를 다원화하여 대응한 것은 주민 맞춤형급여지원에 적절하다고 보여짐.
  - 다만, 현장에서 동주민센터와 구청에 민원이 집중됨으로써 구·동의 업무 과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으며, 다원화 대응의 의미가 반감되었다고 보여짐.
  - 현장업무 추진을 위한 별도의 사무소(봉사관, 분소 등) 설치 운영이 필요하리라 보여지며, 구·동에서 수행 시 관련부서 (교육지원과, 공동주택과)에서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봄.

####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주거급여는 주택조사나 영구임대주택 공급 등을 LH에서 하고, 급여 지급은 행정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수급자 조사 및 관리, 서비스 안내가 함께 될 수 있어 용이
- 다만 교육급여는 신청접수조사 및 통보만 행정기관에서 할 뿐 나머지는 모두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어 다른 수급보장과 달리 서비스 안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민원인에게 보장 상태나 급여 지급 등에 대해 모두 안내하고 교육급여나 교육비

관련해서는 정작 할 수 있는 안내가 바우처 신청 및 교육청 담당 안내 정도에 그치는 수준임.

#### □ 인천시 부평구청

- 신청자의 접근성으로 인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조사하는 기관이 구청인데 구청의 조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
- 더불어 조사후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로 깔때기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보안 필요(행정복지센터는 조사 이후 행정처리 및 안내를 못하므로 각 기관의 대상자 관리 및 사후 처리 필요)

#### □ 경상남도 산청군

- 맞춤형급여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면 운영하다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전문성을 높이고자 각 부처별로 진행되었지만 최일선 행정에서는 대부분, 여전히 사회복지부서에서 모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며 업무 과부하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매우 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음.
  - 급여별 각 부처가 전문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듯이 최일선 행정에서도 해당 전문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전문적 지원이 가능할 것임(맞춤형급여 시행 초기에는 주택부서에서 주거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이후 복지 부서로 대부분 이관됨).
  - 교육급여의 경우에도 행복e음상 교육급여 신청, 조사 권한을 교육청에 부여하여 신청-조사-결정-급여 지급까지 한 곳에서 진행하고 수급자에게 안내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될 것이며 민원도 오히려 줄어들 것임.

- 그러므로 생계, 의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거급여는 국토부,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담당하듯이 각 지자체에서도 전문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점검이 필요함(사회복지부서에서는 새로운 복지정책(통합돌봄 등)들을 전문성 있게, 국민들에게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전달체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복지제도를 다양한 부서에서 각 업무성격에 맞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
- 현시대의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달리 시민의 복지향상임.
- 복지는 인간의 삶에 한 측면이 아님. 생계뿐 아니라 건강, 문화, 교육, 주거, 직업 전방위에 걸쳐 있음.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전 부서의 복지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보건영역을 분리하여 복지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주거복지는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추진하고 교육복지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각 부서의 예산 및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복지부가 저소득가구의 현황을 더 잘 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더 잘 추진할 수 없음.

□ 세종시 보람동

- 각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함.
  - 또한, 민원인 입장에서 본인 선택에 따라 원하는 급여를 종류 별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임.

■ 맞춤형 급여 전환 이후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상에서 주요한 역할이 행정안전부, 시군구 및 읍면동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각의 역할이 잘 정리되어 있고, 무리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 제주시 노형동

- 보건복지부의 역할
  - 맞춤형복지팀은 복지부에서 만들고 인력은 행안부에서 결정하고 행안부는 조직과 인력구성을 각 자치단체에 자율성에 맞겨 놓았음.
  - 복지직은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조직과 인력은 행안부 사항이라며 복지직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책임을 행안부로 전가했음.
  - 이로 인해 읍면동 중 30%는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지 못했으며 그 업무는 복지팀 또는 복지환경팀, 복지산업팀에 소속되어 타업무와 함께 병행 추진되고 있음.
  -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는 맞춤형복지 전달체계가 완료된 것으로 행안부

에 보고하고, 복지부 또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맞춤형복지팀이 없는 읍면동에서는 그만큼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인구로 조직과 인력을 결정하는 행안부와 자치단체에 의해 복지업무와 타업무가 통합된 곳은 인구가 적은 곳으로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고립, 초고령지역사회 등 복지업무가 더욱 필요한 곳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생성되고 있는바 이는 더욱 복지가 필요한 곳에 복지사업 추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며 현재의 행정조직이 이 목적에 맞게 맞춤형복지팀이 조직화,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지 심층있는 논의가 필요함.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역할 정립이 비교적 잘 되어 있음.

- 각각의 역할분담(정책-집행-현장 점검)이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공식적 업무지침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음.

- 주요 문제점 및 한계

- 실제 읍면동 현장에서는 수급가구의 상담, 조사, 신청, 발굴, 서비스연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과도한 업무 가중, 사례관리의 한계, 인력 부족 등이 발생함.

□ 서울시 성동구

○ 전반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는 여전히 관행대로 진행되고 있고, 아래 예시는 업무 부서 구분이 필요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과(구)와 복지팀(동)에서 진행하고 있음.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기초복지과(구)와 복지팀(동)에서 진행하고 있음.

○ 복지팀(동)에서는 취약계층 발굴, 보호관리에 집중하고, 복지팀 외(동)에서 문화누리카드,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인천시 부평구청

○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외의 다양한 업무 접수가 행정복지센터로 모아지고 있으며, 이를 조사하는 기관은 구청

○ 구청의 조사인력은 부족하며, 행정복지센터의 대상자 안내와 상담인력도 부족한 상태

○ 이에 대한 인력을 보충하든가, 각 기관에서 대상자들의 관리가 필요

#### □ 경상남도 산청군

- 각 부처가 해당 전문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각 급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최일선 행정에서는 여전히 사회복지부서에서 전담하여 새로운 복지정책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각 지자체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서와 마찬가지로 전문인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전달체계를 재점검해야 함.
- 급여유형별 보장과 관련, 수급자가 행정에 문의하면 기초생활 업무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그 궁금증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문의하면 사회복지담당자가 교육 청에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수급자에게 전달해야 하며(바우처에 언제 충전해주느냐? 왜 탈락이 되었느냐? 등)
  - 주거급여는 LH에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수급자에게 전달해야 함(현물급여는 언제부터 되느냐? 얼마까지이느냐?, 주거보수 빨리 해달라, 도배 장판 해달라 등).
  - 수급자 입장에서는 한 곳에 문의하면 모두 해결되어야 하는데 어느 부서에 전화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한 관련부서마다 전화를 하여야 해결이 되므로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음.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제도조직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함.
- 적극행정을 위한 신상필별과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시군구 및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업무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를 기초로 살펴보면

- : 읍면동은 대민서비스창구로서 읍·면·동은 상담·신청안내, 신청·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를
- : 시군구는 첫째, 통합조사관리팀을 통해 자산조사, 자격관리를 주요 업무로 수행 중.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수급자 선정이후 확인조사 등을 통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관리를 전담하여 기준 적용의 편차 제거 및 전문성 확보
-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자산조사, 확인조사, 이의신청에 따른 자산조사 재확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의 업무 위탁에 따라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실시하며, 자산조사 재확인 결과를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
- : 둘째, 급여종류별 사업팀은 자산조사 이후 수급(권)자 보장 결정 및 급여지급, 이의신청, 부정수급통보, 보장비용징수 등 보장결정 이후 사후관리를 담당
- : 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통합조사팀의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를 사회복지직이 아닌 다른 행정직 등이 전담하고, 관련 인력을 급여별 사업팀이나 읍면동의 사례 관리 등으로 전진배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 하시는지요?

□ 제주시 노형동

○ 복지행정직제 필요

- 행정직에는 복지직 이 외의 많은 유형의 직이 있음.

- 복지업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업무의 중압감이 높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고 법정업무가 대부분으로 인사고과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상태임.
-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공무원이 발령을 받을 것인가는 굳이 그 사유를 나열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자치단체 공무원은 알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현재 업무는 읍면동과 시청 담당자간의 긴밀한 의논이 필요한데 행정직은 언제든 타 업무를 맡을 수 있기에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고심을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읍면동에서 필요시 논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즉 전산 업무라 치부하더라도 담당자는 상담, 조사, 책정 등의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 정보, 지식이 있어야 하며, 특히 수급권자를 위해 읍면동 담당자와 함께 상담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담능력과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목적과 수행 방법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 그래도 행정직을 복지직과 함께 업무를 추진토록 한다면 일본처럼 복지행정직을 새롭게 개편하여 복지업무에 대해 일정 정도 교육과 경험을 갖은 행정직 공무원을 복지행정직으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음.

□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 통합조사팀의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행정직 전담 : 업무 추진 어려움 발생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어도 복지관련

### 32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은 업무숙지과정도 느리고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특히 많은 특례조항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행정직은 단 한번 조사관리팀 업무 수행뿐 재 수행을 원하지 않고 있음.

- 사회적 인력부족으로 행정직과 병행해야 한다면 급여별 사업팀 업무가 더 적당함.

####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 사회복지직 배제에 따른 현장 전문성 약화 우려

- 자산조사, 자격관리 과정이 단순 행정처리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유연한 해석이 필요함. 또한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직의 경험과 직관이 중요할 수 있음. 특히 위기상황·복합욕구(정신, 건강, 가족불화 등) 등 동시 파악이 필요한 현장에서 현장 경험이 없는 행정직이 자산가족구성 등만 단편적으로 조사하는 등의 우려가 있음.

##### ○ 사회복지직 인력의 사례관리, 대민서비스 강화 취지에는 동의

- 구청 통합조사관리팀, 읍면동 등 현장에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중장기 인력 기준, 교육·훈련 강화 등 필요

#### □ 서울시 성동구

#####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는 단순히 숫자나 자료만 확인하는 행정적 절차가 아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행정직이 조사·관리 업무 일부를 맡기도 하나, 이 경우 조사 내용의 깊이나 민감한 복지 상황, 심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드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례가 많음.
- 조사 대상자의 실제 생활환경, 가족관계, 위기상황 등 다양한 복합적 요소를 꼼꼼히 고려해야 하며, 이는 모든 복지서비스 업무의 기초가 되는 핵심 업무임.
  - 사회복지직은 대상자의 상담·욕구파악 등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더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관리 가능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는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업무로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궁극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사정이나 욕구파악, 지원연계 등 복지 본래 업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문적인 통찰로 업무를 담당해야 함.
  - 다만, 전산처리나 기 체계화되고 시스템화된 업무에 대한 처리는 복지 본래의 모습보다는 행정적 처리 성격이 강하므로 행정직이 전담해도 무방함.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복지직이 해야 하는 것이 맞음. 사회복지 직을 사례관리나 사업팀에만 배치하는 경우, 상당히 민원인에게 미시적인 접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결정, 관리에 대한 업무를 알지 못하면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 만나는 민원인의 소득

재산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조사 및 자격관리 업무 경험을 통한 제도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민원대에서 사회복지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일선 공무원이 사회보장제도 조사 및 관리에 대한 이해나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민원인 상황을 이해하고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함.

□ 인천시 부평구청

- 행정복지센터로의 전진배치로, 사회복지의 업무 효율성은 높일 수 있으나,
- 사회직렬의 팀장자리가 줄어들어 사회직렬의 승진이 타직렬에 비해 느려질 수 있음(현재도 복수직렬로 사회복지 업무에 타직렬 팀장이 배치되어 사회적 승진이 적체되어 있음).
- 사회직렬이 구청에 배치되었을 때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일의 어려움 있음.

□ 경상남도 산청군

-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1차적인 사회 안전망이라 할 수 있으며, 빈곤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이다.
- 맞춤형 급여이후 조사는 행정적이, 사업부서는 복지적이 담당하여 전달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였음.

○ 사회복지직을 통합조사관리팀 배치도 필요함.

- 기초생활 신규 및 확인 조사시 수급권자의 복합적인 욕구 및 소득, 재산, 가족사항 등 조사, 가족관계 해체 관련 조사 등을 진행할 때 복지공무원의 마인드가 필요함.
-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조사시 탈락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복지공무원의 따뜻한 상담이 필요함.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해 읍면동에 복지공무원의 전진배치 및 확대 배치가 필요함.

- 읍면동에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상담소, 방문상담 등 복지허브로 기능하고, 통합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복지 자원을 연계 및 민관연계 강화를 위해 전문직 배치 필요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로 주민 복지서비스 질 향상
-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등 원활한 수행, 위기기구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일선 읍면동에 확대 배치 필요

○ 복지부서 배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복지 교육 강화 필요

- 행정직 공무원을 통합조사관리팀, 사업팀에 배치시 자산조사 및 복지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복지마인드 향상 등 교육 실시로 기계적인 업무처리 방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주어진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업무 담당은 기본적으로 행정직이 추진하되, 사회직은 신규 약 1년 동안 동행정복지센터 근무 후, 통합조사 관리팀을 의무적으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게 하여 선정 및 관리 지침 숙지와 상황 이해를 겪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통합조사관리팀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함.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현장에서 저소득 가구에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 되 동행정복지센터 이 외에도 각 지자체의 시청 및 정책부서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하여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수행과정도 잘 익히도록 해야하며, 현장에서의 경험과 교훈이 각 지자체의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 특성상 동행정복지센터에 오래 근무하게 될 때 승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 □ 세종시 보람동

- 통합조사를 다른 행정직이 전담하고, 복지직이 사례관리 등의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 복지업무는 범위가 매우 넓고 복잡하며, 유기적임.
  - 읍면동에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사업 연계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업무 전반에 걸쳐 지식이 필요함.
  - 현재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이나 수급자 상담, 신청을 하고 있는 민원대 복지직 모두 기본적인 통합조사·관리업무는 숙지해야 하며, 관련 업무의 경험이 현장의 전문성을 높임.
  - 복지직의 전진배치는 바람직하나,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업무 경험 기회가 복지직에 주어져 야 함.

#### ▣ 보충성 원칙과 최저보장 수준

: 생계급여는 보충성원칙을 기반으로, 다른 급여는 별도의 최저보장 수준을 두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보충성원칙 적용으로 인해 여전히 부적정 수급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오지급과 관련되어 많은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예, 발생일 기준을 확정일 기준으로 전환 등)

#### □ 제주시 노형동

##### ○ 복지와 원칙

- 행정적 부담은 과오지급을 환수하는 것보다는 수급자의 민원이 더욱 큰 상태이며 이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임.
- 복지부, 도, 시 등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원칙적인 해결 보다는 어떤 모양이든 빨리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등한시하거나 어기는 경우가 발생함.
- 이는 새로운 민원을 발생시키고, 장기 민원화되는 과정에서 대상자와의 수많은 접촉과 편법적인 발언으로 오히려 대상자가 환급보다 다른 문제를 들면서 더 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및 자치단체장이 담당자를 믿고 원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자세가 필요함.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확정일 기준 도입

- 변동 사실이 확정, 인정된 시점을 급여 조정기준으로 삼았으면 함. 이 경우, 수급당사자와 행정기관 모두 언제, 어떤 근거로 급여조정 및 환수가 발생하는지 등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

○ 소액 범위내에서는 예외 및 감면규칙 적용

- 일정금액(예: 월 10만원 이하)의 소규모 소득 변동은 급여에 미반영 또는 정산/환수하지 않는 유예/감면 규칙 도입

○ 실시간 자동연계 강화

- 신속한 데이터 연계(국세청, 건보 등)로 최대한 빠른 변동을 체크하여 예측 가능한 사전 급여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음.

□ 서울시 성동구

○ 수급자 관련 변동(소득, 재산 등)을 '발생일 기준'에서 '확정일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급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소득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월칙적 으로 미지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연말정산과 같이 실제 소득 신고가 이루어진 후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모델도 검토 가능

○ 단, 소득 유형 및 금액에 따라 공적 회신 또는 확인 가능한 기준이

상이함.

- 사업소득·일용소득 등은 확인 시차가 크고, 실제 처리 기준도 담당자별·시점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음.
- 소득 확인·신고 시스템의 현실적 한계로 인한 관리 어려움

○ 부정수급 방지 대책

- 부적정 수급으로 지급한 급여액 이상의 환수(실제 지급액+별금 형식의 추가 환수)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
- 근로 능력이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을 배제하는 등 예외 없는 기준 적용이 필요

○ 사적이전소득 기준 개선 필요

- ATM 입금 등 사적이전소득 내역 확인 시, 담당자가 실제 내역을 파악·확인하기 어려운 실무상의 한계 존재
-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및 해석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사적이전소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 악의적인 부정수급자의 경우 환수 등 법적조치, 정상참작 가능한 부정수급자의 경우 환수제외 등 조치 필요

□ 인천시 부평구청

- 부정수급 조사에 대한 권한이 적고, 부정수급 조사에 대한 위험성이 있음.
- 조사 권한이 적으므로 제대로 열심히 조사할 수 없고,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적으니 위험을 감수하며 업무하기를  
꺼려함.

- 부정수급 조사에 대한 권한 확대, 부정수급 처리 절차의 간소화,  
조사 전후 위험성의 보호와 대책이 필요함.
- 또한, 전담인력이 없어 부정수급조사를 회피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경상남도 산청군

- 과오지급의 경우 대표적인 유형은 행정 착오, 행정 시차, 사정 변경,  
기타 그 외 수급자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정적  
지급이 있다.
- 확인조사시 행정 착오, 행정 시차 등으로 과오지급되는 경우가 많음.  
과오지급에 대한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변동 신고 기준을  
현실화하여 ‘발생일’이 아닌 ‘신고일’, 혹은 ‘담당자 확인일’을  
기준으로 함(과오지급되지 않았더라면 복지 위기 가구로 전락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 등 변동 신고 기준일을 신고일 혹은 담당자 확인일로 변경  
하여야 함). 또한 소득이 뒤늦게 확인되어 몇 개월간의 급여를  
한꺼번에 환수해야 하므로 수급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음.
- 과오지급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생계비 등의 반환을 위한 행정  
처리 시간 등 행정력이 오히려 더 낭비될 수 있으므로 10만원 정도  
이하의 과오납금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행정비용을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음. 해당 담당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 세종시 보람동

- 앞으로 ‘신청주의’에서 ‘자동지급’으로 바꾸는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 시스템을 통합, 개편하여 개인정보 조회, 공적자료 요청 등의 절차를 자동화하여 실시간으로 반영되게 하고 부정수급 가능성을 추출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또한, 복지급여 지급을 위해 등록된 계좌는 과오지급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 수급자격을 이용한 상위권 대학이나 학과로의 진학 문제

: 최근에는 일부 수급가구나 비수급 가구 등에서 19세 이하 청소년을 별도가구로 분리하고 수급자격 획득후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해서 상위권 대학이나 학과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청년별도가구 분리에도 영향)

## □ 제주시 노형동

- 기초법의 목적 수행

- 법률로 또는 시책으로 어려운 자의 자활을 돋기 위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이를 위해 청년가구 분리, 별도 지원 등의 국가적 수혜가 지금 보다 더 필요하며 가급적 국가의 직접지원보다는 기업, 법인을 통한 지원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복지지원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33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 서울시 광진구 종곡1동

- 저소득층 자녀의 고른 교육기회 제공은 반드시 필요
  - 단, 위장 한부모가구 등 부정사례를 다수 발생
  - 서류상 한부모가구의 진위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의 어려움 발생

####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제도 악용 우려
  - 제도 취지(실질적으로 독립해 생계가 어려운 청소년 보호)와 달리,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가구분리로 실질적 취약계층과의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
    - 이러한 현상이 널리 인식될 경우, 사회적 배려 전형의 순기능이 훼손되고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심화될 수 있음.
- 엄격한 실태조사 필요
  - 단순 주소 분리나 서류상 분리만으로 별도가구를 인정하지 않도록, 생활비 송금 내역, 주거실태, 가족관계 단절 증빙 등 엄격한 조사 필요
- 청년, 청소년 별도가구 분리기준 재검토

#### □ 서울시 성동구

- 일부 가정에서 청소년 및 청년을 별도가구로 분리해 수급자격을 얻고, 이를 ‘사회적 배려’ 전형 등 대학입시와 취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부모의 경제력이 충분함에도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주거급여 등에서 가족 전체의 실제 경제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실질적인 부양 여부와 가족의 경제상황을 더 염격히 심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부모의 경제적 곤란 등으로 자녀가 의도치 않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면 사회적 정의에도 부적합하며, 열심히 살려는 의지도 감퇴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사회적배려 제도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여짐.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교육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사회적 배려 대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수많은 교육콘텐츠나 무료 강의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봄.
  - 예로 민원인 중에는 한부모 전형으로 대학에 보내고 싶다며 한부모 급여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도 적지 않음.

□ 인천시 부평구청

- 청년별도가구의 확대로 인한 당연한 부작용 현상
- 청년별도가구에 있어서, 지침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사후 관리한다면 문제의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현재의 조사·관리체계는 수급자의 확대에만 관심있고, 이를 관리하거나 부정수급 조사에는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이끌고 있어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정수급 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 경상남도 산청군

- 학별주의뿐 아니라 수급자격 여부에 따라 대학입학시 및 대학에 들어가서도 기숙사비 등 그 혜택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등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전형인데, 수급자격을 이용하여 이를 악용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사회문제임.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야 함.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5장

### 복지급여 신청주의 혹은 자동지급에 대한 논의

제1절 모니터링 개요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제5장 복지급여 신청주의 혹은 자동지급에 대한 논의

## 제1절 모니터링 개요

### 1. 신청주의 관련한 정책 환경 변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목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 및 디지털 기술 적용이 이뤄짐.
  - 국내에서도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 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서비스 추천 시스템 고도화 등의 노력이 이뤄짐.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수급희망 이력관리, 원스톱 서비스 확대, 행정정보 연계 등
  - 국외에서도 부정수급 발굴, 아동학대 탐색, 급여 자격 확인, 급여 실시간 지급 영역에 적용되면서 복지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및 효능감을 제고하는 데 일부 기여
- 일정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자살 및 사망 사건이 발생
  -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사각지대 발굴에 행정력 및 기술이 투입되고 있지만, 2025년 들어서도 인천 서구 아동 사망(2월), 익산 모녀 사망(3월), 대전 모자 사망(5월) 사건 등이 발생

-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기존 신청주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2025년 8월 나라재정 절약간담회에서도 신청주의가 “매우 잔인한 제도”라는 대통령의 언급이 나왔음. 9월 국회에서는 ‘복지신청주의’에서 보편적 복지체계로: 복지 패러다임 전환 긴급 국회 토론회’가 열리기도 함.
- 대통령의 언급 이후 신청주의를 둘러싼 정책적·이론적 논쟁이 불지펴진 상황. 노대명(2025)은 “복지 신청주의는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이나 가족관계 등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던 시대의 유물”이라며 “신청주의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제시<sup>4)</sup>.
- 남찬섭(2025)은 “잔인한 것은 신청주의 아닌 복지억제와 잔여주의”라며 현재 복지정책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관료주의에 간힌 복지 억제기조와 잔여주의적인 접근이라고 주장<sup>5)</sup>

## 2. 문제 의식

- 복지급여 신청주의 극복에 관한 대통령의 언급 이후,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그럼에도 관련한 사회적 편의, 위험성 등에

---

4) 링크 참고:

<https://socialkorea.org/labor/%ec%9d%b4%ec%9e%ac%eb%aa%85-%eb%8c%80%ed%86%b5%eb%a0%b9%ec%9d%b4-%ec%8f%98%ec%95%84%ec%98%ac%eb%a6%b0-%ed%83%88%ec%8b%a0%ec%b2%ad%ec%a3%bc%ec%9d%98-%eb%b3%b4%ed%8e%b8%eb%b3%b5%ec%a7%80-%ed%99%9c/>

5) 링크 참고:

<https://socialkorea.org/labor/%ec%9e%94%ec%9d%b8%ed%95%9c-%ea%b2%83%ec%9d%80-%ec%8b%a0%ec%b2%ad%ec%a3%bc%ec%9d%98-%ec%95%84%eb%8b%8c-%eb%b3%b5%ec%a7%80%ec%96%b5%ec%a0%9c%ec%99%80-%ec%9e%94%ec%97%ac%ec%a3%bc%ec%9d%98/>

### 고려는 아직 미흡한 상황

- 이번 모니터링 포럼에서는 다소 급박하지만, 신청주의 극복, 복지급여 자동지급의 검토에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함. 설문 응답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
- 신청주의 극복은 현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및 정비, 데이터 가버넌스의 구축, 복지행정의 자동화, 복잡한 복지급여의 간소화 까지 아우르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음도 고려. 다만, 효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큼.

### 3. 모니터링 내용

#### □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제4차 포럼

- 모니터링 주제
  - 복지급여 신청주의 혹은 자동지급에 대한 논의
- 모니터링 내용
  - 질문 1)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 질문 2) 예견되는 문제점
  - 질문 3) 종합 의견
  - 질문 4) 앞으로의 개선·보강·준비사항
  - 질문 5) 기타 의견

## 제2절 모니터링 결과

### 1.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 복지급여 신청주의 극복에 관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제주시 노형동

○ 신청인 입장

- 신청인은 신청서, 금융거래 제공 동의서 등 각각의 복지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서류 감면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신체적으로 불편이 있는 장애인, 노인 등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는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성격, 감성 등 정서적으로 낯선 곳을 방문하기 힘들어하는 국민 등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거나 대면 상담을 받지 않는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노동 현장 일을 하거나, 가정 돌봄 등에 종사하여 일과 중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간을 별도로 만들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시간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 타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부양의무자 등 가족 및 관계인 서류 등 복지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한 시간 절약 및 불편을 해소하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가족 또는 친척 중에 만나기 불편한 대상자를 피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부분의 수급자 결정을 통한 지원은 소급되지만 의료급여는 결정된 날짜부터 지원되는데 이러한 각종 복지급여 시작일을 한 날짜로 통일할 수 있음.

#### ○ 아동

- 출산 시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직접 신고되므로 아동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음.
- 아동의 부양의무자 등 친권에 대해 명확화할 수 있어 무연고자 아동 출현을 방지할 수 있음.
-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해 나이별, 시기별로 즉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 ○ 장애인

- 의사의 판단으로 병원에서 자치단체로 직접 장애등록을 신청 할 수 있어 장애인이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 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관공서에서 전산을 통해 각종 사회적 복지서비스 지원을 각종 기관에 신청함으로써 대상자가 각각의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 정부

- 각종 급여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화함으로써 복지 예산 편성 용이

### 34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출생아에 대한 등록 및 각종 급여 신청을 강제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용이
- 각종 기관에서 발급 및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통일화 가능
- 국가의 의무적 신청으로 민원 감소 및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감소
- 원칙적인 지원 지침으로 선정 및 제외함으로써 전산 또는 AI를 통한 업무추진으로 공무원 인력 감축을 통한 예산 절감
- 전산자료를 통한 지원을 기축화함으로써 소득 및 재산을 자료화 할 수 있는 각종 전산 등의 네트워크망 구축으로 공공기관의 전산화가 가능

#### □ 서울시 광진구 중곡 제1동

##### ○ 복지 신청주의 극복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별적인 신청이 아닌 기초생활보장과 차 상위계층은 통합신청을 원칙적으로 극복
- 개선방법 : 맞춤형 급여 중 생계 의료급여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신청한 경우가 아닌 1가지 이상이면 통합신청으로 보아 미보장 급여도 추가 결정

####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 복지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

- 현재 숨겨진 빈곤층이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계층까지 보호 가능

##### ○ 업무 간소화

- 기초생활수급 선정·탈락 민원, 자료심사, 반복 서류 제출 등 감소

○ 수혜자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실제 필요한 취업지원, 사례관리, 긴급복지 연계 등 적극적 복지 서비스에 집중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줄어듦.
-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층이 신청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음.

○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

-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부담감(서류작성 및 준비 등) 감소
- 신청시 낙인감(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졌구나..) 해소

□ 세종시 부강면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현재 신청주의 제도상 제도나 절차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는데 자동이나 직권심사로 소득, 재산 정보를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 현재 개별 신청 및 개별 심사로 인해 소요되는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드는데 데이터를 통한 자동지급 시스템이 도입되면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어 행정 효율이 높아지며 복지행정의 신속성,

맞춤성이 강화되면서 디지털 복지국가가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 □ 경상남도 의령군

##### ○ 신청주의에서 포괄적, 보편적 사회보장주의로의 긍정적 효과

- 고도화, 자동화, 정보화, 정밀화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직권보장에서 정확한 자료에 기반을 둔 일정기준 도래자 등 복지급여지급 대국민 편익성, 효과성 증가로 국민 만족도 향상
- 복지사각지대 발생빈도 줄어듦.
  - 예) 의료비 등 과다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가구)이 국가 보증으로 선 과다채무 해결 또는 대안 제시 시 극단적인 삶의 초기 사전 예방 등
  - 예) 구직 청년이 일용직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동으로 구직수당 및 취업 알선이 본인보다 먼저 조치되었을 때 기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됨.

#### □ 경상북도 울진군

##### ○ 복지 접근성 향상

-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제공하거나 필요한 대상자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된다면 복지급여 신청을 위한 절차적 장벽이 낮아짐으로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줄어들 것임.

##### ○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시스템이 취약계층을 놓치지 않고 자동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

적 안전망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 정서적 지원

- 신청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이나 부정적인 경험을 줄이면 복지 수혜자들이 자기 자신을 소외된 사람이나 부끄러운 사람으로 느끼지 않게 됨. 수혜자들의 정신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기여함.

#### ○ 효율적인 정책 운영

- 행정기관에서 복잡한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복지 대상자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복지 수급자들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원 배분이 가능함.

#### □ 서울시 성동구

##### ○ 신속한 조사(조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대상자 만족도 증가

- 서류징구 절차, 급여결정 등 간소화를 통한 조사기간 단축 등으로 효율성 향상
- 신속 정확한 조사를 통한 대상자 복지 만족도 증가

##### ○ (현재 법 개정 등을 전제)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 향상

- 기존 신청주의 부양의무자 신고서 및 동의서 등 징구 절차 간소화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거동이나 의사가 어려운 사람,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 또는 자동지급 시, 사각지대 빨굴 용이
  - 예: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노령의 부모가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등
-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받고 있어, 현재도 자동지급과 유사함.

□ 인천시 부평구

- 디지털 기술로 인해 행정업무의 간소화로, 담당자는 대상자와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요구를 파악하여 실질적 복지서비스 가능
  - 또한, 대상자의 가정방문이 원활하여 실태조사가 가능하며, 병원동행 등 대상자 혼자서 서비스받기 어려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대상자의 저소득에 대한 낙인감이 감소되면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
- 복지서비스 신청의 간소화·편리성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복지 서비스 제공

□ 경상남도 산청군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성 강화
  - 수급 자격이 있지만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누리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각종 복지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인해  
복지정보 격차 해소는 물론 실질적인 복지제도가 됨.

-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저항감(스티그마 효과 등)과  
신청 절차의 부담감을 줄여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됨.

○ 복지 행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 증대(신규조사 및 확인조사의 자동화가 완전하다는 가정하에 가능함)

- 업무 부담 경감 : 행정기관의 단순 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업무가 자동화되어, 관련 인력과 자원을 위기기구 발굴이나  
고난도 상담 등 더 중요한 영역에 투입할 수 있음.
-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 : 자격 발생 시점과 거의 동시에 급여가  
지급되어 위기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복지  
지원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복지 사각지대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자살, 사망 등)을 예방  
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국가의 복지행정 신뢰성 제고 : 국민들이 국가가 자신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알아서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갖게 되어 국가  
및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감이 높아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복지제도 무신청 시스템에 따른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제도 및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에게도 누락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

- 누락 없는 복지서비스의 선제적 제공에 따른 저소득층 및 각종 사회취약계층의 극단적인 경제 악화 및 자살률 감소 예상
- 복지제도 미신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득조사 및 선정기준 역량 강화, 전산망 강화, 제도 홍보 강화에 따른 전반적인 국가 사회 복지시스템 향상 및 역량 강화

## 2. 예견되는 문제점

▣ 복지급여 신청주의 극복에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작성 부탁드립니다.

### □ 제주시 노형동

- 복지급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가?
  - 환수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 개정 필요
- 조사 및 지급이 모두 국가의 의무가 됨으로써 수급권자의 사유 발생시 수급자는 즉시 결정되어야 하는데 선정되는 경우 만약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지급 연도가 장기화되어도 소급 지원이 가능한가?
  - 지급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한 각종 법률 개정 필요
- 국가에서 결정한 선 지급 복지급여와 수급자가 원하는 급여가 맞지 않을 때 회복되지 않는 급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현물지원을 한 경우 수급자가 원하는 것이 다른 현물인 경우 대처방안 필요

- 공무원의 판단인바 이에 따른 신분조치 구제
- 복지관련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각종 법률 및 지침 개정 필요
- 국가의 의무적 신청에 의한 조사에서 방문조사시 대상자 또는 가족의 저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대상자의 인권문제 발생 해소
  - 대상자의 조사 거부 등의 저항에 대한 조치 강구
  - 복지관련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각종 법률 및 지침 개정 필요
- 국가에서 의무적 신청을 통한 맞춤복지를 한다면 복지수급자는 국가의 복지 정책에 대해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할 방법이 있는가?
  - 복지메리츠의 극복방안 마련
- 국가의 복지정책을 개인이 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현상들을 막을 수 있는가?
  - 복지 리플리 출현 방지 방안 마련
- 출생신고를 개인적 사정에 따라 조율을 원하는 부분에 대한 침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 출생신고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개정 필요
- 장애등록에 대한 선택권 침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 장애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 필요
  - 장애등록 여부를 관공서가 아닌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소득 또는 지출 보전의 맞춤형복지를 추진하면 전 국민의 모든

소득과 재산사항에 대한 정보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국민의 동의 없이 국가가 추진할 수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대상자의 복지급여 신청이 국가의 의무로 되는 경우 국가는 국민을 대상으로 부채가 발생하는데 현재 민법상 재산은 소유자의 유언을 통하거나 가족에게 자동 상속되어 대상자가 사망 이후에 국가와 정산을 해야 하며 이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가? 또한 신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 조치 및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가?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한 금액만큼 수급자가 사망 시 소유한 재산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 필요
- 국가의 의무적 신청은 국민에게 상대적 빈곤, 상실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가?
- 국가의 의무적 신청은 곧 로또처럼 어느 순간 국민에게 지원한다든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자신이 해당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음.
  - 이러한 관심이 현재처럼 일반과세자와 수급자간의 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이 인지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저항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서울시 광진구 중곡 제1동

○ 복지멤버십 제도 보완 필요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별도가구 보장 등 다양한 특례조항이 있으나 현재 복지멤버십 제도로는 자동 안내 및 구제가 어려움.
-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라도 주거급여의 별도가구 보장이 가능한 경우 조사담당자가 수기로 인지해야 함.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재정 부담 문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부담 폭증

○ 개인정보 활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실제 신청의사가 없는 개인의 소득, 재산, 건강, 가족관계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 시 활용하게 됨.
- 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할 경우 ‘개인사 개입’이나 ‘사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음.
- 직권으로 수급자를 지정하거나 급여 지급 시, 원하지 않은 지원, 보호의 자율성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기초수급자라는 신분은 낙인효과가 수반되어 본인이 원치 않을 수 있음.

○ 부정수급 및 과잉복지 논란

- 제도 남용 및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

- 중산층, 고소득자도 포함(데이터 미반영, 소득 은닉)되면  
‘도덕적 해이’ 논란

#### ○ 행정력 및 인력 부족 문제

- 기존 신청주의에 비해 담당 공무원이 모든 지역주민을 상시 모니터링·발굴해야 하므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남 (예: 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장 방문, 추가 상담 등).
- 현장의 인력, 시간, 예산이 부족할 경우 행정효과 반감 및 업무 과로·소진 우려
- 시스템 개편, 예산관리, 교육 등 새로운 적응과 학습 필요

#### ○ 사후관리의 부담

- 기초수급자 지정 이후 가구별 복합적 욕구(채무, 가족문제, 정신 건강 등)에 대한 통합적·지속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행정 인력과 체계로는 쉽지 않음
- 수급 후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급여 부족, 지원 중단, 서비스 연계 요청 등) 증가

#### ○ 복지 만족 체감도 저하 가능성

- 신청주의는 수급자가 직접 필요를 느껴 스스로 신청함으로써 자신의 의도와 주도성이 반영되어 긍정적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자동지급(직권)은 당사자의 주도적인 의사표시나 수요가 반영되지 않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지원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지원’이라는 느낌이 약해짐.
- 이에, 수동적 지원 경험을 갖게 되고, 개별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행정편의적 지원이 될 위험이 있음.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 개인정보 침해 논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없이 소득, 재산 정보를 수집, 연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 및 확인조사 담당자 업무 가중

- 현재 주기적으로 구비서류 누락 등을 점검(정비)하며, 수급자 자격관리를 하고 있는 조사담당자의 업무 과중이 예상됨(기존 대상자의 형평성에도 문제 발생).
- 또한, 정보 공유(유튜브 등)를 통해 신청인이 실제 왕래를 하고 있는 자녀가 있음에도 연락두절되었다고 허위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음.

○ 대상자의 권리 강화, 의무 약화

-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게 되었을 때,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등에 대한 책임감은 약화될 수 있음.

○ (국가 및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

-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까지 모두 포함되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부담감이 높아짐.

□ 세종시 부강면

○ 데이터 오류로 인한 누락 및 과지급

- 복지정보 시스템의 자동화로 인한 시스템 오류나 실시간으로

소득, 재산 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제외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급여를 받을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상남도 의령군

○ 자동 또는 보편적으로 사회보장의 문호가 개방되었을 경우 문제점

- 자동 또는 보편적 사회보장의 기준선 확보의 어려움.
  - 예) 개별법에 기준선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자동이 가능하나 기준선(소득인정액, 연령 등)이 정확히 없는 경우는 혼돈 초래
  - 예) 아동수당 등 기준선 없이 연령 도래자는 자동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기초연금 등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급여지급은 자동지급이 어려워 기준선이 없어지거나 명료화로 조사없는 보편적 복지수당이 되어야 함.
- 자동으로 사회보장급여 등이 지급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등 사생활과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음.
  - 예)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개인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 예) 정신질환이 있는 가구에 상담가가 접근하여 가구상담을 하는 경우, 상당한 거부감을 가짐
  - 예) 복지사각지대 빨굴 -채무자 등 신용불량자인 청장년가구의 상담 접근에 어려움
  - 예)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인책임으로 전가되어 표출화에 대한 거부감

## □ 경상북도 울진군

### ○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문제

- 자동화된 시스템이 특정 기준에 따라 복지혜택을 지급할 때 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가구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하여 부적합한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필요한 사람이 제외될 수 있음.

### ○ 과도한 정부의 정보 접근 권한

- 자동화된 복지 시스템은 정부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신상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분석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개인정보 유출 또는 남용).

### ○ 일률적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

- 자동으로 지급되는 복지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움. 지역별, 가구별 특성이 모두 다른데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일부 계층은 혜택을 과도하게 받거나, 반대로 제대로 받지 못 할 수 있음. 불공평한 복지 배분으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음.

### ○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자동 계산의 오류

- 자동화 시스템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 변동성이 크며 또

가구 구성(주민등록 주소는 다르지만 실거주 또는 반대의 경우) 등 다양한 요소를 자동화된 시스템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할 가능성이 매우 큼.

○ 복지의 남용 및 오용

- 일부 사람들이 시스템을 악용할 위험이 존재함. 실제로 복지가 필요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거나 자원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복지 수혜자의 자립 의지 감소

- 복지가 너무 자동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수혜자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기보다는 의존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현 제도 아래에도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립의 의지 없이 수급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동지급 시스템은 복지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임.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기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와 유지보수

- 자동 시스템이 잘못 작동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발생하면 복지 혜택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복지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또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음.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할 경우 행정 신뢰도가 하락됨. 또한 기술적 문제나 시스템 오류는 복잡한 데이터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큰 과제가 될 수 있음.

○ 불필요한 복지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

- 복지급여 자동지급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스템임. 대상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복지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 받을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처럼 통합조사팀 직원이 현장 방문 등의 과정을 통해 조사 과정을 거친다면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가 과도해지며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정도의 인력이 필요함.

□ 서울시 성동구

- 자동 지급으로 인한 대상자의 급여 자기결정 권리 유명무실
  - 헌법 제10조 의거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자기결정권 훼손
  - 대상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도 있으나, 급여를 거부할 권리도 있음(자립 등).
- 사회보장급여 의미(보충주의, 선별복지)가 약해지고 도덕적 해이 발생
  - 누가 어떤 명목으로 급여를 주는지에 대한 의미 퇴색
  - 일정수준의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는 내용 전달력 약화
  - 실질생활과 조사결과가 달라 소득 은닉, 무노동 등 도덕적 해이 발생
- 현재 전산상으로 조회되는 항목도 있어 조회가 어려운 경우 서류 정구
  - (일용소득 신고서, 미신고 전월세, 무료임대 확인서, 계좌 등)
-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복지재원 낭비, 행정력 소모

- 직권조사 누락에 대한 대상자의 문제 제기,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력 소모
- 전체적으로 복지재원이 더 많이 요구됨.
  - 현재도 위기가구 등 직권조사 및 급여 선지원(긴급복지) 등을 실시 중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남아있는 사각지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사각지대, 소득 재산 기준 등으로 제도권 밖에 머물 수 없다면 신청주의가 폐지되어도 사각지대로 남게 되고, 결국 공공부조에 따른 현금성 지원 불가
- 아동이 있는 경우, 또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웃이나 자녀가 수급자인 것을 아는 것이 싫어서 공공요금 감면조차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낙인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민원인도 많음. 따라서 국기초 신청주의 폐지에 대해서는 낙인 또는 개인정보이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인천시 부평구

-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면, 대상자 복지서비스 책정에 있어서 정량적 파악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함.
- 복지서비스 책정은 정량적 판단보다는 대상자의 환경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부정수급자(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을 하지 않은 사람, 경제력이 있지만 없다고 판단되어 서비스를 받는 사람 등)에 대한 생계비

환수, 법적인 처벌이 미온적이라 부정수급자 증가

- 수급자가 증가하면 민원 발생도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자의 업무량 과중 및 정신적 소진에 대한 예방책 미흡
- 수급자에 부적합한 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활동 의욕 저하

#### □ 경상남도 산청군

○ 복지급여 자동지급제에 따른 전(全) 국민에 대한 최초 신청(본인 신청, 대리신청, 직권신청)이 있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각종 구비서류에 대하여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특히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 어떠한 형태이든 ‘신청’이 있어야 하며, 처음 시행 시 전 국민의 혼란 가중이 우려됨.

○ 각종 복지급여 조사 시 시스템 자동화로 해결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별도 조사가 추가되어야 함.

- 수기조사가 필요한 유형: 가족관계 해체(회복) 의심세대(연 1회 이상 확인), 동반출입국 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건강 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은 확인조사 대상자로 추출됨.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공적 자료로 해결되지 않는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본인이 거부시 진행하지 못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세대로 조사가 필요함. 즉 수급권자 세대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각 개인의 정보들이 전부 노출될 위험이 있음.

- 부양의무자간 불화가 예견됨 : 부양의무자가 4명 있으며, 그 중에서 1명이 부양능력이 있어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4명 모두 어느 부양의무자 때문에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민원사례가 있음. 향후 자동지급제에 따른 전 국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시 더 많은 부양의무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됨(현재는 저소득 범주에 있는 수급권자들만 신청조사를 하지만, 자동지급제는 전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이 기대를 품고 있으나 탈락될 경우(본인이 저소득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중산층 까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들 사이에서는 누구 때문에(?) 수급 권리가 탈락되었는지를 알지 못해(소득, 재산 등 사항은 본인에게만 알려줌) 서로 오해와 갈등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됨. 즉 부모가 수급권자이고 자녀가 부양의무자인 경우(4~6명 정도 됨), 자녀들끼리 어느 자녀 때문에 부모가 수급권에서 탈락되었는지를 알려 달라고 하면서 불화 및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많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각종 복지급여의 자동 지급 시스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과오지급, 부적정수급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 구축 필요
-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의 윤리적 문제 발생
  - 복지급여 자동 지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 데이터(소득, 재산, 의료, 금융재산 등)의 광범위하고 실시간적인 연계 및 활용이 필수적임.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민감 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윤리 기준 마련이 시급함.
- 자동지급제에 따른 추가 조사 등이 많으므로 인해 복지인력이 더 필요하며, 민원응대시 업무스트레스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복지급여 재정 대폭 증가, 각종 법령 개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등의 문제 발생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신청주의의 반대는 보편주의가 아닌 무신청주의(대상자 자동 가입)임.

- 복지제도 대상자의 자동가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 가입 대상자들. 즉 모든 시민의 소득·재산 조사결과와 선정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임.
-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선정 대상자의 자동 가입 복지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임.
-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지만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공격받고 무너진다면 이것 역시 국가 전체의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임.
- 위 사항들은 신청주의인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국가 복지제도에 의해 자동가입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납세자인 시민들의 제도에 대한 저항은 지금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임.

○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국민부담률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함.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조세시스템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낙후하여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 수행을 위한 과세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반증일 수도 있음. 국가의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 향상 없이 조세부담이 커지는 변화를 우리 국민들은 감수하지 않을 것임.

- 고령화, 소득 양분화, AI 출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등의 현실을 인지한 시민들이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복지제도 발전 및 무신청 시스템을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무신청주의라 하더라도 본인이 지원대상자가 되고 급여 및 서비스가 개시됨을 인지해야 함. 그리고 본인의 급여를 받을 계좌(신용불량자인 경우 별동의 가상계좌) 등을 선택하거나 인지해야 함. 이를 위해 당사자와 연락이 닿아야 하는데 거주불명자, 신용불량자 등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 고령자, 의사 무능력자, 아동 등이 자동신청을 통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때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으면 주변에서 이를 갈취하고자 하는 범죄가 향상될 수 있음.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더불어 공공(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할 때 관련 인력의 많은 증원이 필요함.

### 3. 종합 의견

■ 복지급여 신청주의 극복에 대한 종합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부탁 드립니다.

□ 제주시 노형동

- 수혜, 권리, 의무
  - 김대중 정권까지의 저소득계층 지원법 및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수혜한다는 성격이 강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을 때도 수혜적 성격이 강했음.

-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고 국민은 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복지제도는 국민의 권리로서 털바꿈하였음.
-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나아가 국민의 권리를 넘어 국가의 의무로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전체 국민에 대한 이율적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판단되어 많은 혼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전 국민에 대한 전 국민의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국가가 국민의 모든 정보,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임.
- 민주주의는 자기 선택권이 최우선으로 지켜졌을 때 가장 빛난다고 할 수 있는바 복지급여 또한 국민의 선택권을 우선 할 수 있는 신청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광진구 중곡 제1동

- 복지대상자의 신청주의 극복을 통한 제도권 유입에 국한→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복지욕구에 대한 만족도 향상이 필요함.

- 예) 주거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 외 주거복지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일반대상자에게도 가능한 다양한 주거정책 발굴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지급(직권)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 364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 점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음.

- 개인정보 보호
- 행정인력 및 시스템 한계
- 대상자 자율성·심리적 저항 등

####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 ○ 신청주의 폐지는 점진적 검토가 필요

-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대상자들에게 신청에 관하여 알려주고, 필요시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음.
-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 인력보충,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 체계 마련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고, 담당자의 책임부담감만 가중될 수 있어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함.

#### □ 세종시 부강면

##### ○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디지털 복지 선진국 구현

- 복지정보 자동 연계를 통한 급여지급 시스템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인력과 예산의 절감으로 복지서비스 신속성이 강화되어 국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차별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핵심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경상남도 의령군

○ 사회보장이자동화되었을 경우 기타 의견 등

- 신청주의나, 보편적 자동화가 알아서 해주는 사회보장 전에 광범위한 문호개방이 필요함.
  - 예) 금전적인 급부상향(조사 필요 소득인정액 상향)
- 개인이나 가구단위 상담의 양과 질의 범위 확대가 필요함.
  - 예) 가족위기 등 여러가지 복잡하고 다양화된 시대에 금전적인 분야보다 정신과 갈등 해소, 함께사는 공동체 함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문제해결 능력과 대응력을 배양할 수 있는 능력 상담기관 등도 필요함.

□ 경상북도 울진군

○ 복지 신청주의를 탈피하는 것은 복지혜택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며,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확한 대상자 선정, 개인정보 보호, 정부의 과도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자립의지 감소, 시스템의 안전성 등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음. 이를 고려한 세심한 설계와 관리가 필수적인 요소임.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수

○ 현재 이미 “복지멤버십”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음.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 혹은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 주는 정부 서비스임. 제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으로 보이나, 막상 현장에서 상기 제도를 안내해도 대상자들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거부감을 느낌. 자신의 자산정보가 드러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음. 복지급여 자동지급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봄. 결국은 대상자들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자산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 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부정적 인식도 많은 것이 사실임. 과연 자동지급이라는 것이 탁상행정이 아니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봄.

- 복지급여 자동지급시스템 도입은 사회복지시스템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지만 기술적,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를 실행해야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음. 복지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법과 부작용을 예방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 □ 서울시 성동구

- 일정 수준 이하의 대상자에 대해 급여 지급을 위한 자동조사를 선(先)시행 후 급여의 수급여부를 대상자의 결정(신청 등)에 지급 여부를 판단함이 적정
  - 관련 법 및 제도 개정을 통한 조사 절차 간소화
  - 복지사각지대, 일용직 근로자 등 주요 대상자의 기획 조사 필요
  - (자동)조사 절차 간소화도 행정효율성 및 대상자 만족도 향상 가능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신청주의에 따른 누락자

- 사각지대 발굴로 이어지거나,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기 위해서 범기관 차원의 연계가 늘어나고 있음.
- 성급한 신청주의가 불러올 문제점이 있다면, 현 상황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더 촘촘한 발굴 또는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함.

□ 인천시부평구

○ 디지털 기술의 적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이에 담당자들은 고난도 대상자들의 상담(사례관리)을 통해 심도 있고 심층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복지서비스(공공부조)를 제공받은 대상자들은 탈수급을 위한 노력보다는 현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길 원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것임.

○ 고로, 대상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법적인 처벌 없이, 담당자들에게 환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정수급 발굴을 저하하는 요인

○ 수급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일반 국민들과 상대적 박탈감이 큰 차상위 계층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필요

□ 경상남도 산청군

-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까지 수급권에 진입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완화하여야 함(국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 복지수급자 선정기준이 단순화된 유형부터 복지 자동지급제를 점차 실시하는 것이 딜 혼란스러울 것임.
  - 초기단계에서는 간소화된 신청과 선정기준이 단순하여야 함. 맞춤형급여의 안내(복지멤버십)를 고도화하여 급여 수급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신청절차 등도 모바일 앱 등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즉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거나 공적 정보만으로 자격 확인이 되는 급여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복잡한 선정기준을 공적정보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규정 개정도 필요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기술변화,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질서 및 안정 유지는 더 중요해질 것임.
- 이를 위해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불가피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함.
- 사회안정과 복지제도 향상,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에 대한 재원이 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공정한 과세제도와 합리적인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한 노력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임.
- 이를 위해 시민들과 적극적이고 성숙한 대화 및 홍보를 지속해야 함.

- 그 과정을 거쳐 복지제도를 향상시키고 무신청주의까지 달성하여 사회적인 합의와 안정속에서 복지제도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이 민주적으로 달성되어야 함.

#### 4. 앞으로의 개선·보강·준비사항

■ 복지급여 신청주의 극복에 대해 개선, 보강 및 준비사항이 있다면 작성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광진구 중곡 제1동

- 신청주의 극복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비 필요
  - 개인정보동의에 대한 문제 발생 대비
  - 복지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대상자 사후관리의 행정력 대비
  -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부적합대상자의 사후관리 문제 대비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 절차 강화
  - 직권 발굴 및 선정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근거 마련
  - 민감함 정보 활용 시 투명한 절차와 사전·사후 고지 강화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행정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자동지급(직권) 도입 시, 기존보다 더 많은 현장 인력의 확보 필요

- 신규직원 및 기존직원 대상 복지제도 이해, 상담기법, 사례 관리 역량 등 실무 중심의 교육 확대
- 적정 업무량 배분 및 현장 인력의 소진 예방과 심리적 지원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 고도화

- 다양한 기관(지자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등)간 데이터 연계 강화를 통해 숨은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발굴
- 시스템 오류나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강화

○ 대상자 자기결정권 강화

- 직권 발굴후에도 신청인의 의사 확인, 상담 진행 등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절차 마련
- 지원을 원치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택적 지원 또는 동의 기반의 지원방안 등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

○ 점진적·단계적 확대 및 피드백 반영 필요

- 제도를 전면적으로 일시에 도입하기보다는 시범사업 후 점진적으로 확대, 현장에서의 실질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완·반영
- 현장의 의견(공무원, 수급자, 주민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반영 하는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착오를 반영해 세부 실무 매뉴얼, 현장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

□ 세종시 부강면

○ 오류 검증체계 및 실시간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화된 복지급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점은 데이터 오류로 인한 미지급 및 과지급 발생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연계 및 정보 간성이 가능한 정밀한 관리시스템이 중요. 이를 위해 소득, 재산 등 복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변동 사항에 오류 발생 시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관리 인프라와 전문 인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경상남도 의령군

##### ○ 국민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파악

- 1인 단독가구 증가에 따른 의식주 및 기본생활 욕구파악 필요
- 가정, 사회, 조직 부적응자가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센터 및 방문 상담기관 필요(개별적인 상담기관보다 종합상담소-안내소 필요)

##### ○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보장기본법 개별법 정비

- 인간다운 삶에 대한 헌법 기본가치와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 개인사생활침해 보호에 대한 가치보다 사회안전망, 사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념과 가치가 마땅하다는 인식 공론화 필요

##### ○ 사회보장분야 중 자동신청보호 가능한 업무파악(사회복지분야 자동화 가능사업 다수)

- 예) 장애인등록절차 개선 : 장애판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진단서 등 진단구비서류를 지자체 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송 진단- 지자체에서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장애인복지

카드 발급→ 자동신청 개선-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자의 동의를  
구하고 국민연금, 주소지 지자체에 전산이송- 민원인 발급-  
지자체 장애인 혜택부여 자동일괄신청(장애인수당 포함)

□ 경상북도 울진군

○ 제도적 개선 및 보강

- 대상자 선정 기준 정교화
  - 소득, 재산, 가족 구성, 생활실태 등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 강화
  - 공공데이터 활용이 늘어날수록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 증가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암호화 및 접근 통제 등 기술적 장치 마련
- 복지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여러 부처, 지자체에 분산된 복지 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원스톱 복지 플랫폼 구축
  - 복지로, 행복이음시스템의 고도화

○ 기술적 준비사항

- 정확하고 안전한 데이터 기반 마련
  - 여러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데이터 연계 강화
  -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상황 변화 감지
- AI 기반 복지 판단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 복지대상자 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설명 가능성 확보
- 오작동 시 구제 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 시스템 마련

○ 사회적 인프라 보강

- 복지 안내 및 상담 기능 강화
  - 자동지급제도는 정보가 없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하므로, 복지 인력의 확대 필요
- 복지 수혜자의 자립 지원 병행
  - 복지 혜택과 함께 취업, 교육, 재활 프로그램 등 자립 지원책을 병행해야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이 가능
  -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자립을 위한 동기 부여와 연결고리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맞춤형 복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권한과 예산을 지원할 필요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책임 분담과 정보 공유체계 강화

○ 국민 인식개선 및 참여 유도

- 복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복지는 수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복지 신청주의를 넘어 자동적, 적극적 복지 제공 시스템으로 나아 가는 길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 따뜻한 국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변화일 수 있음.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으며, 이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과 제도만

으로는 부족함. 사람 중심의 세심한 운영, 국민 신뢰 확보, 사회 전체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동반되어야 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예산 및 행정력만 낭비한 채 실효를 거둘 수 없음.

□ 서울시 성동구

- 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신청주의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법(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사), 추가 서류징구 등에 대한 선제적 법 개정이 요구됨.
- 서류 제출 간소화 필요: 동의서 징구 등(휴대전화를 통한 동의) 전산화 필요
- 자동지급보다는 자동 조사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이 필요함.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노인, 장애인에 대한 편의 증진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5세가 도래하기 전 달에 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65세가 도래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함,
  - 국민연금 첫 지급 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65세가 되면 소득재산 이용에 대한 선동의를 받고, 그에 따라 65세 도래와 동시에 국민연금 지급과 더불어 기초연금 첫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등 타 기관이나 제도와 연동하여 과정을 단순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장애인연금 대상은 65세가 도래하기 전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 지급여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사실상 신청하지 않아도 받는 금액이 같음. 민원 중에는 65세가 되었으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 급여액과 급여일이 같은데, 급여 보장 구분만 다르다면 자동신청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장애인연금 대상은 중증장애인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 인천시 부평구

-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최일선에서 복지대상자의 환경실태 파악과 심층적인 복지상담을 진행하게 되어 신체적·정신적인 소진이 예상됨.
- 그러나 현재(현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복지행정팀장·맞춤형복지 팀장은 상당수가 복수직렬로 인해 사회복지직렬이 아닌 행정직 등 기타 직렬이 팀장으로 있음.
- 이런 팀장들에게 팀원들이 슈퍼비전을 제시받기 어려움.
- 복수직렬로 인해 승진은 정체되면서, 취약한 환경에 찾아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위험한 대상자들에게 담당자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은 동기부여 미약 및 업무 기피 현상만 발생함.
- 사회복지직렬의 승진에 관해 지자체 판단과 책임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함.

#### □ 경상남도 산청군

- 자동지급제의 주된 핵심은 공적자료 등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임. 그러나 자동지급제가 실행되려면 소득, 재산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더 많이 확인조사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할 가능성 있음

- 각종 사회보장급여법 및 제도 등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 행정 정보 활용, 금융·소득·재산 등 행정 데이터 연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해소, 자동지급 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 및 부정확성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구제절차 등
-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선정 기준 (복지 자격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하여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프라 구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
  - 확인 조사 시 소득, 재산사항 등이 불완전하여 확인조사 시 수기로 재확인을 진행하고 있음. 복지급여의 자동지급시 신규 책정자 및 기존 책정자(확인조사) 등 더 많은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복합적 위기기구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납세제도 및 복지제도의 합리성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인력 투입
- 의사무능력자 및 미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의 인력 증원

- 복지서비스 수행기관 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처벌을 강화
- 복지서비스 강화 및 자동신청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이를 위한 사회적 토론의 장 마련

## 5. 기타 의견

■ 복지급여 신청주의 극복에 대한 기타 의견 작성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 다양한 복합취약계층에 맞춘 복지 지원체계 구축
  - 한부모, 장애인, 노인, 청년 등 각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일원화된 기준과 틀이 오히려 일부 계층의 욕구를 배제할 수 있음.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 현재 운용 중인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적극 활용
  - 현재 복지급여 신청시 수급권자가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당사자의 소명서를 징구(필요시 담당자가 대필해서 작성 후 서명만 받기도 함)해 조사담당자가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여부를 조사
  - 이후 건보료 피부양자 등록여부, 주민등록 초본 열람, 통장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조사담당자가 조사 후 징수 제외 등 심의를

거쳐 기초수급자로 보장을 하고 있어 현재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 경상남도 의령군

- 대한민국 국민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근로 등 일을 하다가 사회 보장이 필요한 외국인도 인간과 사람이라는 가치에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
  - 예) 외국인 근로자가 질병재해를 입었을 때 한시적으로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

#### □ 경상북도 울진군

- 복지정책의 신뢰성 확보
  - 자동화 시스템에서 “나는 왜 못 받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데 나만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칫 신청주의 때보다 분노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음.
- 모든 것을 기술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
  - 자동화시스템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복잡하고 수치로 측정되지 않는 사각지대 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반드시 현장 중심의 인적 돌봄 체계와 공공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인력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복지는 “관계”이므로 공동체적 접근의 중요성
  - 복지란 단지 금전적 지원만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돌봄, 연대의 방식이기도 함.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적

접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복지의 인간적, 공동체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기계와 사람의 균형있는 결합이 중요

- 복지신청주의를 넘어서는 제도는 기술적 진보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임. 국민을 복지대상자가 아니 돌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변화, 그리고 누군가를 돋는 일이 곧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회적 연대 의식이 함께 해야 함. 단순히 더 많이 지원하자는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구에게, 왜 지원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권리와 의무가 공존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낮아지는 것도 우려가 됨.
- 지나치게 많은 급여의 종류를 통합시키거나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 성동구

- 자동지급이 복지사각지대(자살, 고독사 등) 해소에 대한 전반적 해법은 아님.
  - 현재 전국 신청, 주거지가 다른 경우 신청 등 다양한 제도 시행 중
- 특이한 사례(정신질환 등)를 제외하고 갑작스러운 위협(소득감소, 질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홍보 활성화 및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

□ 경기도 부천시 중3동

- 소득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없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임. 사회보장제도 신청이 인간답게 살

권리와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나, 국민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주의를 폐지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함.

□ 인천시 부평구

- 사회복지직렬에게 상담에 필요한 상담기법 교육 필요
  - 1인 가구, 정신질환, 저장강박, 자살충동자, 중독대상자 등에 대한 상담기법 필요

□ 경상남도 산청군

-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는 말에 대한 대응책 :
  - ‘수급자 대폭 확대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및 복지 선정기준 완화’, ‘각종 복지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및 절차 간소화’,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에서 수기로 입력하는 부분을 대폭 줄여야 함’, ‘복지급여대상자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급여액이 왜 감소되는 지?에 대한 답변이 한 마디로, 누구나 알기쉽게 설명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함(민원응대 간소화)’.
- 광범위한 행정정보 연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문제 등에 대하여 전 국민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동의가 확보되어야 함.
- 민생회복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 국민의 소득, 재산이 50~70% 이하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급여를 주었으면 한다는 여론이 있음(복지신청, 조사, 급여지급이 오히려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복지신청주의가 아닌 복지서비스 자동가입 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복지서비스 자동가입이라는 단편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결과물일 것임.



## 참고문헌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장 주거취약계층 및 노숙인 지원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n.d.). 의료-요양-돌봄 연계 홈페이지. 2025. 3.1.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d04300m01.do>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2020. 1. 29). 쪽방 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 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김강산. (2022).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 NARS 입법정책 제112호.

이길제, 김지혜, 윤성진, 박미선, 우지윤, 임지현. (2022).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진미윤, 정기성, 김경미. (2023). 2022년도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국토 교통부.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최은희, 이슬해, 오두선. (2020). 지역 대응 분권·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제1차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발표자료 (질문지).

### 제3장 외국인과 공공부조

Vintila, D., Lafleur, J.-M. (2021). MiTSoPro Policy Survey on Migration, Transnationalism and Social Protection. V1.

김복기. (2019).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2019, vol., no.56, pp. 27-5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비자 내비게이터” 2022년 5~7쪽 내용 정리 및 통계정. (2025.4.19.). 시군구별 및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조재호. (2020).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재난지원금. 사회보장법연구, 9(2), 통계정. (2024.4.11.).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 2025. 4. 1. 검색, p. 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2%26tblId%3DDT\\_1B040A11%26orgId%3D111%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2%26tblId%3DDT_1B040A11%26orgId%3D111%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제4장 기초생활보장제도 25주년 관련 평가

보건복지부. (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5). 수급자 선정기준. 2025. 8. 1. 검색. Retrieved from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보건복지부. (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 제5장 복지급여 신청주의 혹은 자동지급에 대한 논의

Social Korea. (2025, September 15).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올린 탈신청주의,  
2025. 10. 01. 보편복지 활짝 열까. 2025.11.16. from  
<https://socialkorea.org/labor/%EC%9D%B4%EC%9E%AC%EB%AA%85-%EB%8C%80%ED%86%B5%EB%A0%B9%EC%9D%B4-%EC%8F%98%EC%95%84%EC%98%AC%EB%A6%B0-%ED%83%88%EC%8B%A0%EC%B2%AD%EC%A3%BC%EC%9D%98-%EB%B3%B4%ED%8E%B8%EB%B3%B5%EC%A7%80-%ED%99%9C/>

Social Korea. (n.d.). 잔인한 것은 신청주의 아닌 복지역제와 잔여주의.  
2025.11.16. <https://socialkorea.org/labor/%EC%9E%94%EC%9D%B8%ED%95%9C-%EA%B2%83%EC%9D%80-%EC%8B%A0%EC%B2%AD%EC%A3%BC%EC%9D%98-%EC%95%84%EB%8B%8C-%EB%B3%B5%EC%A7%80%EC%96%B5%EC%A0%9C%EC%99%80-%EC%9E%94%EC%97%AC%EC%A3%BC%EC%9D%98>